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나-12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to Market Surveillance
System for Using of Safet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안준오/신한철/장나래/조영아

2011. 12

연구기관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총괄책임자 : 안 준 오

참여연구원 : 신 한 철

 장 나 래

 조 영 아

목 차

요약문	11
제1 장 서 론	37
1. 연구의 필요성	37
2. 연구의 범위	40
제2 장 주요국가의 사후관리 제도	41
제1 절 한국	41
1. 제품 사후관리	41
2.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76
3. 통관제도	80
4.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	81
제2 절 미국	84
1. 제품 사후관리	84
2.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114
3. 통관제도	123
제3 절 일본	130
1. 제품 사후관리	130
2.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150
3. 통관제도	151
제4 절 중국	155
1. 제품 사후관리	155
2.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165
제5 절 유럽연합(EU)	167

4 목 차

1. 제품 사후관리	167
2.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177
제 6 절 기타국가	181
1. 독일	181
2. 프랑스	184
제 3 장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분석	187
제 1 절 사전통관 제도	187
1. 개요	187
2. 조사결과	188
3. 문제점	192
제 2 절 인증소요 기간	193
1. 개요	193
2. 조사결과	194
3. 문제점	195
제 3 절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	196
1. 개요	196
2. 조사결과	196
3. 문제점	202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203
제 1 절 사후관리 제도	203
제 2 절 사전통관 제도	211
제 3 절 인증소요 기간	217
제 4 절 적합성평가확인면제 제도	220
참고문헌	221

표 목 차

<표 1-1> 방송통신기기 인증건수 및 국내 생산액	37
<표 1-2> 부적합기기 현황	38
<표 1-3> 불법 방송통신기기 단속 현황	39
<표 2-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44
<표 2-2>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46
<표 2-3> 사후관리 대상 방송통신기자재	53
<표 2-4>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58
<표 2-5>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금부과 기준	60
<표 2-6>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61
<표 2-7>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62
<표 2-8>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64
<표 2-9>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처분 기준	70
<표 2-10>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처분기준	73
<표 2-11> 미국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84
<표 2-12> 미국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85
<표 2-13> FCC 인증 관련 규정(47 CFR)	86
<표 2-14> 미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88
<표 2-15> 미국 인증, 적합선언, 공급자 적합선언 절차	88
<표 2-16> 미국 인증, 적합선언, 공급자 적합선언 서류 등록 절차	89
<표 2-17> 미국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대상기기	92
<표 2-18> FCC 규칙에 의한 통신법 제503조 벌금 지침	110
<표 2-19> FCC 규칙에 의한 통신법 제503조 벌금 조정기준	112

6 목 차

<표 2-20> FCC 규칙에 의한 하향 조정기준 적용 벌금액	112
<표 2-21> FCC 규칙에 의한 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법정 최고 벌금액	113
<표 2-22> 일본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130
<표 2-23> 일본 적합성평가 절차	132
<표 2-24> 일본 전파법상 행정처분 기준	145
<표 2-25> 일본 적합성마크 표시 부착금지 요건 및 대상단말기기	147
<표 2-26> 일본 전파법상 행정처분 기준	149
<표 2-27> 중국 인증제도 관련법령 구조	157
<표 2-28> 중국 제도별 대상품목	157
<표 2-29> 중국 진망허가(NAL)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161
<표 2-30> 중국 형호핵준(RTA)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162
<표 2-31> 중국 위반유형별 벌칙	165
<표 2-32> 유럽연합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168
<표 2-33> 유럽연합 방송통신기자재 CE 절차	169
<표 2-34> R&TTE 규격에 따른 적합성평가 방법	172
<표 2-35> 유럽연합 저전압지침의 구성	175
<표 2-36> 독일 사후관리 대상기기	182
<표 2-37> 독일 사후관리 위반 행정처분	183
<표 2-38> 프랑스 사후관리 위반 행정처분	185
<표 3-1> 사전통관 현황(2010년)	188
<표 3-2> 사전통관 월별 현황(2010.1월~6월)	188
<표 3-3> 사전통관 월별 현황(2010.7월~12월)	189
<표 3-4> 사전통관 제품의 유형별 건수	189
<표 3-5> 인증소요 기간 산출결과	194
<표 3-6>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품 수량	197
<표 3-7> 용도별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수량	197

<표 3-8> 적합성평가면제확인 횟수 및 수량 현황(상위 10위)	198
<표 3-9> 수출용 횟수 및 수량 현황(상위 10위)	199
<표 3-10>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횟수 및 수량 현황(상위 10위)	200
<표 3-11> 시험연구용 횟수 및 수량 현황(상위 10위)	201
<표 4-1> 주요국의 사후관리 처벌규정 비교	205
<표 4-2> 주요국의 인증기관 및 인정기관 비교	206
<표 4-3> 조사 및 조치, 교육관련 전파법 개정(안)	210
<표 4-4> 조사 및 조치, 교육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210
<표 4-5> 주요국의 통관절차 비교	211
<표 4-6> 인증소요 기간 관련 전파법 개정(안)	217
<표 4-7> 인증소요 기간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218
<표 4-8> 인증소요 기간 관련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안)	219

그림 목 차

[그림 2-1]	FCC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조직 체계	91
[그림 2-2]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추세(1999년~2010년)	92
[그림 2-3]	미국 인정제도 관련기관	115
[그림 2-4]	미국 방송통신기자재 통관 절차	124
[그림 2-5]	일본 VCCI 사후관리 결과	143
[그림 2-6]	일본 방송통신기자재 통관절차	152
[그림 2-7]	중국 적합성평가 제도간의 비교	156
[그림 2-8]	중국 강제인증(CCC) 관련 기관	158
[그림 2-9]	중국 진망허가(NAL) 관련 기관	160
[그림 2-10]	중국 진망허가(NAL) 운영체계	160
[그림 3-1]	사전통관 제품 유형별 비율	191
[그림 4-1]	수입방송통신기자재 통관처리절차	212
[그림 4-2]	사전통관 처리절차 개선(안)	215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The Objective of the Study

Section 2. The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Market Surveillance of the Main Countries

Section 1. Korea

Section 2. U.S.A

Section 3. Japan

Section 4. China

Section 5. EU

Section 6. The Other Countries

Chapter 3. Analysis of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Section 1. The customs system in advance

Section 2. The time required for certification

Section 3. The system of confirming exemption of evaluating the conformity

Chapter 4. Conclusion and Implications

Section 1.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10 CONTENTS

Section 2. The customs system in advance

Section 3. The time required for certification

Section 4. The system of confirming exemption of evaluating conformity

요 약 문

1. 제 목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2. 연구의 필요성

- 현재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통신기자재가 다양하게 용·복합화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량 증가 등 제품의 제조·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특히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인증건수 및 기기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국 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율 인증제도 도입·운영
 - 해외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저가·불량 제품의 유통확대로 안전한 기기 이용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필요
 - 불법·불법 수입제품 유입에 대비하고 부적합기기의 유통방지 및 국내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월 인증제도를 간소화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적합성평가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적합성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체 중심으로 인증제도가 전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으며 규제완화를 이용한 부적합기기의 범람 및 시장감시 기능의 약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 시장감시체계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시장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12 요약문

을 목적으로 함

3. 연구의 범위

-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주요국의 제품 사후관리,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등 검토
 - 국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안전기기의 사후관리 비교·검토
 - 해외주요국의 사후관리의 개요, 관련법령, 대상, 절차, 행정처분 조사·분석
- 미국, 일본 및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통관제도 검토
 - 방송통신기자재 통관절차, 근거법령 등 분석
- 국내 사전통관 제도,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분석
 - 2010년 한 해 동안 사전통관으로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분석
 - 사전통관을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소요 기간 분석
 - 2011년 1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적합성평가확인면제로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분석
- 국내의 사후관리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전통관 및 적합성평가확인면제 제도의 문제점과 인증소요 기간에 대한 법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주요국가의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체계

- 한국

-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란 소비자 보호, 전파혼신 및 방송통신망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유통되는 불법·불량기기를 조사·시험·조치하는 모든 행위
-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는 전파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 국립전파연구원(RRA) 및 중앙전파관리소(CROM)의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에 따라 적합성평가 기준 위반, 불법유통 등 불법사실 확인시 적합성평가의 취소, 시정 명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의 금액을 세분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

- FCC는 TCB를 관리·감독하는 인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 관리는 FCC, TCB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통신법상 관련규정 위반시 벌금, 징역, 압수 또는 몰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포괄적 행정처분 형식으로 규정
- 벌금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벌금의 예측성과 일관성 제고
- 통신법 위반시 강력한 벌금으로 위반행위 제재처분 부과

○ 일본

-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는 유선기기(단말기기 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술기준적합인증으로, 무선기기(무선설비 등)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기술기준적합 증명으로 구분
- 일본은 등록증명기관이 인증을 실시하므로 등록증명기관에 대하여 주로 벌금·과태료·등록취소 등의 제재가 부과
- 국내의 경우와 벌금 등 비교시 일본이 국내보다 더 무겁게 처분하고 있음

○ 중국

- 국가 주도의 사후관리 체계로 강제인증(CCC), 진망허가(NA), 형호핵준(RTA)에 따라 각각 사후관리 실시

14 요약문

- 국내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후관리 관련 법령 위반시 비슷한 수준의 행정처분 부과
- o 유럽연합(EU)
 - 사후관리 지침 위반시 EU 지침 자체에서 이를 처벌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각국이 이를 처리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도 국내보다 강력한 금액으로 행정처분 부과

<주요국의 사후관리 처벌규정 비교>

구 분		행정처분	특이점
미인증 기자재 유통시	미국	- 7,000달러 벌금 - 장비 압수 또는 몰수	- 벌금액을 건당, 일당으로 구분하여 조정(상한, 하한)
	일본	- 등록취소	- 대체로 인증을 실시한 등록증명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부과
	독일	- 5만유로 이하의 벌금 - 제품회수	- 가장 강력한 벌금 부과
	프랑스	- 1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	-
	한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과태료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인증 마크 위반시	미국	- 10,000달러 벌금 - 장비 압수 또는 몰수	- 벌금액을 건당, 일당으로 구분하여 조정(상한, 하한)
	일본	- 특별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 자기확인 표시금지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기술기준적합증명 유사 마크 사용 : 50만엔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 징역 부과
	중국	- CCC : 10,000위안 벌금 - NAL : 불법소득의 3~5배 벌금	- 국내와 비슷한 행정처분 부과
	독일	- 5만유로 이하의 벌금 - 제품회수	- 가장 강력한 벌금 부과
	프랑스	- 1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	-

구 분	행정처분	특이점
한국	- 미표시 : 시정명령(1차),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1개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 거짓표시 : 인증취소	-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부과

(2) 해외주요국의 방송통신기자재 통관제도

- 미국의 수입통관절차는 관세법(19 U.S.C - The Tariff Act)에 따라 반입신고, 확인서류 교부, 검사·시험·검색, 관세납부, 통관의 순으로 이루어짐
 -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세관에 물품도착 후 도착신고(Entry)를 하여야 함
- 세관은 물품도착 신고를 받으면 도착신고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수입(도착)신고서 및 기타 관련서류가 있음
 - 기타 관련서류에는 통관시 필요한 면허나 허가의 취득 등 해당 물품이 타기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증명하는 것이 포함됨
 -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FCC 인증을 받을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47 CFR § 2.1201 Purpose.), 인증을 받은 후 FCC Form 740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먼저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을 받아야 세관에서 통관이 되는 ‘선인증 후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수입통관절차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서류심사, 검사, 심사종료, 납세처리, 수입허가의 순으로 이루어짐
-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일본 내로 반입하려면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 관할 수입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게 됨

16 요약문

- 반입신고서 제출서류에는 수입신고서, 기타 관련서류가 있으며, 기타 관련서류에는 타 법령 관계서류가 있음
 -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건구비를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 검사의 완료 또는 조건의 구비를 세관에게 증명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함
-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수입업자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술기준적합 확인, 기술기준적합증명 등 증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통관시 이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선인증 후통관' 제도 운영

(3) 국내 사전통관 제도

- 사전통관이란 선인증 후통관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세관장 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수입되는 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시험과 인증을 받는 다는 조건으로 통관을 해주는 것을 말함
 - 수입통관시 인증을 받은 제품이 통관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인증을 받았다는 조건 하에 통관수량과 횟수제한 없이 통관을 인정해 주는 것
 - 사전통관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인증받지 않은 기자재를 불법으로 유통시킬 우려가 높음
- 2010년 한 해 동안 사전통관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는 총 3,964건이며, 그 중 인증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2,815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는 1,149건으로 조사되었음
- 수입업체들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업체이므로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 같은 모델을 하나의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중복해서 통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모델을 다른 업체가 중복해서 통관하는 경우도 있음

-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 차례 수입을 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사전통관으로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필요

(4) 인증소요 기간

- 2010년 사전통관을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후 인증을 받은 2,815건의 인증소요 기간 산출결과 1개월 이내 인증완료된 기자재가 1,323건(47%), 1개월~2개월 이내 인증완료된 기자재가 533건(18.9%), 2개월~3개월 이내 인증완료된 기자재가 248건(8.8%)으로 조사되었음
 - 2개월 이내 인증완료 비율은 1,856건(66%), 3개월 이내 인증완료된 기자재가 2,104건(74.8%), 6개월을 초과하여 인증받는 비율 330건(11.7%)으로 조사됨
- 이미 인증받은 기자재를 사전통관으로 반입한 경우가 262건(9.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관일과 인증일이 동일한 경우가 23건(0.8%)으로 조사되었음
- 사전통관으로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가 언제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전파법령상 근거가 없어 수입업자들은 신속한 기간 내에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2~5일 정도이며, EU의 경우에는 공급자 적합선언(SDoC)을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인증 소요 시간은 없으나, 제조사 요구에 따라 NB(Notified Body)의 인증을 거칠 경우 통상 1~2주가 소요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JATE 등의 업무규정상 인증 심사 소요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전통관 후 인증받을 때까지 인증소요 기간에 대한 규제를 전파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인증기간 부재로 인한 인증 장기화, 인증 전 유통가능성 등의 폐해 방지가

18 요약문

필요함

(5)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

- 적합성평가면제확인이란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시 시험·연구개발용, 수출용 등 일정한 용도에 한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면제해 주는 제도
- 적합성평가면제확인 방송통신기자재는 2010년 1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3,061회(315,496대)에 걸쳐 국내에 반입되었음
 - 용도별로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출용,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시험·연구·기술개발용, 국외사용, 외국선박, 항공기 설치용의 순으로 반입
- 100대 이하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시험·연구·기술개발용을 제외하고는 반입 수량의 제한이 없어 대량으로 기자재가 수입
 - 1,000대 이상 적합성평가면제확인으로 수입되는 건수가 63건이나 되며, 1회에 40,500대를 수입하는 경우도 조사됨
 -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들 방송통신기자재가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적합성평가면제확인 대상 기자재에도 사전통관으로 반입된 기자재와 같이 모델명을 기입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6) 방송통신기자재 시장감시체계 개선방안

- 사후관리 제도
 - 해외 주요국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정부 중심의 인증체계에서 민간 중심의 인증체계 확립, 민간기관의 복수화를 통해 인증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전파법령을 개정하여 세부적인 행정처분 체계를 도입하였지만,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욱 강력한 벌금부과 등의 행정제재 방안 마련 필요
- 시험기관협회와 함께 불법·불량 기자재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인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는 관할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법제도 개선
-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불법·불량 기자재를 판매·유통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관련 집중교육을 실시하도록 인증전문교육기관을 시험기관협회에 지정·위탁하는 방안 마련

<조사 및 조치, 교육관련 전파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의2제3호 및 제44조의2제6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조사 및 조치, 교육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44조의2제6호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 및 법 제71조의2제3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업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

20 요약문

현행	개정(안)
	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o 사전통관 제도

-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 차례 수입을 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통관으로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입업체 ↔ 국립전파연구원 ↔ 지정시험기관간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에서 수행하는 방안 강구
- 지정시험기관이 협회에서 발급받은 접수증을 수입업체에게 발급하여 줄 때, 별도 안내장을 만들어 해당기기 수입시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사전통관을 허용하되 이후 부터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이후에 통관을 하도록 함
- 해당 수입업체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2회 이상 통관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터넷 통관포털접속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o 인증소요 기간

- 현행 전파법령상 사전통관 후 인증 받을 때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조항 마련

<인증소요 기간 관련 전파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⑨ (생략)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⑨ (생략) ⑩ 제2항 및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방송통신위원

현행	개정(안)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2개월 내에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u> <u>⑪ 전항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인증을 받을 때 지정시험기관은 2개월 내에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u> <u>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와 통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u></p>
<p>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6. (생략) 6. (생략)</p>	<p>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6. (생략) <u>5의7. 제58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적합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신설></u> <u>5의8. 제58조의2제1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인증을 완료하지 아니한 지정시험기관 <신설></u> 6. (생략)</p>

<인증소요 기간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77조의2(적합인증)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7조의2(적합인증) ①~③ (생략) <u>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란”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방법 및 사전통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u></p>

현행	개정(안)
<p>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p> <p>1. ~ 7. (생략)</p> <p>8.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p> <p>9. ~ 19. (생략)</p> <p>②~④ (생략)</p>	<p>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p> <p>1. ~ 7. (생략)</p> <p>8.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5항·제7항·제10항·<u>제11항 및 제12항</u>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잠정인증 및 사전통관 등에 관한 사항 <개정></p> <p>9. ~ 19. (생략)</p> <p>②~④ (생략)</p>

<인증소요 기간 관련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8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8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법 제58조의2제10항 및 영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p> <p>② 생략</p>

- 인증소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인증기자재의 인증을 유도할 수 있고,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음
- 지정시험기관에게도 2개월 이내에 인증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인증 도모

o 적합성평가확인면제 제도

- 수출용,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전기·행사용 등의 경우 반입 수량을 50대 이하로

제한할 필요성 존재

- 적합성평가면제확인 DB에 모델명을 기재하고, 인증받은 기자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제품에 모델명을 포함한 '면제용 확인라벨'을 부착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5. 정책적 활용 내용

- o 해외 주요국가의 방송통신기자재 시장감시체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시장감시체계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
- o 사전통관 제도,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조사결과는 관련 정책 입안에 활용 가능

6. 기대효과

- o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시장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기대
- o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의 시장감시체계 효율성 증대 및 강화에 기여
- o 효율적인 방송통신기자재 시장감시체계 환경 조성, 관련 법체계 정비 및 활용에 기여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Building to Market Surveillance System for Using of Safet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 o Nowadays,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and materials (hereinafter, equipments) are converged and sophisticated by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n addition, manufacturing (environment) and distribution (environment) is changed. For example, the sales of the equipments have been increasing.
 - In particular, as growing of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an output of equipment has been rising steadily.

- o Main of advanced countries manages a certification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global standards, and they also manage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of their own companies in the global market.
 - As expanding amount of trade with other countries, it is needed to prepare for monitoring system on the market in order to set up safety environment for a using device and protect the health of people.
 - The solution is necessary to prevent illegal import and im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product with low price and defective product.

- o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system of evaluating the conformity and has implemented that system in order to simplify the procedure of certification system and reinforce the methods of ex post facto management since Apr. 2011.
- The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converged to focus on industry and adopted system is evaluating the conformity. For that reason, it is possible to use this system illegally. Firstly, using advantages of deregulation, inappropriate equipments may be produced and the number of them also may be increased. Secondly, the monitoring system on the market can become frail. Thus, in order to resolving the problems, to protect consumer and to reinforce the competition of industry, the monitoring system on the market should be revised effectively.
- o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we will focus on providing solutions and further proposals which can help the policy-makers to prepare for monitoring system on the market of the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and material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o Including Korea system, each country's system of accreditation, certification and ex post facto management will be examined.
- The study will compare and review on the system of ex post facto management of equipments and electronic safety equipment.
- It will be introduced about ex post facto management and examined and analysis laws, object, procedure,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other countries.
- o It will be reviewed about the customs system of equipments in the US and Japan.
- It will be analysed on customs procedure of equipments and the laws in relation to telecommunication

26 SUMMARY

- o The discussion will be the current state of equipments using customs system in advance and confirmation on exemption of evaluating the conformity.
- The issues in relation to Customs and confirmation on exemption of evaluating the conformity will be examined and analysed; and according to those methods, we will deduce the problems to be resolved.
- The certificated equipments will be analysed by the time required for the certification

4. Research Results

(1)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of equipments in some of countries.

o Korea

-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of equipments refers all kinds of action that the government invests, examines and takes measure illegal product and defective product to protect consumers and to prevent jamming of telecommunication network.
- A company in relation to the telecommunication should comply with ex post facto management of equip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Waves Act.
- According to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of the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RRA) and the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CROM), the government can cancel the conformity assessment of equipments, require a company for correction, impose a fine, or give a company a ticket when the government confirms a violation such as infringement of the standard of conformity assessment or illegal distribution.
- According to the number of violation, the government has tried to manage effectively; for example, the amount of fine will be classified by the number of

violation.

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made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by that system FCC runs and supervises the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TCB). Thus, the FCC and TCB do ex post facto management of equipments.
- When a business action is violated against the law, the FCC and TCB can impose a fine and penalty, sentence the business to imprisonment, seize the equipments or forfeit the equipments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is comprehensive regulation.
- With regard to the fine, as the FCC enacted the guideline, the fine can be expected by the business, and be consistent.
- If a business is against the Communication Act, the FCC will impose lenient penalty as a disposition of sanctions.

o Japan

- The certification system of equipments is classified by the nature of device; the terminal devices should be certificated by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and the wireless devices should be certificated by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verification system
- Accredited Certification Body (ACB) certify equipments in Japan, and the government impose the penalty or fine on the ACB or cancel registration of the ACB
- When comparing the Korean system of punishment such as a fine and penalty, the Japanese system of punishment is much heavier than the Korean system.

28 SUMMARY

o China

- The Chinese government only handles the system of certification as system of ex post facto management; and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the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the Network Access License (NAL), the Radio Type Approval (RTA).
- When comparing the Korean system, if a business is against the Chinese law in respect to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impose the punishment whose the level is similar to the punishment on the Korean system.

o The European Union (EU)

- If a business is against the directive of ex post facto management in the EU, not EU committee but the member states of the EU will deal with this matter.
- The member states of the EU including German and France impose the heavy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h a heavy penalty.

(2) The customs system of equipments in other countries

o In the US, the customs system is composed of (a) carry-in report, (b) issue of confirmed paper, (c) inspection, examination, and searching, (d) paying duty, and (e) customs under the Tariff Act in order.

- If a vessel with import arrives in harbour, an importer should entry in customs after products arrived.

o After the customs being arrived the entry from the importer, the customs should issue the entry papers which are entry of import and other papers in relation to import.

- Other papers in relation to import include licence which is required when the business go through the US customs.

- When it comes to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and materials, the equipments are required to get certification of FCC (Article 2.1202 of 47 CFR); and after certification the business should submit the FCC form 740.
- o That is to say, the customs system in the US is 'previous certification and later on customs'.
- o According to the Japanese Customs Act, the customs procedure is composed of entry, screening the papers of entry, examine, end of screening the papers, paying tax, admission of import in order.
- o In order to carry cargo imported into Japanese jurisdiction, the business should report an import kept in a bonded zone to customs which district a bonded zone; and the customs will screen the papers submitted by the business.
- o When the business reports entry, the entry papers are made up with bill of entry, other papers in relation to import which are stipulated by laws in relation to telecommunication.
 - According to the laws, some kinds of cargo should be inspected or met qualifications. When the customs screens the cargo, the business should prove end of screening and the cargo met qualification; and the then the customs will confirm the fact
- o A importer should prove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equip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Waves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hen the importer go though the customs, the business should give the customs proofs; and the Japanese system is 'previous certification and later on custom'.

30 SUMMARY

(3) The Korean system of the customs in advance

- o The purpose of customs in advance is to ease regulation 'certification in advance later on customs'. According to this rule, if equipments should be confirmed by the director of customhouse, if the business promises customs to gets certification toward equipments from the designated institution for inspection or RRA, the equipments will go through the customs without certification in advance.
 - This rule means that the equipments which be gone through the customs are not certificated in advance but will get certification afterwards. There is no limitation concerning the number of customs and the cases of customs under this condition
 - However, the predictable problem is that the business with intention can distribute equipments illegally that are not certificated.
- o When searching the equipments gone through the custom in advance in 2010, the total cases of equipments is 3,964; among them 2,815 cases are certificated, and 1,149 cases are not certificated afterwards.
- o Many of importer is a petty merchant. They usually do not know whether or not equipments are certificated.
- o When merchants import same model, there are some cases that some merchant did not get the certification of equipments; and the equipments are certificated repetitiously by each merchant.
- o Thus, the improve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a business from importing equipments without certification several times or without notice that the equipment is already certificated.

(4) The system of conformation on exemption of evaluating conformity

- o The system of confirming exemption of evaluating conformity is that the government permits a business exempting the certification according to use of equipments when imported. When a business uses the equipment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nd export, this rule applies to the uses.
- o The equipments confirmed on exemption of evaluating the conformity were imported during the period from 24th of Apr, 2010 to 24th of July, 2010; and the cases of import were 3,061 and the aggregate number of equipments was 315,496.
 - With regard to use of equipments imported, the export had the largest number of equipments, followed by service of common carrier, examination and R&D, overseas use, foreign vessel, installing aircraft in order of mention.
- o Excluding the equipment for examination and R&D which the number of custom is limited by 100, there are no limitation about the quantity; therefore, the business may import the equipments in bulk.
 - When it comes to the number of import confirmed on exemption of evaluating conformity being over 1,000, the case of it was 63, and there was 40,500 equipments imported just one time.
 - If a business imports equipments in bulk, the fact increases possibility to distribute equipments in the market illegally. The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it.
- o One of the effective solutions may be ex post facto management; the policy, ex post facto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to report the name of equipments which should be confirmed on exemption of evaluating conformity like equipments imported with customs in advance.

32 SUMMARY

(5) The time required for certification

- o Using the customs system in advance, among 2,815 equipments which were imported in Korea in 2010, the 1,323 equipments took about one month for certification and 47 per cent of total equipments. 533 equipments required one month to two months for end of certification, was 18.8 per cent of total equipments; and 248 equipments required two months to three months for end of certification, were 8.8 per cent of total equipments.
- According to the time required to get certificated, the portion of equipments was 66 per cent (1,865 cases) in case of within two months, 74.8 per cent (2,104 cases) in case of within three months; and 11.7 per cent (330 cases) in case of over six months.
- o A business imported the equipments as customs in advance; however, among them, 262 cases (9.3 per cent of total cases) were already got certificated, and when it comes to 23 cases (0.8 per cent of total cases), the date of ending certification procedure was same to the date of customs.
- o When it comes to end of time that the business being required to got certification by, there is no legal ground under the Radio Waves Act. Thus, many of importers do not realise why they should get the certification promptly.
- o In the US, the time is required two to five days for certification. In the case of the EU, there is no time required for certification due to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but the Notified Body (NB) may examine equipments for certification by requirements of manufacturer. In the Japan, the time is required fifteen days for certification because the duty of regulation in the Japan Approval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JATE).

- o The policy-makers should enact provisions on the Radio Waves laws apparently with respect to the time required from customs in advance to ending certification procedure.

- (6) Improvement of monitoring system on the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and materials market
 - o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 The governments of other countries constructed the certification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ave managed it. The subject to grant certification about the equipments switched government into private institu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ease the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the government admits establishment of the number of private sectors.
 -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n the laws in relation to telecommunication, the punishment is not enough that other punishments such as administrative sanction are needed such as heavy penalty.
 - The policy-makers should establish the legal ground of delegation regarding to private sector on the law in order that government and association of inspection institute crackdown on illegal and defective products.
 - The policy-makers should amend the system in order that the institute educated the business including a manufacturer and an importer on certification system and it leads the business to comply with the law voluntarily.
 - In order to prevent that the business sell and distribute illegal and defective products, the policy-makers should revise laws in relation to telecommunication. The main contents of revision are required that (1) the business should be trained about the certification system intensively by professional institute; and (2) the institution should be designated by the association of inspector institute.

34 SUMMARY

o System of custom in advance

-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business from importing many times with no certification and ignorance, which the equipments already got certificated.
- The Solution is that the Korea Telecommunication Testing Laboratory Association (KOTTA) does work between an importer, the RRA and the designated institution for inspection due to they are not connected each other with computer network.
- When the designated institution for inspection issue a filling receipt to an importer, the institute should prepare for notification. The notification has to contain that the customs system in advance is permitted at only first time when the equipments are imported; and afterwards the business should get certification before the customs.
- If a business asks the customs over two times with regard to equipments which is not certificated, the customs should block out access to the electronic clearance portal system of Korea Customs Service (Uni-Pass) toward the business.

o The system of confirmation on exemption of evaluating the conformity

- The quantity of equipments should be reduced until 50 when it comes to equipments for export, services of common carrier or events.
-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construct the data base system of confirming exemption of evaluating conformity, and the name of equipments should be reported in the DB system. A label to identify exemption including the name of equipments should be attached in the equipments whose name is reported in the DB system.

o The time required for certification

- The period required for certification should be regulated newly as clear provisions under the laws in relation to radio waves.
- It makes the period required time apparent; and it also leads a business to get

certification toward equipments which is not certificated, and prevents a business from illegal distributing equipments.

- Moreover, the designated institution for inspection should finish the procedure of certification within two months and also the solution will shorten the time required for certification.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o Through the results from comparative study about the monitoring system on the equipments market, the policy-makers can use the result to improve the system.
- o The results of examination and analysis about the current state of equipments will help the policy-maker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with using the customs system in advance and system of confirmation on exemption of evaluating the conformity.

6. Expectations

- o The result will provide a legal ground for revision of laws in relation to telecommunication in order to construct healthy monitoring system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 o In addition, one can expect that the effectiveness will increase and be tightened toward monitoring system o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 o Finally, this research will help the policy-makers to set up effective system on telecommunication market, revise the laws and execute policies in practic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현재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통신기자재가 다양하게 융·복합화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량 증가 등 제품의 제조·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인증건수 및 기기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1> 방송통신기기 인증건수 및 국내 생산액

(단위: 건, 조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인증건수	10,070	11,079	11,194	12,771	17,665
생산액	62.76	69.28	79.69	80.58	89.90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국립전파연구원 인증현황

또한 해외국가와의 FTA¹⁾, MRA²⁾를 통한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통신기기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고, 저가·불량 제품의 유통확대로 안전한 기기 이용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법·불법 수입제품 유입에 대비하고 부적합기기의 유통방지 및 국내 소비자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

1)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2) 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국 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율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적합 또는 결함 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 등 기업 스스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제도 간소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국 제품의 세계 시장진입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과거 인증제도만으로는 부적합 또는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기간 간섭 및 전자파 인체영향 등 각종 위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합기기의 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표 1-2> 부적합기기 현황

(단위: 건, %)

구 분	인증건수	사후관리	부적합기기
'06년	10,070	724 (7.2)	110 (15.2)
'07년	11,079	884 (8.0)	150 (17.7)
'08년	11,194	970 (8.7)	184 (19.1)
'09년	12,771	827 (6.5)	147 (17.7)
'10년	17,665	756 (4.3)	126 (16.7)

자료: 국립전파연구원 인증현황,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통계

따라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시장감시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 인증제도를 간소화하고, 사후관리³⁾ 방안을

3) 사후관리란 소비자 보호, 전파혼신 및 방송통신망 방지 등을 위해 유통되는 불법·불량기기를 조사·시험·저치하는 모든 행위로서, 인증받은 기기의 인증 당시 성능·기준·표시의무 등 이행여부와 인증 받지 않은 기기의 유통, 무단 복제·개조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강화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적합성평가제도는 종전의 정부 주도의 인증체계를 변경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민간 주도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개편하였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재 및 판매목적 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는 등 인증체계의 간소화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 등 국제 교역환경의 변화로 동등한 수준의 적합성 평가체계를 요구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적합성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체 중심으로 인증제도가 전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으며,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제완화를 이용한 부적합기기의 범람 및 시장감시 기능의 약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 시장감시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1-3> 불법 방송통신기기 단속 현황

(단위: 건, 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8월
미인증 기기	492 (157,432)	290 (45,319)	410 (1,870,246)	268 (64,725)	182 (30,875)
인증표시 미부착	28 (1,409)	16 (898)	64 (354,228)	41 (866)	17 (1,150)
기기변경	19 (6,206)	8 (197)	14 (8,287)	8 (136)	15 (3,760)
개조·변조· 복제	-	8 (1,671)	-	2 (9)	2 (4)
계	539 (165,047)	322 (48,085)	488 (2,232,761)	319 (65,736)	216 (35,789)

자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통계

제2 절 연구의 범위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주요국의 방송통신기자재 제품의 사후관리, 시험·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을 검토한다(제2장). 특히 국내의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제도인 사전통관 제도와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안전기기의 사후관리를 비교·검토한다. 해외주요국의 경우 사후관리의 개요, 관련법령, 대상, 절차,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사전통관 제도,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전통관 및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사전통관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기자재 중 인증받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인증소요 기간을 분석한다(제3장). 이를 위해 관세청 세관장 DB와 국립전파연구원 인증현황 DB를 상호 대조·비교하여 사전통관 제품의 인증여부 및 인증소요기간 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검토하였던 해외주요국의 사후관리 제도의 시사점 도출하고, 사전통관 및 적합성평가확인면제 제도의 문제점과 인증소요 기간에 대한 법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시장감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제4장).

제2 장 주요국가의 사후관리 제도

제1 절 한국

1. 제품 사후관리

제품의 사후관리란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가 인증 당시 성능,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과 인증 표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인증 받지 않은 기자재의 불법유통, 무단 복제, 개조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증 받은 기자재 및 인증 받지 않은 기자재의 관리를 일컬어 제품 사후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인증 받은 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이하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증제도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목적은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의 안전보호 및 전기통신망 보호, 전파이용 질서유지이다. 여기에서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제3자인 인증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⁴⁾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월 24일 전파법을 개정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

4) 문태현(2009), 『방송통신기기 시장 감독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KORPA 연구 2008-04, 수행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파진흥원, 11면 참조.

42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전파법 제78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이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전파법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8.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1)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

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②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③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다(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44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는 아래 <표 2-1>과 같이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무선방위 측정기, 경보자동전화장치, 선박국용레이더기기 등이 있다.

<표 2-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구 분	대상기자재
적합인증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무선방위측정기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경보자동전화장치
	단측과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선박국용레이더 기기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용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네비텍스수신기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의 기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기기
	차동식별장치용무선설비의 기기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의 기기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 로봇의 기기
	라디오부이의 기기
	무선설비 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구 분	대상기자재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 코드없는전화기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 단말기기류 시스템류 회선중단장치류 전송망기자재류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의 신청시 적합인증신청서,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을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다(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적합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의 적정성,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을 심사하여 적합인증을 한다(동 고시 제6조제1항).

2) 적합등록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

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적합등록이라고 한다(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적합등록은 지정시험기관과 자기시험 등록대상 방송통신신기자재로 나뉘는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를 의미하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방송통신기자재는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를 말한다.

<표 2-2>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구 분	대상기자재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정보기기류(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성품 등)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구 분	대상기자재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기타 대상이 되는 기자재
자기시험 적합등록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시험·측정용 계측설비)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산업용컴퓨터 및 플랜트 설비 등)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전자식 운항기록계, 주 차차단 제어장치)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콘넥터, 분배기, 분기기, 동축케이블, 보 호기, 직렬단자 등) 전기철도기기류 기타 소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등록신청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 적합인증 절차에 따라야 한다(동조제3항). 그러나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48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른다.

적합등록을 한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 지정서,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파생모델에 관한 서류, 변경사항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동 고시 제10조).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표2와 별표3의 대상기자재 중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소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소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자기 시험성적서 (제3조제3항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 제1호의 공통기준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등록하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제16조제1항 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잠정인증

잠정인증이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①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②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③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관련 국내의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전파법 제58조의2제7항).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의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잠정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등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한글본)

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다.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소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할 것

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 식별이 가능할 것

8.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하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동 고시 제12조). 이때의 서류심사 항목은 제출서류의 적정성, 잠정인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사용지역 또는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이며, 제품심사 항목은 국제표준기구(ITU⁵⁾, ISO/IEC⁶⁾의 표준,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방송통신 관련 표준,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을 말한다(동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잠정인증의 심사 등) ① 소장은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

5)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6)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표준회의

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며(전과법 제58조의2제8항),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위의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동조제9항).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2) 사후관리 제도

1) 개요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란 소비자 보호, 전파혼신 및 방송통신망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유통되는 불법·불량기기를 조사·시험·조치하는 모든 행위로서 ① 인증 받은 기기의 인증 당시 성능·기준·표시의무 등 이행 여부, ② 인증 받지 않은 기기의 유통, ③ 무단 복제·개조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이다. 불량기기 등이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시험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기자재의 불법기기, 불법유통 등의 조사·단속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은 전과법에 의한 적합인증, 적합등록 기자재 총 65종으로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사후관리 대상 방송통신기자재

구 분	적합인증(50종)			적합등록(15종)
	인증목적	통신망 위해 방지	인명구조	혼간섭 방지
대상기기	유선기기	무선기기	무선기기	정보기기
품목	전화기, 팩스 등	레이더 등	휴대폰 등	PC, 프린터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 대상 방송통신기자재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기준은 ①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유관기관 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기, ②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자의 기기가 대량 유통되어 이용자가 많은 시기, ③ 허가, 신고없이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을 변경신고한 사실이 있는 기기 등이다.⁷⁾

2) 관련법령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관련법령은 전파법으로서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전파법 제58조의제10 제1항). 또한 위를 위반하여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제2항).

제58조의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7) 문태현(2009), 앞의 책, 20면.

54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58조의11).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동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복제·개조·변조의 금지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동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9조의2·제24조·제25조·제29조·제45조·제52조·제58조·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불량기기의 사후관리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불법기기의 사후관리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사 및 조치기준·방법 고시에 따라 실시된다.

3) 절차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전파법 제71조의2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고시 제21조제1항).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① 요구목적, ② 기자재 명칭, ③ 모델명, ④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번호, ⑤ 수량, ⑥ 제출기한, ⑦ 제출장소 등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동조제4항). 그러나 ①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소장에게 보고한 경우, ②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동조제1항 단서). 사후관리 실시 후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시 반환하며,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동조제5항).

제21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71조의2에 따라 소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11제1항 제4호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소장에게 보고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④ 소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1. 요구목적

2. 기자재 명칭

3. 모델명

4.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번호

5. 수량

6. 제출기한

7. 제출장소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구매한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시 반환한다.

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고시 제22조제1항),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동조제3항).

제22조(사후관리 시험 등) ① 소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방송통신기기 및 기기의 불법 복제·개조·변조 등 여부에 대한 조사·단속을 실시하는 바, 전파법 제71조의2 및 조사 및 조치기준·방법 고시에 따라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선설비 및 기타 전기적 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유통과정에서 그 기기를 조사할 수 있다(고시 제1호). 불법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는 연 4회 실시하며, 수시·정기(반기 1회) 단속 등을 수행한다.

1.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선설비 및 기타 전기적 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유통과정에서 그 기기를 조사할 수 있다.

4) 행정처분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에 따라 적합성평가 기준 위반, 불법유통 등 불법사실 확인시 적합성평가의 취소, 시정명령,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먼저 전파법 제58조의4 및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별표 23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적합성평가를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생산·수

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3차 위반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게 된다.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1개월), 3차 위반시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처분을 부과한다. 만약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시장명령, 2차 위반시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3차 위반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며, 위의 사항 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다.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3차 위반시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4개월) 처분으로 받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및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합성평가가 취소된다.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수거·파기 명령도 하게 된다.

<표 2-4>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1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취소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1개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2호	취소	-	-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이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취소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4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4 제2항제1호	취소	-	-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 제2항제2호	취소	-	-

다음으로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살펴보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전과법 제84조제5호 및 제6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및 복제 또는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전과법 제86조제4의2 및 제5의2).

<표 2-5>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금부과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금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법 제84조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법 제84조제6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법 제86조제4의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법 제86조제5의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지막으로 전과법 시행령 제124조, 별표 23에 의한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적합등록 후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자,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및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 2-6>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적합등록 후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제5호의2	100	200	300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4호	50	70	100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자,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법 제90조제5호의3	100	200	300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5호	50	70	100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제5호의4	100	200	300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제5호의5	100	200	300

(3) 전기안전기기 사후관리

1) 개요

전기안전기기의 사후관리란 전기안전 인증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지 사후관리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구분된다. 안전인증 기기의 조사는 안전인증기관⁸⁾에서 담당하며, 불법·불량

62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제품의 조사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담당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의해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선 및 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대상기기는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분 류	세부 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100Hz 이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방폭형 제외)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퓨즈 및 퓨즈홀더 기기보호용 차단기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조압조정기(정격용량 5kVA 이하, 특수구조 제외)
전기기기	전기청소기(정격입력 2.5kW 이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정격입력 1kW 이하)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정격입력 1kW 이하) 모발관리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주방용 전동기기(정격입력 1kW 이하) 전기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냉장·냉동기기(정격입력 1kW 이하) 전자레인지(300MHz~30GHz 이하)

8) 안전인증기관이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분 류	세부 품목
	가정용 전동재봉기 전기충전기(출력전압 50V 이하) 전기건조기(의류용) 전열기구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및 제습기 유체펌프(액체온도 90°C 이하, 정격입력 1.5kW 이하) 전기가열기기 사우나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기포발생기기 전격살충기 전기용조 공기청정기(정격입력 500W 이하) 자동판매기 팬, 레인지후드(정격입력 500W 이하) 화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전기분무기 전기소독기 음식물처리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전동공구	전동공구(정격입력 1.5kW 이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정보·사무기기	복사기(정격출력 1.2kW 이하) 직류전원장치(정격용량 1kVA 이하)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 10kVA 이하) 코팅기
조명기기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안정기내장형램프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격살충기

64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에 의해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선 및 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대상기기는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분 류	세부 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고주파웰더 전기용접기 (정격용량 5kVA 이하, 특수구조 제외)
전기기기	과일 껍질깎이 감자 탈피기 전기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 전기용해기 애완동물 목욕기 이미용기기 전기 주류 숙성기 전기시계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구강청결기 전기분수기 투영기

분 류	세부 품목
	해충퇴치기 전기집진기 착유기 서비스기기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 폐역 회수 환기장치 게임기구 진동형 롤스크린 전기훈증기 수도 동결 방지기 보풀 제거기 산소이온 발생기 전기정수기 전기세척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작동 도어록 전기헬스기구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 100kVA 이하)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 100kVA 이하)
전동공구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텔레비전수상기 영상모니터 편집기 디스크플레이어 앰프 오디오시스템 전자악기 비디오게임기구 TV영상프로젝터 오디오프로세서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영상프로세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정보·사무기기	프린터(정격입력 600W 이하, 바코드, 영수증, 통장, 플로터, 라벨, 그래픽 전용 제외)

분 류	세부 품목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천공기 재단기 제분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백열등기구 방전램프 기타 조명기구 기타 램프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건전지(충전지만 해당)

2) 관련법령

전기안전기기 사후관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하면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1항).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동조제3항).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된다(제7조제1항).

제7조(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외에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서도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②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④ 그 밖에 제품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제9조제1항).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과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제품안전협회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법·불량제품의 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제21조제3항).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①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3) 절차

전기안전기기의 사후관리는 안전인증기관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연 1회 이상)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에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

제5조(안전검사)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불법·불량제품의 조사·단속을 실시한다.

4) 행정처분

안전인증 및 표시, 정기검사 거부 등의 위반시 인증취소, 개선명령,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8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1회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인증표시 사용금지(2개월), 3회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반면에 중대한

결합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시 인증표시 사용금지(2개월), 2회 위반시 인증표시 사용금지(4개월), 3회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매우 중대한 결합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인증을 취소한다.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인증표시 사용금지(2개월), 3회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이 공장 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인증표시 사용금지(2개월), 3회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인증표시 사용금지(2개월), 3회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그러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인증표시 사용금지(2개월), 2회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인증표시 사용금지, 3회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인증표시 사용금지(2개월), 2회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표 2-9>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안전기준	법 제8조 제1항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인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인증취소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	-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	인증취소	-	-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7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	법 제8조	개선명령	인증표시	인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제1항제8호		사용금지 (2개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9호	인증취소	-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0호	인증취소	-	-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0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

다음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별표 8에 의해 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1회 위반시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6개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3회 위반시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6개월)가 부과되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시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2회 위반시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6개월)이 부과된다.

만약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위반시 표시사용금지(6개월)이 부과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3회 위반시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6개월)가 부과되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위반시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6개월)가 부과된다.

<표 2-10>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호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6개월)	-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 제2호	개선명령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6개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 제2호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6개월)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 제2호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6개월)	-	-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3호	개선명령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6개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4호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6개월)	-	-

벌금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자, 안전검사를 받은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

74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또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동법 제26조).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7.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와 관련하여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1조제4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시험·인증기관의 사후관리란 인정받은 시험·인증기관이 인정받을 당시의 기준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험·인증기관의 사후관리는 인정이 전제조건이 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인정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시험·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인정제도

인정(Accreditation)이란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절차에 따라 조직(시험기관) 또는 사람(서명권자)이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교정·시험·검사 능력의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국내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등의 내적인 필요와 무역의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규격 부합화, 제도와 적용규격의 차이점 해소 및 국제관행과 기준에 적합한 적합성평가 제도의 도입,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 유지, 측정결과의 신뢰성 요구, 선진국들의 자국산업과 소비자 보호, 안전과 환경보호 등의 기술장벽의 대처를 위한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의 외적인 요인에 따라 인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⁹⁾

국내 인정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인정기구인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KOLAS는 지난 1998년 10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LAC)와 MRA를 체결하였으며, 2000년 11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와 MRA를 체결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9) 허경일·최성민(2009), “KOLAS 인정제도 운영 현황”, 『TTA journal』 No.125, 88면.

ILAC은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시험기관 인정 프로그램 간의 국제적인 협력체로서 1996년 공식화되었으며, 2011년 6월 현재 총 72개의 시험기관 인정 기구가 공인시험 및 교정데이터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ILAC MRA에 서명하였다. ILAC은 시험기관 인정절차의 개발, 시험기관 인정 장려 및 인정시스템 개발지원 등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와 인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LAC의 회원은 지역협력기구(ILAC와 양립하고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설립된 지역협력기구), Full Member(ILAC MRA에 서명한 기관), Associates(ILAC와 MRA에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총회에 참가하는 기관), Affiliates(때때로 ILAC 총회의 결정에 따르는 기관), Stakeholders(ILAC 업무와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로 구성된다.

APLA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을 인정해 주는 기관의 단체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2011년 6월 현재 33개의 시험인정기구가 APLAC MRA에 서명하였다. APLAC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내에서 능력을 갖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간 인정업무의 조화를 추구하며, 공인시험, 측정 및 검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회원 간의 정보교환, 기술지침 문서 개발, 시험기관간 비교, 시험기관 평가사 교육, 상호인정협정 체결절차 및 규정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한다. APLAC 총회는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에서 지명된 대리 파견인으로 구성되며, APLAC 목적과 관계된 업무에 책임이 있다.

(2) 사후관리 제도

국제공인시험기관은 KOLAS 마크가 삽입된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2011년 6월 현재 KOLAS 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으로 총 36개의 시험소가 등록되어 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공인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정기구의 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인정 후 1년,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평가 이후에는 24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4조제1항).

제24조(사후관리) ①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제15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인정 후 1년이내, 그 이후에는 18개월이내에 정기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갱신평가 이후에는 24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정기구의 장은 ① 공인기관의 성적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고객이 이의의 제기하였을 경우, ③ 숙련도 시험 실시결과 동일 중분류에서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이상 값을 산출한 경우, ④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동조제6항).

제24조(사후관리) ⑥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인기관의 성적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숙련도 시험 결과 동일 중분류에서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만족을 발생 공인기관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숙련도시험 불만족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결과를 보고치 아니한 공인기관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리고 인정기구의 장은 ① KOLAS 인정마크의 사용중지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부여된 기간 중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되었거나, 공인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술책임자 또는 해당분야 시험검사요원이 없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④ 소급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⑤ 시험·검사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⑥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⑧ 숙련도시험 결과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 후 기간 내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⑨ 숙련도 시험결과 동일 항목에 대해 2회 연속적으로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경우, ⑩ 휴지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⑪ 공인기관이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홍보 등을 행하는 경우, ⑫ 평가결과 치명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해 공인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9조).

제29조(인정 취소 등) ④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해 공인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KOLAS 인정마크의 사용중지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부여된 기간 중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되었거나, 공인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책임자 또는 해당분야 시험검사요원이 없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소급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시험·검사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80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6.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8. 숙련도시험 결과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 후 기간 내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9. 숙련도 시험결과 동일항목에 대해 2회 연속적으로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경우
10. 휴지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1. 공인기관이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홍보 등을 행하는 경우
12. 평가결과 치명결함이 발견된 경우

KOLAS외에 MRA 협상을 추진하면서 지정시험기관 등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심사를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인정기준(ISO 17011)에 부합하는 방송통신전문심사기구(Korea Communications Lab Accreditation Program, KCLAP)에서 담당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KCLAP은 국제적인 인정체계를 갖춘 전문심사기구에서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통관제도

1989년부터 시행된 수입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은 당초 그 수량이 매우 적어 세관 장확인품목에서 제외되었고, 인증업무 또한 일부 제조사의 품목(산업용 무전기, 전화기 등)에 대해서만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여 왔다. 이후 기간통신사업의 활성화로 휴대폰과 정보기기(컴퓨터, 프린터 등)의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졌고, 수입기

기도 해마다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부터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 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기 시작하였고,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통신시장의 활성화와 불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입방송통신기기의 통관은 계속하여 세관장확인품목에서는 제외하였지만 통관후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선통관 후인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의 불법판매는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인증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불법판매를 할 수 있는 선통관 후인증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10년 1월부터 수입방송통신기기 인증내역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관세청과 공동으로 구축하였다. 따라서 통관단계에서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관장물품에서 제외된 방송통신기자재를 세관장확인품목으로 포함하여 통관시 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입허가를 내주는 “선인증 후통관” 제도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10여년 동안 유지한 선통관 후인증 제도를 선인증 후통관으로 바꾸기에는 관련 산업체 및 수입업체들의 불만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인증 후통관을 유지하면서,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지정시험기관과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시험과 인증을 반드시 받는다는 조건으로 통관을 해주는 사전통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4. 적합성평가면제 확인 제도

지난 2011년 1월 24일 전파법을 개정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재 및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

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등의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는 적합성평가면제 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파법 제58조의3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르면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면제해주고 있다. 위에 따른 면제대상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100대 이하(다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인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면제확인수량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수량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기

자재 : 면제확인수량

- o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 o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제 2 절 미국

1. 제품 사후관리

미국의 제품 사후관리 검토를 위해 먼저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제품의 사후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증제도

미국에서 인증과 관련된 법령은 통신법(Communications of Act), 미연방법전(47 U.S.C-전신, 전화 및 무선전신), 미연방규정(47 C.F.R-전신통신)이 있다. 따라서 유무선 통신장비, 소출력 무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전기·전자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반드시 FCC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표 2-11> 미국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구 분	세부품목
인증 (Cert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st transmitters • Scanning Receiver • DoC / SDoC 기기 중 선택 기기
공급자 적합선언 (SD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TN connected Telephone Terminal (SDoC or Certificati
적합선언 (D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st receivers • CB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 Superregenerative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DoC or Certification) • TV interface device(DoC or Certification), •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DoC only),

구 분	세부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 (DoC or Certification) •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DoC or Certification) •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DoC) • Consumer ISM(Part 18)
증명 (Ver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Broadcast Receiver • FM Broadcast Receiver • Stand · 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 All other devices • Other ISM eqpt(Part 18) • All other ITE • Pt to pt Microwave • Broadcast transmitters • Aux.BC transmitters • INMARSAT equipment • 106 MHz ELT • Cable TV Relay xtrm • Wildlife tracking xtrm

<표 2-12> 미국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시험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 및 표준
○ 정보통신기기 시험 인증관련 일반 원칙(제251조 · 제255조)	연방통신법
○ 정보통신기기 시험 인증관련 일반 원칙(제251조 · 제255조) ○ 인증에 관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 무선기기, EMC 등의 인증의 OET로의 권한 위임	연방규정(CFR) Title 47

86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시험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 및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0. 241 - 유선기기 인증의 CCB로의 권한 위임 : Part 0. 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민간인증기관(TCB)지정 및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기기 : Part 2.960, 2.962 - 유선단말기기 : Part 68.160, 68.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인증제도 관련사항: Part 2, Part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rification : Part 2, Part 68 - DoC : Part 2.906 - Certification : Part 2.907 - SDoC : Part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무선기기의 인증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의도 방사기기에 대한 인증 : Part 15.101 - GMPCS에 대한 잠정인증 : Part 2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유선기기의 인증관련사항 : Part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단말기기 인증조건 : Part 68. 300~3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민간인증기관의 운영조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C Public Notice DA 99-1640 	FCC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전기통신 네트워크 접속규제 인증가이드 : TIA/EIA TSB 129-A 	TIA ¹⁰⁾ /EIA ¹¹⁾ 표준

<표 2-13> FCC 인증 관련 규정(47 CFR)

관련규정	대상기기
Part 11	긴급정보시스템(Emergency Alert System)
Part 15	소출력장치(Low Power Unlicensed Devices)

10)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Association

11) Electronics Industries Association

관련규정	대상기기
Part 18	ISM 장비(ISM Equipment)
Part 20	상용이동무선(Commercial Mobile Radio)
Part 22	공용이동(Public Mobile)
Part 24	개인이동통신(PCS)
Part 25	위성통신(Satellite Communications)
Part 27	기타통신(Miscellaneous Communication)
Part 68	전화접속장비(Telephone Terminal Equipment)
Part 73	방송업무(Broadcast Service)
Part 78	케이블방송중계(Cable Television Relay)
Part 80	해상업무(Maritime Service)
Part 87	항공업무(Aviation Service)

FCC는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을 위한 최상위 규제기관으로서 인증규제 및 인증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MRA 체결시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CAB)을 승인하고 민간인증기관·시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FCC는 1998년 ‘통신규제 합리화계획’을 통하여 유선단말기기 기술기준(47 CFR Part 68) 제정권을 단말장치접속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 ACTA)에 위탁하고 TCB 32개 업체(국내 18개, 해외 14개)를 지정하여 FCC의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대상기기는 무선전화, 해상구명용 장비 및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저출력송수신기류, PC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류, 전화선에 연결되는 장치(전화기, 팩시, 모뎀류)가 해당된다.

FCC는 1998년 규제완화를 시행하면서 인증제도를 단순화하여 인증(Certification), 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공급자 적합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증명(Verification)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인증절차를 구분하여 운

영하였으며, 시험기관도 인증제도별로 구분하였다.

<표 2-14> 미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구 분	인증주체	시험기관	기기 등록방식	대상기기
인증 (Certification)	FCC/TCB	공인시험기관	FCC로부터 Grant Code 부여	대부분의 송신장치, PC · 주변장치, 소출력 수신장치, Scanning Receivers
공급자 적합선언 (SDoC)	미국내 제조사 또는 수입자	제조사 부설시험기관 또는 제3의 시험기관	DoC 후 ACTA 등록	PSTN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제품
적합선언 (DoC)	미국내 제조사 또는 수입자	공인시험기관	DoC 후 자체보관	PC · 주변기기, 소비자용 ISM 장치, 대부분의 수신장치 TV · FM 수신장치, Digital Device, 대부분의 ISM 장치, Pt-to-Pt Microwave, CATV Relay 전송장치
증명 (Verification)	미국내 제조사 또는 수입자	제한없음	자체보관	

자료: 전파연구소(2009), 미국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참조.

<표 2-15> 미국 인증, 적합선언, 공급자 적합선언 절차

구 분	절 차	소요기간	유효기간
인증 (Certification)	①신청→②시험(시험기관 또는 TCB)③→ TCB 인증	2-4주	없음
공급자 적합선언 (SDoC)	①시험(시험기관)→②시험성적서 발급→③ SDoC발행(신청자)→④자체보관→⑤ACTA 등록	-	-

적합선언 (DoC)	①시험(시험기관)→②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③DoC발행(신청자)→④자체보관→⑤등록		
증명 (Verification)	①시험(시험기관)→②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③자체보관→④등록		

자료: 전파연구소(2009), 미국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참조.

<표 2-16> 미국 인증, 적합선언, 공급자 적합선언 서류 등록 절차

구 분	서류 등록 절차
FCC 인증	시험 → FORM 730 및 성적서 등 서류 TCB 제출 → 수수료납부 → 제출
입증 및 적합선언	FCC OET 데이터베이스 등록
공급자 적합선언	ACTA 서식(SDoC)에 따른 등록
TCB 인증절차	①Grantee code 신청→②FCC Form 731및 성적서등 서류제출→③전자신청→④수수료납부→⑤TCB/FCC인증서발급→⑥FCC데이터베이스 등록 ※ 유선기기 : ACTA 서식에 따라 ACTA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 전파연구소(2009), 미국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참조.

이와 비교하여 전기용품(산업용품)안전 인증은 노동부 산하기관인 직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OSHA의 심사를 통과한 국가인정 시험기관(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RTL)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였다. OSHA로부터 지정된 NRTL로는 UL,

CSA, TUV, ISRNA 등 18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대상기기는 OHSA에서 지정·고시하며, 컴퓨터, 모니터, A/V기기, 가전기기 등 37개 품목 약 660여개 품목이 해당된다.

(2) 사후관리 제도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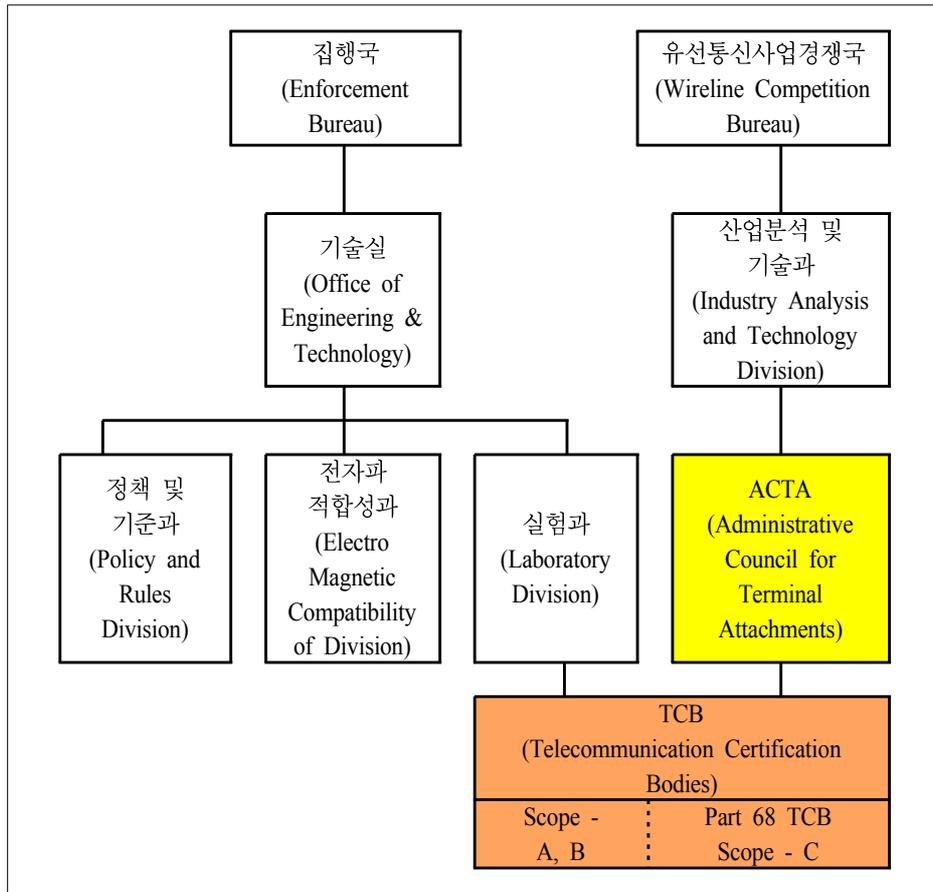
미국은 위의 인증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증체계가 민간부분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사후관리는 민간기관(TCB, ACTA)의 도입으로 민간부분과 정부(FCC) 부분으로 구분되는 바, FCC 내의 집행국(Enforcement Bureau, EB), 기술실(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OET)이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행정처분 및 무선장비의 검증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TCB는 FCC가 설립한 비정부조직으로써 FCC 규칙인 CFR Title 47 Part 2 제2.960조에 따라 인증발급 권한 및 사후관리 권한을 갖으며, 정기적으로 FCC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ACTA는 비정부·독립적 통신산업법인으로써 FCC 규칙인 CFR Title 47 Part 68에 의해 제조·유통되는 유선통신단말기기의 기술기준 채택 및 인증기기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실(OET)의 사후관리는 TCB가 설립된 이후부터 점차 TCB의 역할이 증대되어 2010년 한 해 동안 OET가 수행하던 Equipment Authorization Program의 98.5%가 TCB에 의해 인증되었다(1%만이 예외).¹²⁾ 그 이유는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복합기기의 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사후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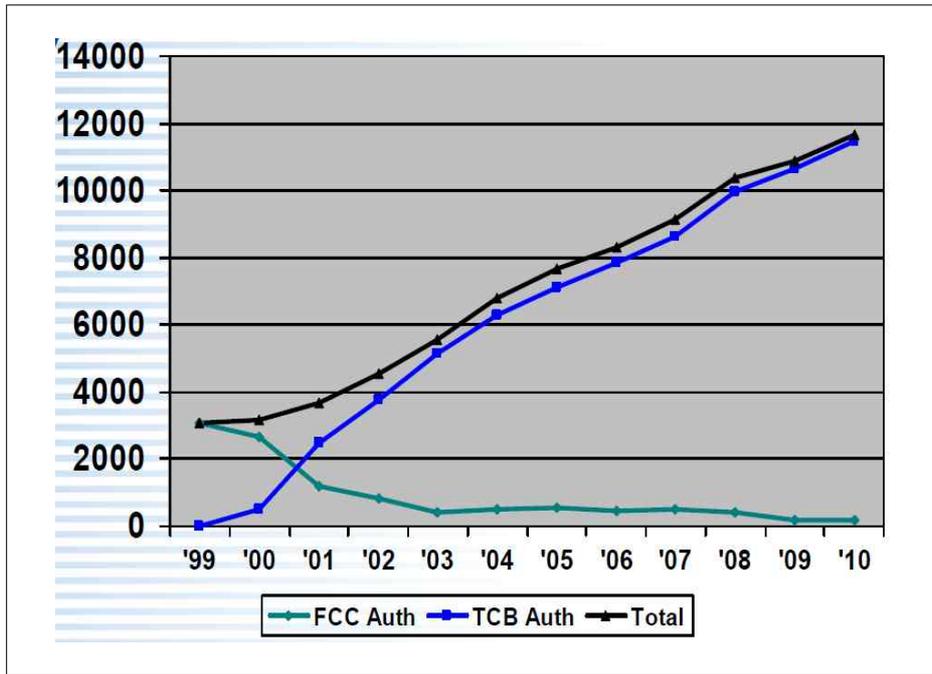
12) FCC(2011), TCB Workshop 참조.

[그림 2-1] FCC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조직 체계



자료: 전파연구소(2009), 미국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참조.

[그림 2-2]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추세(1999년~2010년)



자료: FCC, TCB Workshop, 2011.4.

다음으로 민간 사후관리는 TCB 및 ACTA 인증기기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기기는 아래 <표 2-17>과 같다.

<표 2-17> 미국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대상기기

Scope A - 미인증 RF 기기	
A1	(대역확산 기기를 제외하고) 1 G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저용량 송신기, 응급경보시스템, (PC와 주변기기와 TV 인터페이스 기기들과 같은) 비의도성 방사 기기와 (전자렌지, RF등과 기타 소비자 ISM 기기들과 같은) 인증을 따르는 소비자 ISM 기기

Scope A - 미인증 RF 기기	
A2	대역확산기기를 제외하고 1 GHz 이상의 주파수를 작동시키는 저용량 송신기
A3	무허가 PCS 기기
A4	UNII(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기기 및 대역확산 기술을 사용하는 저용량 송신기
Scope B - 허가된 무선 서비스 장치	
B1	47 CFR Part 22(셀룰러), 24, 25, 27에 나오는 개인용 휴대용 송수신장치
B2	47 CFR Part 22(비셀룰러), 73, 74, 90, 95, 97에 나오는 일반 휴대용 송수신장치
B3	47 CFR Part 80, 87에 나오는 해상 및 항공 무선 서비스
B4	47 CFR Part 27, 74, 101에 나오는 초고주파 무선 서비스
Scope C - 전화단말장치	
C1	47 CFR Part 68에 나오는 전화단말장치

2) 관련법령

미국의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는 앞에서 살펴본 통신법과 FCC 연방규칙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사후 시장감독 절차(TCB Post-market Surveillance)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FCC는 Forfeiture Policy Statement를 제정하여 벌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3) 절차

TCB의 사후관리 절차는 ISO/IEC Guide 65에 따라 TCB가 인증했던 제품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 시장감독 절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한 후 그 결과를 FCC에 보고한다(47 CFR § 2.962).

47 CFR § 2.962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

(g) Post-certification requirements.

(2) In accordance with ISO/IEC Guide 65, a TCB is required to conduct appropriate post-market surveillance activities. These activities shall be based on type testing a few samples of the total number of product types which the certification body has certified. Other types of surveillance activities of a product that has been certified are permitted, provided they are no more onerous than testing type. The Commission may at any time request a list of products certified by the certification body and may request and receive copies of product evaluation reports. The Commission may also request that a TCB perform post-market surveillance, under Commission guidelines, of a specific product it has certified.

TCB는 인증발급업체에 형식검정보다 부담을 주지 않는 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감독을 수행하며, 형식검정 외의 기타 감독은 FCC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 사후 시장감독 절차에 의한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본 검정 계획

- TCB는 표본검정 시 유효성을 입증할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최종 생산날짜로부터 적어도 1년 동안 입수가 가능한 제품표본을 준비해야 하며, 사후 시장감독 검정용 장비를 제출해야 함을 요구

② 표본 선택

- TCB에 의해 검사된 표본은 TCB에 의해 인증된 제품으로부터 선별됨

- 중점대상 기기

- 신 기술제품
- 신규 신청자가 인증 신청시
- 신규 시험소가 인증 신청시
- 불합격이력이 있는 제품
- 지속적으로 불만사항이 제기되는 제품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

③ 표본추출 비율

(1) 검사대상 총 제품수

- TCB Scope A와 Scope B의 경우 1년간 TCB에 의해 인증된 총 제품수의 적어도 5%로 구성되며, 제품은 각각 발급된 인증 취득건수로 개별적으로 계산됨 (특히 복합기기, 변경기기의 경우)
- 감독은 TCB Scope A와 B당 인증된 제품수에 근거한 비례적인 근거로 수행되어야만 함

(2) TCB가 검사하는 Scope C 총 제품수는 최소한 1년간 TCB가 인증한 Scope C 총 제품수의 적어도 2%로 구성되어야만 함

(3) TCB의 사후 시장감독 책임의 일부로서 TCB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FCC에 1년간의 사후 시장감독 활동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4) TCB가 RF 방사 노출 요건을 따르는 기기를 인증한 경우, 그 제품이 검사된 총 표본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SAR 측정치를 따르는 제품의 최소한 1%와 1년의 감독기간 동안 인증된 기기가 검사되어야 함

- 기기별로 샘플수량이 상이함(일반 무선기기 : 5%, SAR 제품 : 1%, 유선제품 : 2%)

(5) 검사하는 샘플 수의 계산시 그 수는 반올림함

(6) 제품이 이전 감시연도에 인증받았으나 현 감시연도에 사후감독 받을 경우
현 감시연도에 산입함

④ 표본 획득

- TCB는 다음의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해서 표본을 획득해야만 함

(1) 기기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인증 제품의 1개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청

(2) 시장에서 제품 표본을 구입

⑤ 평가

- 표본은 FCC 사후 시장감독 요건을 충족시키는 TCB의 검사 시험소나 하도급 시험소에서 검사받아야 함

- 적용가능한 FCC 요건을 표본이 준수하는지에 관해서, ‘인증기관 전(全) 직원’에 의한 검토와 결정이 평가의 종료 후에 이루어져야만 함

⑥ 후속 조치

- 후속 보고서는 위반 통지를 한 30일 내에 취해진 조치에 관해 TCB에 의해, 또는 상황 시정을 위해 조취를 취해야 하는 인증발급업체에 의해 FCC에 제공되어야 함

- TCB는, FCC와 함께, 수행된 모든 감독 조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보관해야 함

ACTA는 Local Exchange Carriers(LEC), Interexchange Carriers(IXC), Terminal Equipment Manufacturers(TEM), Network Equipment Manufacturers(NEM), Test Laboratories(LAB), Other Interested Parties(OIP)의 모든 산업 부분을 사후관리하고 있다. ACTA는 네트워크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47 CFR §68.3) SDO를 인정하는 ANSI에 의해 개발된 기준의 발표를 통하여 단말기기의 기술적 기준 채택하였으며, 기술적 기준에 대한 민원으로서 허용된 기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다.

사후관리의 범위는 단말기기에 대한 기술적 요건 및 그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채택 및 공표에 대한 조정·관리 역할을 담당하지만 기술적 기준의 개발에 관한 실제적인 기술적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TCB Scope C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TCB가 수행하며, ACTA는 FCC나 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ACTA에 기술적 기준을 제출하는 SDO의 활동에 관련한 이의제기는 SDO, ANSI 또는 FCC에 의해 제공되는 절차를 이용하여야만 하며, ACTA의 적합한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과정을 따르기 전에 비공식적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전국에 걸친 지속적이며 동일한 양식의 데이터베이스는 공중보호에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ACTA의 데이터베이스는 FCC, 미국 관세청, 규정위반 기기의 공급자 및 수입자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공급자들이 기기가 유발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공중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규정위반 단말기기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47 CFR Part 68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는 2002년 9월 기준 35,000건 이상 등록되어 있다.

4) 행정처분

미국의 FCC 집행국은 통신법 연방규칙을 강력히 집행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견고한 경쟁 및 혁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국은 통신법과 연방규칙, 위원회 명령(orders) 및 조건(terms), 각 주의 규정(conditions)을 책임지는 FCC 내의 주요한 조직이다. 집행국은 소비자보호 집행, 지역경쟁 규제, 공중안전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통신회사에 적용되는 통신법의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권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집행국은 통신법 위반내용을 Forfeiture Order로 공표하는데 2007년 89건, 2008년 87건, 2009년 66건, 2010년 45건, 2011년 9월 현재 47건을 공표하였다. 일례로 2009년 5월 Sennheiser Electronic Corporation에서 인증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여 통신법 제302조(b), FCC 규칙 제

2.803조를 근거로 \$7,000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미국 통신법상 사후관리 관련 법령 위반시 처벌규정은 위반유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제501조(일반적 벌칙)는 “이 법에서 금지되거나 불법인 것으로 선언된 어떠한 행위, 사안, 일을 고의(willfully) 또는 그 정을 알고 (knowingly) 하거나 일어나도록 하거나, 또는 고의 또는 그 정을 알고 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 사안,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거나 이를 발생케 하는 자는 유죄판결시(upon conviction) 그에 대하여 이 법에 별도의 (몰수 이외의) 벌칙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10,000달러 이하의 벌금(fine) 또는 1년 이하의 징역(imprisonment) 또는 그 병과의 처벌을 받는다. 단, 이 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위반의 유죄판결을 한번 받은 자가 이 조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추후에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병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 501. [47 U.S.C. 501] GENERAL PENALTY.

Any person who willfully and knowingly does or causes or suffers to be done any act, matter, or thing, in this Act prohibited or declared to be unlawful, or who willfully and knowingly omits or fails to do any act, matter, or thing in this Act required to be done, or willfully and knowingly causes or suffers such omission or failure, shall upon conviction thereof, be punished for such offense, for which no penalty (other than a forfeiture) is provided in this Act, by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 or by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year, or both; except that any person, having been once convicted of an offense punishable under this section, who is subsequently convicted of violating any provision of this Act punishabl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 or by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or both.

제503조(리베이트 및 상계 시 몰수)는 “(a) 어느 사업자에게 주간 또는 국제 전송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서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주간 또는 국제 유무선 통신을 전송받으면서, 임직원, 대리인, 기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통하거나 기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든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이 법에 규정된 요금표에 의하여 고정된 메시지 전송의 정규 요금에서 리베이트, 상계로서 금원,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그 정을 알고 수령하고자나 수령을 승낙한 자는, 이 법에 규정된 다른 벌칙에 추가하여 법원의 확인에 따라 그러한 수령액 또는 수령 가치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연방정부에 추징당한다. 그러한 소송에서 당해 소송의 개시 전 6년간의 기간동안 영수된 모든 리베이트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될 수 있고, 추징되는 금액은 그렇게 영수된 총금액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의 총계의 3배가 되며, 경우에 따라 양자 모두이다. (b) (1) 이 항의 (3), (4)호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다음을 하였다고 결정되는 자는 연방에 과징금(forfeiture)을 몰수당한다. (A)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발급된 면허, 건설 허가, 증명서, 기타 승인의 조건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상당히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B) 이 법 또는 미국이 당사자로서 미국을 구속하는 조약, 협정 기타 약정에 의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발하는 규칙, 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상당부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C) 이 법 제 317조 (c)항, 제508조 (a)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D) 미국 연방 법전 Title 18의 제1304조, 제1343조, 제합계 7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D) 그러한 과징금액은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은 위반의 본질, 상황, 정도,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 비난가능성, 과거의 위반사례, 지불 능력, 그리고 기타 정의가 요구하는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A) 미국 연방 법전 Title 5의 제554조에 따른 통지와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행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가진 후 연방통신위원회의 재량으로 이 항에 의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호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자는 제402조 (a)항에 따라 그에 대한 재심사(review)를 받을 수 있

다. (B) 어느 자가 이 호의 (A)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그 지급명령이 더 이상 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되거나 관할권 있는 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승소판결을 내린 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통신위원회는 그 문제를 연방 법무부장관에게 회부하여야 하며, 이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관할권 있는 연방법원에서 부과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유효성(validity)과 적절성(appropriateness)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이 항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과징금도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이 항에 의하여 누구에게도 부과될 수 없다. (A)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자에게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의 통지를 하고, (B)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러한 자가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자의 최후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보내고, 그리고 (C) 그러한 자가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칙이나 명령으로 정하는 합리적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러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i) 그러한 자가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되는 법, 령, 규칙, 명령, 조약, 협정, 기타 약정, 면허, 허가, 증명, 문서 기타 승인의 개별 해당 조항 및 조건을 적시하고, (ii) 그러한 자에 대하여 비난되고 있는 행위나 부작위의 성격과 그러한 비난이 근거로 하는 사실을 기술하여야 하며, 그리고 (iii)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호에 의하여 결정된 과징금은 이 법 제504조 (a)항에 따라 징수되어야 한다. (5) 이 항 (3)호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전 또는 이 항 (4)호에 의해 요구되는 명백한 책임의 통지 전에 (A) 해당자에게 위반되었다고 비난되고 있는 조항을 적시한 소환장(citation)을 발부하고, (B) 그러한 자의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연방통신위원회의 지방사무소에서 연방통신위원회 직원과 개별적 면담을 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 (C) 그 후에도 그 자가 위 소환장에 기술된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발급되는 면허, 허가, 증명, 기타 승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발급되는 면허, 허가, 증명, 기타 승인에 대한 신청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이 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의 규정은 면허, 허가, 증명 기타 승인이 요구되는

활동에 그 자가 종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개별 무선국 운영이 제307조 (e)항에 따른 규칙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의 사용에 할당된 주파수를 전송하는데 종사하는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 운영자인 경우, 그리고 해당자가 연방통신위원회나 탐을 사용하는 면허 소유자나 허가 소지자로부터 제303조 (q)항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의 통지를 이전에 받은 자로서 무면허 탐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303조 (q)항의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호의 요건이 해당자에 대하여 충족될 경우마다, 그러한 자는 이 호에 의하여 송부되는 소환장에 기술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환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항에 의하여 누구에게든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다. (A) 그러한 자가 이 법 Title III에 의하여 발급된 방송국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장되는 위반이 다음과 같이 발생한 경우: (i) 요구되는 통지 또는 명백한 책임의 통지의 발급일로부터 1년 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ii) 그러한 면허의 현재 임기의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것 중에 먼저 인 것. (B) 그러한 자가 이 법 Title III에 의하여 발급된 방송국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장되는 위반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명백한 책임의 통지의 발급일로부터 1년 전에 발생한 경우. 이 호의 목적상 “그러한 허가의 현재 임기의 개시일”은 면허소지자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최후의 임기의 개시일을 의미한다. 면허의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이어서 제307조 (c)항에 의한 유효한 면허가 계속되는 결과로서 별도의 면허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 503. [47 U.S.C. 503] FORFEITURES IN CASES OF REBATES AND OFFSETS.

(a) Any person who shall deliver messages for interstate or foreign transmission to any carrier, or for whom as sender or receiver, any such carrier shall transmit any interstate or foreign wire or radio communication, who shall knowingly by employee, agent, officer, or otherwise, directly or indirectly, by or through any means or device whatsoever, receive or accept from such common carrier any sum of money or any

other valuable consideration as a rebate or offset against the regular charges for transmission of such messages as fixed by the schedules of charges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in addition to any other penalty provided by this Act forfeit to the United States a sum of money three times the amount of money so received or accepted and three times the value of any other consideration so received or accepted, to be ascertained by the trial court; and in the trial of said action all such rebates or other considerations so received or accepted for a period of six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 may be included therein, and the amount recovered shall be three times the total amount of money, or three times the total value of such consideration, so received or accepted, or both, as the case may be.

(b) (1) Any person who i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r (4) of this subsection, to have-

(A) willfully or repeatedly failed to comply substantial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y license, permit, certificate, or other instrument or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mmission;

(B) willfully or repeatedly failed to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of any rule, regulation, or order issued by the Commission under this Act or under any treaty, convention, or other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and which is binding upon the United States;

(C) violated any provision of section 317(c) or 508(a) of this Act; or

(D) violated any provision of section 1304, 1343, or 1464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hall be liable to the United States for a forfeiture penalty. A forfeiture penalty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in addition to any other penalty provided for by this Act; except that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conduct which is subject to forfeiture under title II, part II or III of title III, or section 506 of this Act.

(2)(A) If the violator is (i) a broadcast station licensee or permittee, (ii) a cable television operator, or (iii) an applicant for any broadcast or cable television operator license, permit, certificate, or other instrument or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mmission, the amount of any forfeiture penalty determined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exceed \$25,000 for each violation or each day of a continuing violation, except that the amount assessed for any continuing violation shall not exceed a total of \$250,000 for any single act or failure to act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B) If the violator is a common carri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an applicant for any common carrier license, permit, certificate, or other instrument of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mmission, the amount of any forfeiture penalty determin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not exceed \$100,000 for each violation or each day of a continuing violation, except that the amount assessed for any continuing violation shall not exceed a total of \$1,000,000 for any single act or failure to act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C) In any case not covered in subparagraph (A) or (B), the amount of any forfeiture penalty determin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not exceed \$10,000 for each violation or each day of a continuing violation, except that the amount assessed for any continuing violation shall not exceed a total of \$75,000 for any single act or failure to act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D) The amount of such forfeiture penalty shall be assessed by the Commission, or its designee, by written notice.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such a forfeiture penalty, the Commission or its designee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circumstances, extent, and gravity of the violation and, with respect to the violator, the degree of culpability, any history of prior offenses, ability to pay, and such other matters as justice may require.

(3)(A) At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 a forfeiture penalty may be determined against a person under this subsection after notice and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before the Commission or an administrative law judge thereof in accordance with section 554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ny person against whom a forfeiture penalty is determined under this paragraph may obtain review thereof pursuant to section 402(a).

(B) If any person fails to pay an assessment of a forfeiture penalty determined under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fter it has become a final and unappealable order or after the appropriate court has entered final judgment in favor of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refer the matter to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who shall recover the amount assessed in any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such action,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final order imposing the forfeiture penalty shall not be subject to review.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3) of this subsection, no forfeiture penalty shall be imposed under this subsection against any person unless and until-

(A) the Commission issues a notice of apparent liability, in writing, with respect to such person;

(B) such notice has been received by such person, or until the Commission has sent such notice to the last known address of such person,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and

(C) such person is granted an opportunity to show, in writing, within such reasonable period of time as the Commission prescribes by rule or regulation, why no such forfeiture penalty should be imposed. Such a notice shall (i) identify each specific provision, term, and condition of any Act, rule, regulation, order, treaty, convention, or other agreement, license, permit, certificate, instrument, or authorization which such person apparently violated or with which such person apparently failed to comply; (ii) set forth the nature of the act or omission charged against such person and the facts upon which such charge is based; and (iii) state the date on which such conduct occurred. Any forfeiture penalty determined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recoverable pursuant to section 504(a) of this Act.

(5) No forfeiture liability shall be determined under this subsection against any person, if such person does not hold a license, permit, certificate, or other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mmission, and if such person is not an applicant for a license, permit, certificate, or other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mmission, unless, prior to the notice

required by paragraph (3) of this subsection or the notice of apparent liability required by paragraph (4) of this subsection, such person (A) is sent a citation of the violation charged; (B) is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a personal interview with an official of the Commission, at the field office of the Commission which is nearest to such person's place of residence; and (C) subsequently engages in conduct of the type described in such citation.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however, if the person involved is engaging in activities for which a license, permit, certificate, or other authorization is required, or is a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 if the person involved is transmitting on frequencies assigned for use in a service in which individual station operation is authorized by rule pursuant to section 307(e), or in the case of violations of section 303(q), if the person involved is a nonlicensee tower owner who has previously received notice of the obligations imposed by section 303(q) from the Commission or the permittee or licensee who uses that tower. Whenever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re satisfied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person, such person shall not be entitled to receive any additional citation of the violation charged, with respect to any conduct of the type described in the citation sent under this paragraph.

(6) No forfeiture penalty shall be determined or imposed against any person under this subsection if-

(A) such person holds a broadcast station license issued under title III of this Act and if the violation charged occurred- (i) more than 1 year prior to the date of issuance of the required notice or notice of apparent liability; or (ii) prior to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current term of such license, whichever is earlier; or (B) such person does not hold a broadcast station license issued under title III of this Act and if the violation charged occurred more than 1 year prior to the date of issuance of the required notice or notice of apparent liability.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date of commencement of the current term of such license" means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last term of license for which the licensee has been granted a license by the Commission. A separate license term shall not be deemed to have commenced as a result of continuing a license in effect under section 307(c) pending decision on an

application for renewal of the license.

제504조(과징금 관련 규정)는 “(a) 이 법에 규정된 과징금은 연방의 국고에 산입되며, 이 법 제503조 (b)항 (3)호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 또는 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두거나 그 사업자의 회선이나 시스템이 통과하는 연방의 지방 관할에서 연방의 이름으로 민사소송(civil suit)에 의하여 징수될 수 있다. 단, 이 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재판이어야 한다. 또한 선박몰수의 경우에는 그 선박이 도착 또는 출항하는 지역의 관할에서 해사사건(libel)으로 징수될 수 있다. 그러한 과징금은 여타 일반 또는 특별 벌칙에 추가적인 것이다.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연방 법무부장관의 지휘하에 기소하는 것은 각급의 지방 검사의 의무이다. 그러한 기소의 비용은 연방법원의 배정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b) 이 법 Title II, Title III의 Part II, Part III, 제503조 (b)항에 적용을 받아 부과된 과징금은 타당한 사실 확인 방법과 관련 규칙에 의해서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면제나 경감될 수 있으며,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소의 중지를 지시해야 한다. 단, 관할권 있는 법원이 결정한 후에는 과징금의 면제 또는 경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c)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백한 책임통지를 발령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실은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에서 그러한 통지가 발급된 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단, (i) 과징금이 이미 납부되었거나 또는 (ii) 관할권 있는 법원이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였고 그러한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 504. [47 U.S.C. 504] PROVISIONS RELATING TO FORFEITURES.

(a) The forfeitures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payable into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nd shall be recovera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with respect to a forfeiture penalty determined under section 503(b)(3) of this Act, in a civil suit in the name of the United States brought in the district where the person or carrier has its principal operating office or in any district through which the line or system of the carrier runs: Provided, That any suit for the recovery of a forfeiture impos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be a trial de novo: Provided further, That in the case of forfeiture by a ship, said forfeiture may also be recoverable by way of libel in any district in which such ship shall arrive or depart. Such forfeitures shall be in addition to any other general or specific penalties herein provided. It shall be the duty of the various district attorneys, under the dire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to prosecute for the recovery of forfeitures under this Act. The costs and expenses of such prosecutions shall be paid from the appropriation for the expenses of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b) The forfeitures imposed by title II, parts II and III of title III, and sections 503(b) and 506 of this Act shall be subject to remission or mitigation by the Commission, under such regulations and methods of ascertaining the facts as may seem to it advisable, and, if suit has been instituted, the Attorney General, upon request of the Commission, shall direct the discontinuance of any prosecution to recover such forfeitures: Provided, however, That no forfeiture shall be remitted or mitigated after determination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c) In any case where the Commission issues a notice of apparent liability looking toward the imposition of a forfeiture under this Act, that fact shall not be used, in any other proceeding before the Commission, to the prejudice of the person to whom such notice was issued, unless (i) the forfeiture has been paid, or (ii)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has ordered payment of such forfeiture, and such order has become final.

또한 제510조(통신설비의 몰수)는 “(a) 제301조, 제302조 또는 그 조에 의한 연방 통신위원회 규칙과 명령을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위반하여 사용, 운송, 전달, 제조, 조립, 소유, 판매의 제의, 판매되거나 광고되는 전자, 전자파, 무선 주파수, 유

사 장치, 또는 그 부품은 미국 연방에 압수(seized)되어 몰수(forfeited)될 수 있다. (b) 이 조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몰수될 수 있는 재산은 그 재산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 지방법원의 해사소송을 위한 보충적 규칙과 명령에 따라 발급되는 연방 법무부장관의 영장(process)에 의하여 압수될 수 있다. 단, 적법한 체포나 수색에 수반된 압수는 그러한 영장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c) 다음에 관한 모든 법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적용되고 부합되는 한 이 조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압수와 몰수에 적용된다. 단 그러한 압수와 몰수는 통신설비, 또는 그 부품에 한정된다. (1) 압수, 약식 및 사법적 몰수, 관세법 위반에 대한 재산의 몰수, (2) 그러한 재산 및 재산판매액의 처분, (3) 그러나 몰수의 면제 또는 경감, 및 (4) 그러한 몰수에 대한 청구의 양보. (d) 이 조에 의하여 재산이 몰수된 경우 연방 법무부장관은 일반에 해가 되지 않는 몰수된 재산을 연방통신위원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한 판매로부터 얻은 수익은 연방의 국고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 510. [47 U.S.C. 510] FORFEITURE OF COMMUNICATIONS DEVICES.

(a) Any electronic, electromagnetic, radio frequency, or similar device, or component thereof, used, sent, carried, manufactured, assembled, possessed, offered for sale, sold, or advertised with willful and knowing intent to violate section 301 or 302, or rules prescribed by the Commission under such sections, may be seized and forfeited to the United States.

(b) Any property subject to forfeiture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section may be seized by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upon process issued pursuant to the supplemental rules for certain admiralty and maritime claims by any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roperty, except that seizure without such process may be made if the seizure is incident to a lawful arrest or search.

(c) All provisions of law relating to- (1) the seizure, summary and judicial forfeiture,

and condemnation of property for violation of the customs laws; (2) the disposition of such property or the proceeds from the sale thereof; (3) the remission or mitigation of such forfeitures; and (4) the compromise of claims with respect to such forfeitures; shall apply to seizures and forfeitures incurred, or alleged to have been incurr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sofar as applicable and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except that such seizures and forfeitures shall be limited to the communications device, devices, or components thereof.

(d) Whenever property is forfeited under this section,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may forward it to the Commission or sell any forfeited property which is not harmful to the public. The proceeds from any such sale shall be deposited in 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이를 종합해 보면, 통신법 규정 1회 위반시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정 위반시 일일당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통신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전기·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판매·운반·사용한 경우 압수 또는 몰수처분을 부과한다.

특히 FCC는 통신법 및 FCC 규칙 위반에 대한 기본 벌금액에 대하여 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위반자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Forfeiture Policy Statement(1997)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벌금의 예측성과 일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¹³⁾ Forfeiture Policy Statement에서 제시된 벌금은 47 CFR Part 1 제1.80조(벌금 소송절차)에 반영된다. 따라서 FCC는 특정 사례에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제공된 것보다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의 벌금을 공표하거나 법에

13) In 1993, after reviewing how the Policy Statement functioned in practice, the Commission made several modifications to the Policy Statement to ensure both consistency and flexibility in applying the forfeiture amounts and adjustment criteria in individual cases.

의해 허가된 대로 대안적이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47 CFR Part 1 § 1.80 Forfeiture proceedings.).

47 CFR Part 1 § 1.80 Forfeiture proceedings.

(b) Limits on the amount of forfeiture assessed.

(4) Factors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forfeiture penalty.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forfeiture penalty, the Commission or its designee will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circumstances, extent and gravity of the violations and, with respect to the violator, the degree of culpability, any history of prior offenses, ability to pay, and such other matters as justice may require

벌칙금을 결정할 때 FCC 또는 FCC의 피지명인은 위반의 성질, 환경, 범위, 중대성을 고려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유죄 정도, 전과 기록, 지불 능력 및 정의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기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FCC 연방규칙 47 CFR의 벌금산정에 관한 지침(47 CFR Part 1 § 1.80(b)(4) 주)에 따른 통신법 제503조 벌금 지침은 아래 <표 2-18>과 같다.

<표 2-18> FCC 규칙에 의한 통신법 제503조 벌금 지침

벌 금	위반 금액
서비스에 대한 인증 수단 없이 설치 또는 운영	\$10,000
규정된 조명 또는 표시부착 미준수	\$10,000
공공 파일 규칙 위반	\$10,000
정치적 규칙 위반: 합리적 접근, 최저단위비용, 동등한 기회, 차별	\$9,000
미허가 이전	\$8,000

벌 금	위반 금액
아동용 텔레비전 상업화 또는 프로그램 요건의 위반	\$8,000
조난과 안전 주파수 관련 규칙의 위반	\$8,000
허위 조난 통신	\$8,000
설치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는 EAS 장비	\$8,000
외국인 소유권 위반	\$8,000
허가검사 위반	\$7,000
외설/음란 자료의 전송	\$7,000
간섭	\$7,000
미인증 장비의 수입이나 마케팅	\$7,000
인증된 안테나 높이의 초과	\$5,000
전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사기적 의사표시	\$5,000
서비스의 임의적 중단	\$5,000
미인증 장비의 사용	\$5,000
전력 한도초과	\$4,000
FCC 통신에 대한 응답 실패	\$4,000
스폰서 ID 요건의 위반	\$4,000
미허가 방사	\$4,000
미허가 주파수 사용	\$4,000
요구받은 주파수 조정 미이행	\$4,000
미허가 설치 또는 운영	\$4,000
복권이나 콘테스트의 방송과 관련된 요건 위반	\$4,000
송신기 관리와 계량 요건 위반	\$3,000
요구 형식 또는 정보 파일 미제출	\$3,000
요구 조치 또는 감시를 요구받는 모니터링에 대한 미이행	\$2,000
기지국 ID 미제공	\$1,000

<표 2-19> FCC 규칙에 의한 통신법 제503조 벌금 조정기준

구 분	내 용
상향 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위법행위 · 지불능력/상대적 유인저해 · 고의적 위반행위 · 실질적 위해 · FCC 요구사항의 기 위반 여부 ·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 ·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위반행위
하향 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위반행위 · 도의적 및 자발적 위반 행위 보고 · 전반적인 법령 및 규정 준수 이력 · 지불능력

벌금 부과 한도를 규정한 통신법 제503조와 달리 채무추심개선법(Debt Collection Improvement Act of 1996, DCIA) 및 연방민간과태료인플레이션조정법(Federal Civil Monetary Penalty Inflation Adjustment Act of 1990)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벌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표 2-20> FCC 규칙에 의한 하향 조정기준 적용 벌금액

구 분	벌금액
제202조(c) - 기간통신사업자 구별	\$9,600 (건당)
	\$530 (일당)
제203조(e) - 기간통신사업자 관세	\$9,600 (건당)
	\$530 (일당)
제205조(b) - 기간통신사업자 규정	\$18,200 (건당)
제214조(d) -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연장	\$1,320 (일당)
제219조(b) - 기간통신사업자 보고서	\$1,320 (건당)
제220조(d) - 기간통신사업자 기록, 회계	\$9,600 (일당)
제223조(b) - 음란 또는 장난전화	\$75,000 (일당)

구 분	벌금액
제364조(a) - 벌금 (선박)	\$7,500 (건당, 선주)
제364조(a) - 벌금 (선박)	\$1,100 (건당, 선장)
제386조(a) - 벌금 (선박)	\$7,500 (일당, 선주)
제386조(b) - 벌금 (선박)	\$1,100 (건당, 선장)
제634조 - 케이블 EEO	\$650 (일당)

<표 2-21> FCC 규칙에 의한 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법정 최고 벌금액

구 분	벌금액
제202조(c) - 차별과 선호	\$9,600 (건당)
	\$530 (일당)
제203조(e) - 요금 스케줄	\$9,600 (건당)
	\$530 (일당)
제205조(b) - 합리적 요금 위반	\$18,200 (건당)
제214조(d) - 회선연장	\$1,320 (일당)
제219조(b) - 연차 또는 기타 보고	\$1,320 (건당)
제220조(d) - 회계, 장부, 기록, 문서 미보관 또는 거절	\$9,600 (일당)
제223조(b) - 음란 또는 장난전화	\$75,000 (일당)
제362조(a) - 선박	\$7,500 (건당)
제362조(b) - 선장	\$1,100 (건당)
제386조(a) - 선박	\$7,500 (일당)
제386조(b) - 선장	\$1,100 (건당)
제503조(b)(2)(A) - 방송국, 케이블 사업자 등	\$375,000 (건당)
	\$150,000 (일당)
제503조(b)(2)(B) - 기간통신사업자	\$150,000 (일당)
	\$1,500,000 (건당)
제503조(b)(2)(C) - 기타 사업자	\$325,000 (일당)
	\$3,000,000 (건당)

2.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앞서 국내의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시험·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전제조건인 인정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이들 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1) 인정제도

미국의 인정기관은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시험소인정프로그램(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미국시험기관인정기구(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등이 있다. NIST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와의 협약을 통하여 통신법상 FCC의 지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MRA 체결시 다른 MRA 국가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을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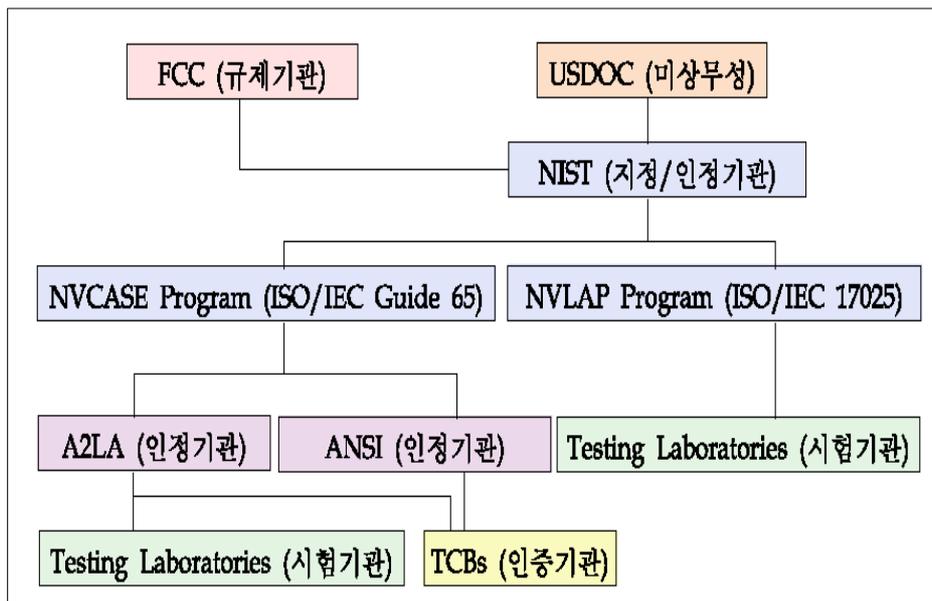
NVLAP과 A2LA는 MRA 1단계 인정기관 및 시험기관을 인정하고, ANSI는 MRA 2단계 인정기관 및 인증기관을 인정한다. MRA 1단계는 방송통신기자재 시험기관을 상호 인정하고 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증하는 것을 말하며, MRA 2단계는 상대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고 동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양국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4월 현재 FCC의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47 Part 2의 제2.948조에 의해 미국에 등록된 시험소는 총 757개이며, 이 중 608개는 미국 외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198개, 미국이 149개, 중국이 134개, 대만이 70개, 한국이 46개의 순으로 시험소가 등록되어 있다.

47 CFR § 2.948 Description of measurement facilities.

(a) Each party making measurements of equipment that is subject to an equipment authorization under part 15 or part 18 of this chapter, regardless of whether the measurements are filed with the Commission or kept on file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of equipment marketed within the U.S. or its possessions, shall compile a description of the measurement facilities employed.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NIST는 1999년부터 FCC의 의뢰로 미국적합성평가체계 (National 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Evaluation, NVCASE)에 의해 평가를 받은 ANSI를 인정기관으로 활용하여 민간인증기관(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TCB)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림 2-3] 미국 인정제도 관련기관



자료: 전파연구소(2009), 미국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그 이유는 인정업무에 FCC등 정부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며,¹⁴⁾ 1998년 NIST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NIST 등 인정기관이 2000년 7월 NVCASE를 적용한 TCB를 지정하였다(47 CFR § 2.960).

47 CFR § 2.960 Designation of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 (TCBs).

(b)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hall designate TCBs in the United States to approve equipment subject to certification under the Commission's rules. TCBs shall be accredi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under its National 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Evaluation (NVCASE) program, or other recognized programs based on ISO/IEC Guide 65, to comply with the Commission's qualification criteria for TCBs. NIST may, in accordance with its procedures, allow other appropriately qualified accrediting bodies to accredit TCBs and testing laboratories. TCBs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in § 2.962 of this part.

(c)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 effective bilateral or multilater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MRA)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bodies outside the United States shall be permitted to authorize equipment in lieu of the Commission. A body in an MRA partner economy may authorize equipment to U.S. requirements only if that economy permits bodies in the United States to authorize equipment to its requirements. The authority designating these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 shall meet the following criteria.

따라서 FCC는 필요한 장비 승인을 위하여 전기통신 인증기관인 TCB를 지정할 수 있으며, TCB는 제품이 FCC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장비인가 서면 증서를 발행한다(47 CFR § 2.960).

14) ISO/IEC 17011 4.3.7 Note 2 : A separate part of the government, outside the governmental accreditation body as described in 4.1, is considered as a related body.

47 CFR § 2.960 Designation of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 (TCBs).

(a) The Commission may designate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 (TCBs) to approve equipment as required under this part. Certification of equipment by a TCB shall be based on an application with all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this part. The TCB shall process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roduct meets the Commission's requirements and shall issue a written grant of equipment authorization. The grant shall identify the TCB and the source of authority for issuing it.

(2) 사후관리 제도

TCB는 인증기관에 대한 다음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① 인증 시스템은 ISO/IEC 지침 65, 1.2(a)항에 식별하는 형식 시험을 토대로 하며, 인증은 일반적으로 인증을 요청하는 각 제품의 형식 변경이 없는 대표 샘플 1개 이하에 대한 시험을 토대로 한다. 특정 시험에서 샘플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추가 샘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정을 통해 동 기관이 인증하는 장비 범위에 대해 ISO/IEC 지침 65의 적절한 규격 일체를 준수해야 한다. 인정서는 인증 대상인 장비 그룹과 제품 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TCB는 지정을 요청하는 제품의 규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전문지식은 해당 기술 규정과 행정규정이나 요구조건뿐 아니라 이의 신청에 사용되는 정책과 절차에 대한 숙지를 포함한다. TCB는 인증 장비를 시험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ISO/IEC 표준17025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한다. TCB는 규정이나 시험 절차의 해석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주요 인증 책임자와 시험소 직원은 최신의 정확한 기술 규정 해석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전기통신인증기관의 역량은 평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해당 기술 규정에 포함되는 기술 규정 및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

과 효율, 경험, 친숙성뿐 아니라 ISO/IEC 표준 17025 및 지침 65 해당 part에 대한 준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TCB는 해당 규정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해석을 활성화하기 위해 FCC나 NIST가 선별하는 자문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FCC는 이러한 자격 기준에 따라 TCB를 인정하는데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공고를 제공한다. TCB는 인정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2년 미만의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ISO/IEC 지침65, 4.4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이나 제품 일부의 시험은 지정 TCB의 하청계약자가 수행할 수 있다. 단, 시험소는 TCB에 의해 역량을 인정받고 ISO/IEC 지침65나 기타 관련 표준 및 지침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청계약자를 이용할 경우, TCB는 시험 결과를 책임져야하며 하청계약자가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감독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감독사항은 시험을 한 제품의 정기적인 감사를 포함한다.

④ FCC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NIST나 공인 인정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조직을 TCB로 지정한다. NIST나 공인 인정기관의 TCB 인정이 철회되거나, 지정을 철회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TCB가 지정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FCC는 TCB 지정을 철회한다. FCC는 30일 이전에 지정 철회 의사를 TCB에 고지하고 이에 대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정 TCB 목록은 FCC에서 발행한다.

⑤ TCB는 FCC 규칙 및 정책에 따라 장비를 인증한다. TCB는 ISO/IEC 지침65의 요건이 적용되는 출처의 시험 데이터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시험을 반복하지 않는다. TCB는 인증 신청서 처리와 FCC가 요구하는 기타 업무 처리에 대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부과할 수 있다. TCB는 행정 착오로 인한 인증승인을 30일 이내에 무효로 할 수 있다. 해당 시기 이후에는 본 part 2.939조의 절차를 통해 FCC에서만 철회할 수 있다. TCB는 승인을 무효로 할 경우 신청자와 FCC에 모두 고지해야 한다.

⑥ TCB는 각 승인 신청서 양식과 인증 승인서 전자 사본을 FCC에 제출해야 한다. ISO/IEC 지침65에 따라, TCB는 적절한 사후 감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인증기구가 인증한 제품 형식의 소수 샘플에 대한 형식시험을 토대로 한다. 인증을 받은 기타 제품의 감시 활동을 허용한다. 단, 형식시험보다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FCC는 언제든지 인증기구가 인증한 제품 목록을 요청하고 제품 평가 보고서 사본을 요청 및 접수할 수 있다. 또한 FCC는 FCC의 지침에 따라 TCB가 인증한 특정 제품의 사후 감시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의 사후 감시 중에 제품이 해당 기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TCB는 인가 취득 사업자와 FCC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인가 취득 사업자가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후 30일 안에 후속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TCB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FCC가 TCB와 제조사에 파일을 요청한 후 30일 안에 FCC에 해당 신청서 파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파일은 FCC 규칙에 따라 기밀 취급이 필요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기밀유지 요청을 동봉한다. 신청서 파일을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FCC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⑦ TCB 지정이나 인정이나 TCB 제품 인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FCC를 최종 중재자로 한다. 제조사와 지정 TCB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30일 이상 의견을 개진할 기간을 제공한다. 미국이 체결당사자인, 유효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이나 합의(MRA)에 따라 TCB를 지정 또는 인정하거나 제품을 인증하는 경우, FCC는 해당 MRA 당사자가 지정하는 TCB의 인정을 제한 또는 철회하고 TCB가 제공하는 시험이나 인증을 이용하는 제품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FCC는 1988년도 전기통신무역법(1988년도 종합무역법 1371-1382조)의 준수에 대해 MRA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한다(47 CFR § 2.962).

47 CFR § 2.962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

(a)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 (TCB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or designated by another authority pursuant to an effective bilateral or multilater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b) Certification methodology. (1) The certification system shall be based on type testing as identified in sub-clause 1.2(a) of ISO/IEC Guide 65. (2) Certification shall normally be based on testing no more than one unmodified representative sample of each product type for which certification is sought. Additional samples may be requested if clearly warranted, such as when certain tests are likely to render a sample inoperative.

(c) Criteria for Designation. (1) To be designated as a TCB under this section, an entity shall, by means of accreditation, meet all the appropriate specifications in ISO/IEC Guide 65 for the scope of equipment it will certify. The accreditation shall specify the group of equipment to be certified and the applicable regulations for product evaluation. (2) The TCB shall demonstrate expert knowledge of the regulations for each product with respect to which the body seeks designation. Such expertise shall include familiarity with all applicable technical regulations, administrative provisions or requirements, as well as the policies and procedures used in the application thereof. (3) The TCB shall have the technical expertise and capability to test the equipment it will certify and shall also be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ISO/IEC Standard 17025 to demonstrate it is competent to perform such tests. (4) The TCB shall demonstrate an ability to recognize situations where interpretations of the regulations or test procedures may be necessary. The appropriate key certification and laboratory personnel shall demonstrate a knowledge of how to obtain current and correct technical regulation interpretations. The competence of the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shall be demonstrated by assessment. The general competence, efficiency, experience, familiarity with technical regulations and products included in those technical regulations, as well as compliance with applicable parts of the ISO/IEC Standard 17025 and Guide 65,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5) A TCB shall participate in any consultative activities, identified by the Commission or NIST, to facilitate a commo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applicable regulations. (6) The Commission will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specific methods that will be used to accredit TCBs, consistent with these qualification criteria. (7) A TCB shall be reassessed for continued accreditation on intervals not exceeding two years.

(d) Sub-contractors. (1)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clause 4.4 of ISO/IEC Guide 65, the testing of a product, or a portion thereof, may be performed by a sub-contractor of a designated TCB, provided the laboratory has been assessed by the TCB as competent and in compli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ISO/IEC Guide 65 and other relevant standards and guides. (2) When a subcontractor is used, the TCB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est results and shall maintain appropriate oversight of the subcontractor to ensure reliability of the test results. Such oversight shall include periodic audits of products that have been tested.

(e) Designation of a TCB. (1) The Commission will designate as a TCB any organization that meets the qualification criteria and is accredited by NIST or its recognized accreditor. (2) The Commission will withdraw the designation of a TCB if the TCB's accreditation by NIST or its recognized accreditor is withdrawn, if the Commission determines there is just cause for withdrawing the designation, or if the TCB requests that it no longer hold the designation. The Commission will provide a TCB with 30 days notice of its intention to withdraw the designation and provide the TCB with an opportunity to respond. (3) A list of designated TCBs will be published by the Commission.

(f) Scope of responsibility. (1) A TCB shall certify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mmission's rules and policies. (2) A TCB shall accept test data from any sourc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in ISO/IEC Guide 65, and shall not unnecessarily repeat tests. (3) A TCB may establish and assess fees for processing certification applications and other tasks as required by the Commission. (4) A TCB may rescind a grant of certification within 30 days of grant for administrative errors. After that time, a grant can only be revoked by the Commission through the procedures in § 2.939 of this part. A TCB shall notify both the applicant and the Commission when a grant is rescinded. (5) A TCB may not: (i) Grant a waiver of the rules, or certify equipment for which the Commission rules or requirements do not exist or for which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r requirements is unclear. (ii) Take enforcement actions; or (iii) Authorize a transfer of control of a grantee. (6) All TCB actions are subject to Commission review.

(g) Post-certification requirements. (1) A TCB shall supply an electronic copy of each approved application form and grant of certification to the Commission. (2) In accordance with ISO/IEC Guide 65, a TCB is required to conduct appropriate post-market surveillance activities. These activities shall be based on type testing a few samples of the total number of product types which the certification body has certified. Other types of surveillance activities of a product that has been certified are permitted, provided they are no more onerous than testing type. The Commission may at any time request a list of products certified by the certification body and may request and receive copies of product evaluation reports. The Commission may also request that a TCB perform post-market surveillance, under Commission guidelines, of a specific product it has certified. (3) If during post market surveillance of a certified product, a TCB determines that a product fails to comply with the applicable technical regulations, the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grantee and the Commission. A follow-up report shall also be provided within thirty days of the action taken by the grantee to correct the situation. (4) Where concerns arise, the TCB shall provide a copy of the application file to the Commission within 30 calendar days of a request for the file made by the Commission to the TCB and the manufacturer. Where appropriate, the file should be accompanied by a request for confidentiality for any material that may qualify for confidential treatment under the Commission's Rules. If the application file is not provided within 30 calendar days, a statement shall be provided to the Commission as to why it cannot be provided.

(h) In case of a dispute with respect to designation or recognition of a TCB and the testing or certification of products by a TCB, the Commission will be the final arbiter. Manufacturers and designated TCBs will be afforded at least 30 days to comment before a decision is reached. In the case of a TCB designated or recognized, or a product certified pursuant to an effective bilateral or multilater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MRA)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the Commission may limit or withdraw its recognition of a TCB designated by an MRA party and revoke the certification of products using testing or certification provided by such a TCB.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as necessary,

concerning any disputes arising under an MRA for compliance with the Telecommunications Trade Act of 1988 (Section 1371-1382 of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996년 3월 7일부로 발표된 국가기술이전촉진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NTTAA)은 미국내 기준개발 민간기관(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 SDOs)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기준개발 및 적합성평가 활동을 조율하도록 명시하였다.

미국의 인정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VCASE는 인정기구의 역량을 평가·승인하는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과의 상호인정 추구를 위하여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NIST가 운영하며, 미국 외의 인정기구 지정시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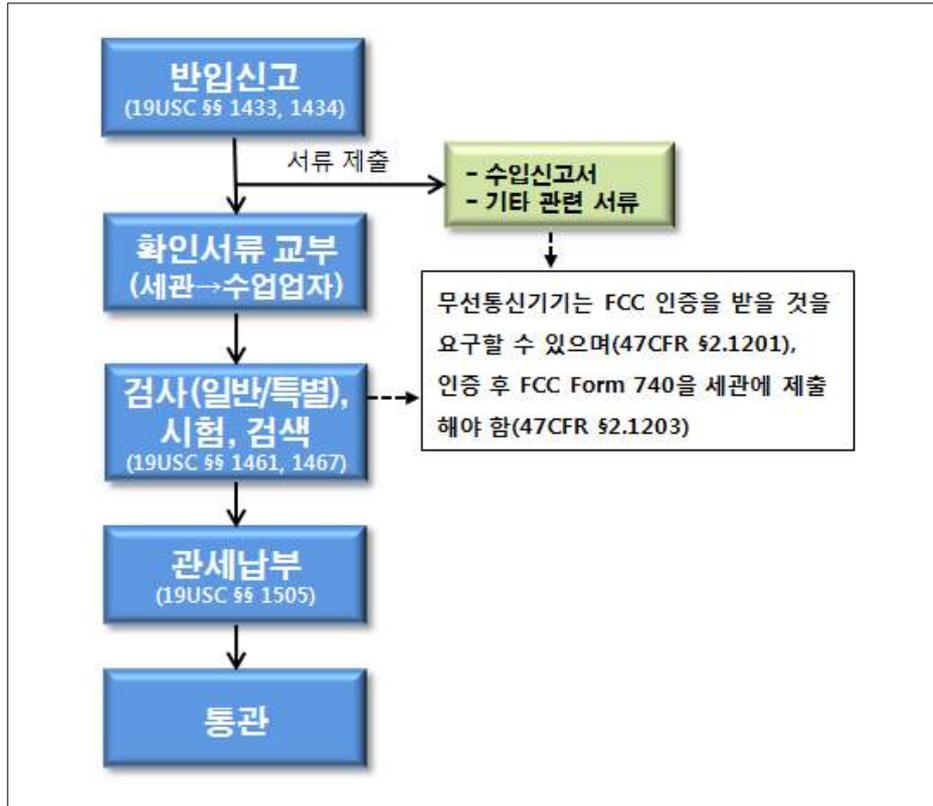
NVLAP은 시험소의 인정을 위한 절차, 기준을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CFR Title 15의 Part 285에 명시되어 있으며, NIST 또는 NIST 대행기관인 A2LA에서 미국 내 인정기구 지정시 적용된다. NVLAP의 시험기관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정된 시험기관이 NVLAP 인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시험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A2LA는 미국시험기관 인정기구로써 MRA 1단계 인정기관, ISO, IEC 17025에 의거한 시험기관의 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시험기관 인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써 효과적인 국내외 MRA를 추구하고 있다.

3. 통관제도

미국의 수입통관절차는 관세법(19 U.S.C - The Tariff Act)에 따라 반입신고, 확인서류 교부, 검사·시험·검색, 관세납부, 통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4] 미국 방송통신기자재 통관 절차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세관에 물품도착 후 도착신고(Entry)를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43조 및 제144조).

19 U.S.C § 1433. REPORT OF ARRIVAL OF VESSELS, VEHICLES, AND AIRCRAFT

(a) Vessel arrival

(1) Immediately upon the arrival at any port or place within the United States or the

Virgin Islands of -

- (A) any vessel from a foreign port or place;
- (B) any foreign vessel from a domestic port;
- (C) any vessel of the United States carrying foreign merchandise for which entry has not been made; or
- (D) any vessel which has visited a hovering vessel or received merchandise while outside the territorial sea; the master of the vessel shall report the arrival at the nearest customs facility or such other place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by regulations.

(2) The Secretary may by regulation -

- (A) prescribe the manner in which arrivals are to be reported under paragraph (1); and
- (B) extend the time in which reports of arrival must be made, but not later than 24 hours after arrival.

(b) Vehicle arrival

(1) Vehicles may arrive in the United States only at border crossing points designated by the Secretary.

(2) Except as otherwise authorized by the Secretary, immediately upon the arrival of any vehicle in the United States at a border crossing poin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vehicle shall -

- (A) report the arrival; and
- (B) present the vehicle, and all persons and merchandise (including baggage) on board, for inspection; to the customs officer at the customs facility designated for that crossing point.

(c) Aircraft arrival

The pilot of any aircraft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or the Virgin Islands from any

foreign airport or place shall comply with such advance notification, arrival reporting, and landing requirements as the Secretary may by regulation prescribe.

(d) Presentation of documentation

The master, person in charge of a vehicle, or aircraft pilot shall present, or transmit pursuant to a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to the Customs Service such information, data, documents, papers, or manifests as the Secretary may by regulation prescribe.

(e) Prohibition on departures and discharge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a vessel, aircraft or vehicle after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or Virgin Islands may, but onl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

- (1) depart from the port, place, or airport of arrival; or
- (2) discharge any passenger or merchandise (including baggage).

19 U.S.C § 1434. ENTRY; VESSELS

(a) Formal entry

Within 24 hours (or such other period of time as may be provided under subsection (c)(2) of this section) after the arrival at any port or place in the United States of -

- (1) any vessel from a foreign port or place;
- (2) any foreign vessel from a domestic port;
- (3) any vessel of the United States having on board foreign merchandise for which entry has not been made; or
- (4) any vessel which has visited a hovering vessel or has delivered or received merchandise while outside the territorial sea; the master of the vessel shall,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make formal entry at the nearest customs facility or such other place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by regulation.

(b) Preliminary entry

The Secretary may by regulation permit the master to make preliminary entry of the vessel with the Customs Service in lieu of formal entry or before formal entry is made. In permitting preliminary entry, the Customs Service shall board a sufficient number of vessel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laws it enforces.

(c) Regulations

The Secretary may by regulation -

(1) prescribe the manner and format in which entry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o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or both, must be made, and such regulations may provide that any such entry may be made electronically pursuant to a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2) provide that -

(A) formal entry must be made within a greater or lesser time than 24 hours after arrival, but in no case more than 48 hours after arrival, and

(B) formal entry may be made before arrival; and

(3) authorize the Customs Service to permit entry or preliminary entry of any vessel to be made at a place other than a designated port of entry, 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세관은 물품도착 신고를 받으면 도착신고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수입(도착)신고서 및 기타 관련서류가 있으며, 기타 관련서류에는 통관시 필요한 면허나 허가의 취득 등 해당 물품이 타기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증명하는 것이 포함된다.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FCC 인증을 받을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47 CFR § 2.1201 Purpose.), 인증을 받은 후 FCC Form 740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47 CFR §

2.1203 General requirement for entry into the U.S.A.).

47 CFR § 2.1201 Purpose.

(a) In order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Communications Act and the various treatie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in order to promote efficient use of the radio spectrum, the Commission has developed technical standards for radio frequency equipment. The technical standards applicable to individual types of equipment are found in that part of the rules governing the service wherein the equipment is to be operated.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standards, the rules governing the service may require that such equipment receive an equipment authorization from the Commission as a prerequisite for marketing and importing this equipment into the U.S.A. The marketing rules, § 2.801 et seq., were adopted pursuant to the authority in section 302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s amended (47 U.S.C. 302).

47 CFR § 2.1203 General requirement for entry into the U.S.A.

(a) No radio frequency device may be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unless the importer or ultimate consignee, or their designated customs broker, declares that the device meets one of the conditions for entry set out in this section.

(b) A separate declaration shall be used for each line item in the entry or entry summary containing an RF device, or for each different radio frequency device within a line item when the elements of the declaration are not identical.

(c) Failure to properly declare the importation category for an entry of radio frequency devices may result in refused entry, refused withdrawal for consumption, required redelivery to the Customs port, and other administrative, civil and criminal remedies provided by law.

(d) Whoever makes a declaration pursuant to § 2.1203(a) must provide, upon request made within one year of the date of entry, documentation on how an imported radio frequency device was determined to be in compliance with Commission requirements.

따라서 먼저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을 받아야 세관에서 통관이 되는 ‘선인증 후 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관은 물품에 대한 검사(일반검사 및 특별검사)를 하며, 경우에 따라 시험 및 검색을 실시한다(관세법 제1461조 및 제1467조).

19 U.S.C § 1461. INSPECTION OF MERCHANDISE AND BAGGAGE

All merchandise and baggage imported or brought in from any contiguous countr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or by regulations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be unladen in the presence of and be inspected by a customs officer at the first port of entry at which the same shall arrive; and such officer may require the owner, or his agent, or other person having charge or possession of any trunk, traveling bag, sack, valise, or other container, or of any closed vehicle, to open the same for inspection, or to furnish a key or other means for opening the same.

19 U.S.C § 1467. SPECIAL INSPECTION, EXAMINATION, AND SEARCH

Whenever a vessel from a foreign port or place or from a port or place in any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arrives at a port or place in the United States or the Virgin Islands, whether directly or via another port or place in the United States or the Virgin Islands, the appropriate customs officer for such port or place of arrival may,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ay prescribe and for the purpose of assuring compliance with any law, regulation, or instruction which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r the Customs Service is authorized to enforce, cause inspection, examination, and search to be made of the persons, baggage, and merchandise discharged or unladen from such vessel, whether or not any or all such persons, baggage, or merchandise has previously been inspected, examined, or searched by officers of the customs.

제3 절 일본

1. 제품 사후관리

일본의 제품 사후관리 검토를 위해 먼저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제품의 사후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증제도

일본의 인증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인정제도 및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제도, 전파법에 의한 기술기준적합 증명 및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제도가 있다. 단말기기 인증제도에 적용되는 법령은 크게 국내 인증제도의 시행과 해외국가와 맺은 유무선단말기기 상호인정협정의 추진을 위한 후속법령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22> 일본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구 분	법령
국내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전파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단말설비 등 규칙 · 무선설비규칙 · 단말기기의 기술기준적합인정 및 설계에 관한 인증에 관한 규칙 ·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등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인정시험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 인정점검사업자 등 규칙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지정 기관을 지정한 성령 ·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심사기준 ·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

해외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시행을 위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 조사 기관 등에 관한 성령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지정 조사 기관을 지정한 성령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표시등에 관한 성령
--------------------------	--

전기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을 전면 개정하여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인 경제산업성 소관의 법률로써, 모든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제3자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증하게 하며, 정부는 사후규제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 및 소비자 안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정시험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으로써 공익법인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인정 검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마크를 도입하여 특정전기용품,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바, 특정전기용품에는 전선, 퓨즈, 배선기구, 전류제한기, 소형단상변압기, 전열기구,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휴대발전기 등이 있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TV, 오디오, 복사기 등이 있다. PSE 인증을 받으려면 안전시험, 전자파 시험, 공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기술기준적합확인(SDoC), 형식검정절차 등 근거 기준에 따라 다르며, 유효기간은 없다.

<표 2-23> 일본 적합성평가 절차

구 분	절 차	소요 기간	유효 기간
전기통신사업법 인증절차	①단말기기 제조업자 신청→②등록인정(승인)기관이 단말기기(또는 단말기기의 설계)의 기술기준적합에 대해 단말기기의 설계, 시험데이터 등을 기초로 심사→③심사 결과 적합할 때에는 지정한 표시를 단말기기에 부착	JATE 및 TELEC의 업무규정상 인증 심사 소요기간은 15일임	없음
전파법 인증절차	①특정 무선설비의 제조업자 신청→②등록증명(승인)기관이 특정무선설비(또는 특정무선설비 공사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에 대해 특정무선 설비 공사설계, 시험데이터 등을 기초로 심사→③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성령으로 지정한 표시 부착(특정무선설비의 공사설계 인증은 신청자가 각각의 특정무선설비에 표시 부착	단,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5일정도가 추가 소요될 수 있음	
기술기준 적합확인 (SDoC) 절차	총무성이 정한 시험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급자가 직접 시험을 수행하거나 외부시험소를 이용	"	"
형식검정절차	①제조자가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에 시험인증의뢰→②형식검정서 발급받음	"	"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 해외인증포털(www.certification.or.kr)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기준적합인증은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단말기기에 대해 등록인정기관이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제53조제1항). 기술기준적합인증 대상기기는 전화용 설비, 종합 디지털통신용 설비, 인터넷 전화용 설비 등이 해당되며(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종래 국내의 형식승인 제도와 유사하다. 등록인정기관은 단말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인증을 실시하고, 기술기준 적합인증 취지의 표

시를 붙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단말기기 기술기준 적합인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은 자(이하 「등록 인정 기관」 이라고 한다.)는 그 등록에 관계된 기술기준 적합인정(전조 제1항의 총무성령으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필요한 것의 인정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 요구에 관한 단말기기(총무성령으로 정한 종류의 단말 설비의 기기를 말한다. 이하 동일.)가 전조 제1항의 총무성령으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기준 적합인정을 행한 것으로 한다.

② 등록 인정 기관은 그 등록에 관계된 기술기준 적합인정을 했을 때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그 단말기기에 기술기준 적합인정을 한 취지의 표시를 붙여야 한다.

(과과 또는 고장에 의한 이용자에게의 영향이 경미한 전기통신 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법 제41조 제1항의 총무성령으로 정한 전기통신 설비는 다음대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송로 설비가 다음에 나열한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말계 전송로 설비뿐인 경우의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통신 설비

가 오로지 하나의 이용자(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사이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며,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다에서 동일.)에 제공하는 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이용하는 것인 것.

나 해당 단말계 전송로 설비가 접속되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전송로 설비를 제외한다.)를 매개해서 가의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이용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것인 것.

다 이용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의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단말계 전송로 설비의 이용에 대신해서 선택한 것인

것.

2. 전기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전송로 설비 및 이것과 접속되는 교환 설비 및 이러한 부속 설비 이외의 전기통신 설비(다음에 나열한 전기통신 설비를 제외한다.)

가 아날로그 전화용 설비

나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종합 디지털통신용 설비(음성전송역무의 제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의4 제1호 가 및 제2호 가 및 제27조의5 제1호에서 간단히 「종합 디지털통신용 설비」 라고 한다.)

다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규칙 제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인터넷 프로토콜 전화용 설비(전기통신번호규칙(1997년 우정성령 제82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해서 음성전송역무의 제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라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휴대폰용 설비(제27조의4 제2호 나 및 제27조의5 제4호에서 간단히 「휴대폰용 설비」 라고 한다.)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제도는 다른 이용자의 통신에 방해할 줄 우려가 적은 특정 단말기기의 경우 기술기준적합인증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설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따라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을 실시한 후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적합 자기 확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단말기기 중, 단말기기의 기술기준, 사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통신에 현저하게 방해할 줄 우려가 적은 것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이하 「특정 단말기기」 라고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특정 단말기기를 제52조 제1항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설계(해당 설계에 일치하다는 확인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전파법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증명은 소규모 무선국에 사용하기 위한 특정무선설비로서 총무성에서 정하는 것(휴대전화 등)에 대해 등록증명기관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이다(전파법 제38조의2).

(등록 증명 기관의 등록)

전파법 제38조의2 소규모 무선국에 사용하기 위한 무선설비이며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특정 무선설비」 라고 한다.)에 대해서, 전장에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이하 「기술기준 적합증명」 이라고 한다.)의 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의 구분(다음 항, 제38조의5 제1항, 제38조의10, 제38조의31 제1항 및 별표 제3에서 간단히 「사업의 구분」 이라고 한다.)마다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무선국에 관한 특정 무선설비에 대해서 기술기준 적합증명을 행하는 사업
2. 포괄 면허에 관한 특정 무선설비에 대해서 기술기준 적합증명을 행하는 사업
3. 전 2호에 열거한 특정 무선설비 이외의 특정 무선설비에 대해서 기술기준 적합증명을 행하는 사업

기술기준적합증명은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무대신이 기술기준적합증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전파법 제38조의18).

(총무대신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증명의 실시)

전파법 제38조의18 총무대신은 제38조의2 제1항의 등록을 받는 자가 없을 때, 또는 등록 증명 기관이 제38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기준 적합증명의 업무를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취소한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 증명 기관에 대해 기술기준 적합증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등록 증명 기관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그 등록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증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해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기준 적합증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등록증명기관은 특정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증명을 실시하고(전파법 제38조의6), 기술기준적합증명 취지의 표시를 붙여야 한다(전파법 제38조의7).

(기술기준 적합증명 등)

전파법 제38조의6 등록 증명 기관은 그 등록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증명을 받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던 경우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심사를 행하고, 해당 요구에 관한 특정 무선설비가 전장에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기술기준 적합증명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전파법 제38조의7 등록 증명 기관은 그 등록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증명을 한 때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그 특정 무선설비에 기술기준 적합증명을 했다는 표시를 붙여야 한다.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혼신 등 방해를 주는 우려가 적은 특별 특정무선설비의 경우 기술기준적합증명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공사 설계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전파법 제38조의33).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제도에 의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을 실시한 후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적합 자기 확인 등)

전과법 제38조의33 특정 무선설비 중,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사용의 상태 등을 감안해서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의 혼신 그 밖의 방해를 주는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특별 특정 무선설비」라고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특별 특정 무선설비를 전장에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공사 설계(해당 공사 설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검증을 실시하여, 그 특별 특정 무선설비의 공사 설계가 전장에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면서 해당 공사 설계에 근거한 특별 특정 무선설비의 어떠한 것도 해당 공사 설계에 일치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됐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다음 항에서 「기술기준 적합 자기 확인」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술기준 적합 자기 확인을 했을 때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기술기준 적합 자기 확인을 실시하는 특별 특정 무선설비의 종류별 및 공사 설계
3. 전항의 검증 결과의 개요
4. 제2호의 공사 설계에 근거한 특별 특정 무선설비의 어떠한 것도 해당 공사 설계에 일치한다는 확인의 방법
5. 그 밖에 기술기준 적합 자기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

전자파 관련 인증은 VCCI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VCCI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조자는 VCCI의 회원이어야 한다. VCCI 시험신청을 하게 되면 VCCI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대상기기는 사용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장비(배

터리에 의해 전원을 공급 받는 휴대용 기기), 전기통신회선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전기통신단말장치,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용의 워드 프로세서, 또는 주변기기, 팩스기기 등이 해당된다.

전기통신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인증을 위해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The Japan Approval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JATE)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JATE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인증,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술조건 적합인증, 단말기기 기술기준 적합신청에 필요한 전기적 특성 측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상기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기통신 단말기기(유무선 통신장비)가 해당된다.

(2) 사후관리 제도

1) 개요

일본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중심의 인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후관리도 민간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표본검사 등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파 관련 사후관리는 VCCI에서, 전기통신 단말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JATE에서 담당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VCCI, JATE에서 인증한 기기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하여 시험 실시 후 결과를 발표한다.

2) 관련법령

일본의 사후관리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되며, VCCI는 정보통신기기의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주규제초지운영 규정의 시장발취(샘플)시험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규정 제

13조 및 부칙 3에 의해 시장발취(샘플)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JATE는 개정전기통신단말기기기술기준 적합인정등제도의 개요 제6장(국가의 사후조치)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3) 절차

VCCI의 사후관리는 시장발취(샘플)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활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기기를 선정한다(제2조 및 제3조).

(시장발취시험전용위원회)

제2조 VCCI협회(이하, 협회라고 함)는 이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의 원활한 실시를 기하기 위해 시장발취시험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운용한다.

(시장발취시험의 대상으로 하는 기기의 선정)

제3조 협회는 위원회의 방침을 바탕으로 “운용규정 제3조 적용범위에서 규정하는 (적합확인신고 대상이 되는)기기 중에서 시장발취시험의 대상으로 하는 기기(이하, 대상기기로 함)를 선정한다.

샘플은 VCCI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로부터 해당 기기를 임대하여 표본을 추출한다(제4조).

(대상기기의 발취방법)

제4조 대상기기의 발취는 다음과 같다.

- 1) 협회가 판매점 등에서 사들인다.

- 2)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출하품, 또는 출하품과 동등한 상품을 임대한다.
- 3) 협회가 제14조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의뢰한다.

VCCI는 미리 시험을 위탁할 복수의 시험기관과 계약하고, 각각의 대상 기기별로 시험을 위탁하는 시험기관을 선정한다(제6조).

(시험기관으로의 위탁)

제6조 협회는 미리 시장발취시험을 위탁할 복수의 시험기관과 계약하고, 각각의 대상기기별로 시험을 위탁하는 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한다.

시험방법은 자주규제조치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시장발취(샘플)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시험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해 간략 시험조건 등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제7조제1항). 대상기기의 동작조건에 대해서 시험기관이 이의가 있는 경우 VCCI는 담당자와 시험기관이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동조제2항).

(시험의 방법)

제7조 협회는 자주규제조치운용규정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을 바탕으로 시장발취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협회는 시장발취시험을 합리적(*1)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험기관에 대해 필요하게 간략시험조건 등(*2)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시험시간단축 혹은 주변기기 수배곤란한 경우 등
 - 2) 주변기기의 할애, 시험모드의 할애 등에 따른 측정
2. 대상기기의 동작조건에 대해서 시험기관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협회는 회원의

담당자와 시험기관이 협의하도록 요구한다.

3. 협회는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에 회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시험기관이 시험준비를 위한 설치, 설정 등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의 협력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시험결과와 판정에 대해서 시험기관과는 협의에 비슷한 행위는 일절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VCCI는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통지하여야 하며, 불합격시 개선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치내용과 재발방지 대책을 협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시험결과의 취급)

제11조 협회는 시험기관에서 보고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원에게 통지한다. 허용치는 “부칙1 기술기준”에 근거한다. 또한, 불합격수준이란 기술기준적합에 의의를 발생시킨 경우의 잠정적인 판정, 불합격판정은 11조 4항에 의한다.

1) 합격

다음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할 것.

- ① 방해파 전계강도가 [허용치 +3dB]이하
- ② 전원포트 및 통신포트의 전도방해파가 [허용치 +2dB] 이하

2) 불합격 수준

상기 1)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

2. 시험결과가 [제11조 제1항 2] 불합격수준에 있다는 통지를 받은 회원은 판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회에 자청해서 재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수순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원은 불복으로 하는 근거자료(시험조건의 차이, 우발고장 등)을 협회에 제출하

고, 재시험을 의뢰한다.

2) 협회는 회원의 불복으로 하는 근거자료에 의해 재시험의 불허를 결정한다.

3) 당해기기의 재시험은 원칙적으로 당초의 시장발취담당시험소로 한다.

4) 재시험의 시험결과의 취급은 제11조 제1항에 의한다.

3. 시험결과가 「제11조 제1항 2) 불합격수준에 있다고 통지를 받고, 재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시험의 결과가 합격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회원은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하기안에서 대응방법을 선택하고 협회에 보고해야한다」

1) 통계적 평가를 위한 추가시험을 협회에 요청한다. 실시방법은 「제12조(추가시험) 제1항」에서 정한다.

2) 자사관리데이터 등으로 「제12조(추가시험)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수준임을 증명하고 협회에 보고한다.

3) 회원은 스스로 불합격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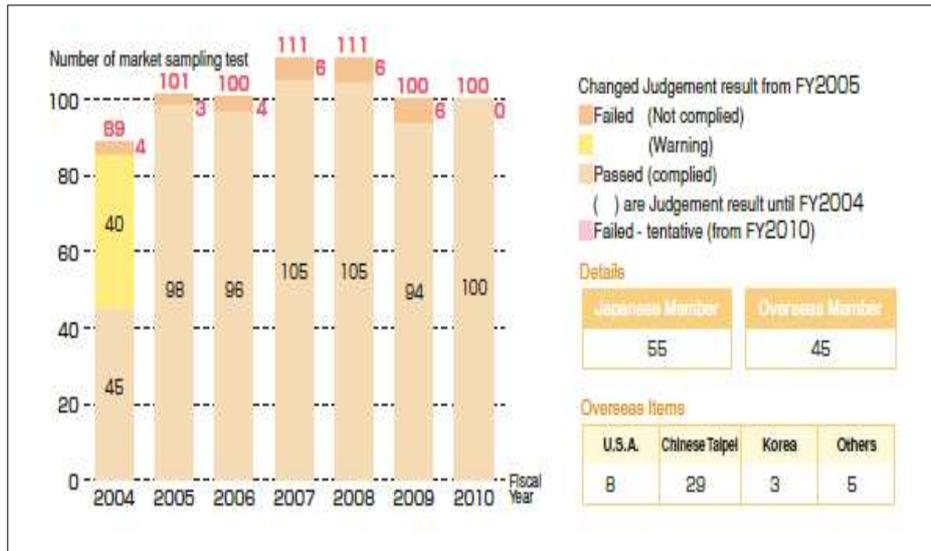
4. 협회는 불합격수준과 통지한 것에 대해, 「제11조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반복관정을 실시한다.

1) 합격 허용치이내

2) 불합격 허용치 초과

5. 불합격의 경우, 회원은 개선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치내용과 재발방지대책을 협회에 보고할 것. 협회는 불합격품의 형식 및 회원명을 기관지에 공표한다.

[그림 2-5] 일본 VCCI 사후관리 결과



자료: VCCI Annual Report, 2011.3.

JATE에 의한 사후관리는 기술기준 적합여부, 인증표시 여부, 인증 설명서 기재사항 여부 등을 시험하며, 이를 위해 대상기기를 추출하여 조사한 후 시험결과를 발표한다. 대상기기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기기를 직접 구매하여 선정한다.

4) 행정처분

일본 전파법상 방해 등 방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특별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 자기확인 표시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증명기관이 기술기준적합증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술기준적합증명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이거나 특정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실시하여 그 표시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① 등록증명기관이 총무대신에게 기술기준적합증명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② 등록증명기관이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장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증명기관이 총무대신에게 기술기준적합증명의 업무상황에 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④ 등록증명기관이 기술기준적합증명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기술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자가 특정무선설비에 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⑥ 기술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자의 출입검사가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특정무선설비 또는 해당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⑦ 특별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련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⑧ 특별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고사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작성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⑨ 등록증명기관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⑩ 등록증명기관이 재무제표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재무제표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를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거절한 경우, ⑪ 특별특정무선설비의 제조신고업자 또는 수입 신고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이다.

또한 등록증명기관의 개선명령 위반 및 등록증명기관이 부정한 수단에 의해 등록하거나 갱신을 받았을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표 2-24> 일본 전파법상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방해 등 방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10조제9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특별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 표시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110조제10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록증명기관이 기술기준적합증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0조의2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적합증명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이거나 특정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실시하여 그 표시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112조제1호	50만엔 이하의 벌금
등록증명기관이 총무대신에게 기술기준적합증명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제113조제7호	30만엔 이하의 벌금
등록증명기관이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장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113조제8호	30만엔 이하의 벌금
등록증명기관이 총무대신에게 기술기준적합증명의 업무상황에 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13조제9호	30만엔 이하의 벌금
등록증명기관이 기술기준적합증명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3조제10호	30만엔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자가 특정무선설비에 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13조제11호	30만엔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자의 출입검사가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특정무선설비 또는 해당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113조제12호	30만엔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특별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련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113조제13호	30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고사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작성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113조제14호	3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증명기관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제116조제15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증명기관이 재무제표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재무제표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를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거절한 경우	제116조제16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특정무선설비의 제조 신고업자 또는 수입 신고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제116조제17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증명기관의 개선명령 위반	제38조의17제2항	등록취소
등록증명기관이 부정한 수단에 의해 등록하거나 갱신을 받았을 경우	제37조의17제2항	등록취소

적합성마크와 관련하여 ① 인증설계를 바탕으로 단말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타이용자의 통신으로의 방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인증취급업자가 인증설계를 바탕으로 단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설계일치의무(검사,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인증취급업자가 총무대신의 설계인증에 관한 확인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④ 인증취급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인정기관에 의한

설계인증을 받은 경우, ⑤ 등록인정기관이 법령에 위반하여 설계인증을 한 경우, ⑥ 기술기준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전에 설계인증을 받은 설계가 해당 변경 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합성 마크의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 이를 위반하여 표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 2-25> 일본 적합성마크 표시 부착금지 요건 및 대상단말기기

요건	표시금지대상단말기기
인증설계를 바탕으로 단말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타이용자의 통신으로의 방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단말기기의 인증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단말기기
인증취급업자가 인증설계를 바탕으로 단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설계일치의무(검사,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에 관한 단말기기의 인증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단말기기
인증취급업자가 총무대신의 설계인증에 관한 확인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에 관한 단말기기의 인증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단말기기
인증취급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인정기관에 의한 설계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설계인증에 관한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단말기기
등록인정기관이 법령에 위반하여 설계인증을 한 경우	해당 설계인증에 관한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단말기기
기술기준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전에 설계인증을 받은 설계가 해당 변경 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단말기기

총무대신은 인증취급업자가 단말기기 설계일치 의무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인증에 관한 확인방법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제59조, 제68조), 기술기준적합인정을 받은 자 또는 단말기기에 관하여 보고 또는 검사

할 수 있다(제166조, 제167조).

(인증 취급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 총무대신은 인증 취급업자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인증 취급업자에 대해, 설계 인증에 관계된 확인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 제54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특정 단말기기 및 신고업자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은 신고 설계에 근거한 특정 단말기기에 대하여 준용한다.

(보고 및 검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66조 ② 총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등록 인정 기관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해당 기술기준 적합인정에 관계된 단말기기에 대해 보고를 시키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해당 기술기준 적합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소에 들어가서 해당 단말기기 기타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단말기기 등의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제167조 총무대신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원에게 검사를 시켰던 경우에, 그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단말기기 또는 해당 단말기기의 검사를 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등록 인정 기관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단말기기 또는 해당 물건을 제출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해방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및 기술기준적합인증 표시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기술기준적합인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인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총무대신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시 검증에 관계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2-26> 일본 전파법상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방해방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81조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적합인증 표시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181조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적합인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인 경우	제187조제2호	50만엔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총무대신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188조제8호	30만엔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시 검증에 관계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188조제9호	30만엔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92조제1호	30만엔 이하의 과태료

2. 시험 · 인증기관 사후관리

일본의 시험기관 인정기구에는 전자환경시험소인정센터(Voluntary EMC Laboratory Accreditation Center, VLAC), 일본 적합성인정협회(Japan Accreditation Board, JAB), 일본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 Japan, IAJapan) 3개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인정기구의 인정요건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VLAC은 1999년 ISO/IEC Guide 58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전자과장애인증(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VCCI)에서 분리 · 독립한 인정기관으로서 전자환경 시험기관의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근거한 EMC 시험기관의 인정, EMC에 관한 조사 · 연구 · 개발, EMC 기술 · 관리 교육, EMC 정보제공 및 출판, EMC 측정설비의 심사 · 등록 사업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6월 현재 VLAC은 총 31개의 시험기관을 인정하였다.

시험기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인정대상 : 단일의 품질시스템을 적용하는 복수시험장 및 측정설비, ② 서류심사 : 신청서의 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 ③ 현지심사 : 품질 매뉴얼에 근거하는 시험소 관리상황 및 측정설비를 포함한 시험기술의 적합성 심사, ④ 인정방법 : ISO/IEC 17025에 근거, ⑤ 인정범위 : VCCI 기술기준, CISPR22 / CISPR224 / CISPR11의 일부 및 EN55022 / EN55024, FCC 47 CFR Part 15/Part18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 후 1년 내에 문서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JAB는 품질 시스템 등록을 위한 인증협회로 시작하여 1996년 시험기관 인정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일본적합성인정협회로 변경하였다. JAB는 일본에서 적합성평가제도 전반에 관련되는 인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이다.

JAB는 제품인증 기관의 인정 및 등록, 시험기관, 검사기관의 인정 및 등록, MRA 관련법에 근거하는 지정조사 업무(국가업무 대행), 해외 인정기관과의 상호 승인 추

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인정위원회, 판정위원회, 기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JAB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인정대상 : 단일 품질시스템을 적용하는 복수시험장 및 측정설비 등, ② 서류심사 : 신청서의 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 ③ 현지심사 : 품질 매뉴얼에 근거하는 시험소 관리상황 및 측정설비를 포함한 시험기술의 적합성 심사, ④ 인정방법 : ISO/IEC 17025에 근거 등의 인정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인증 후 1년 이내에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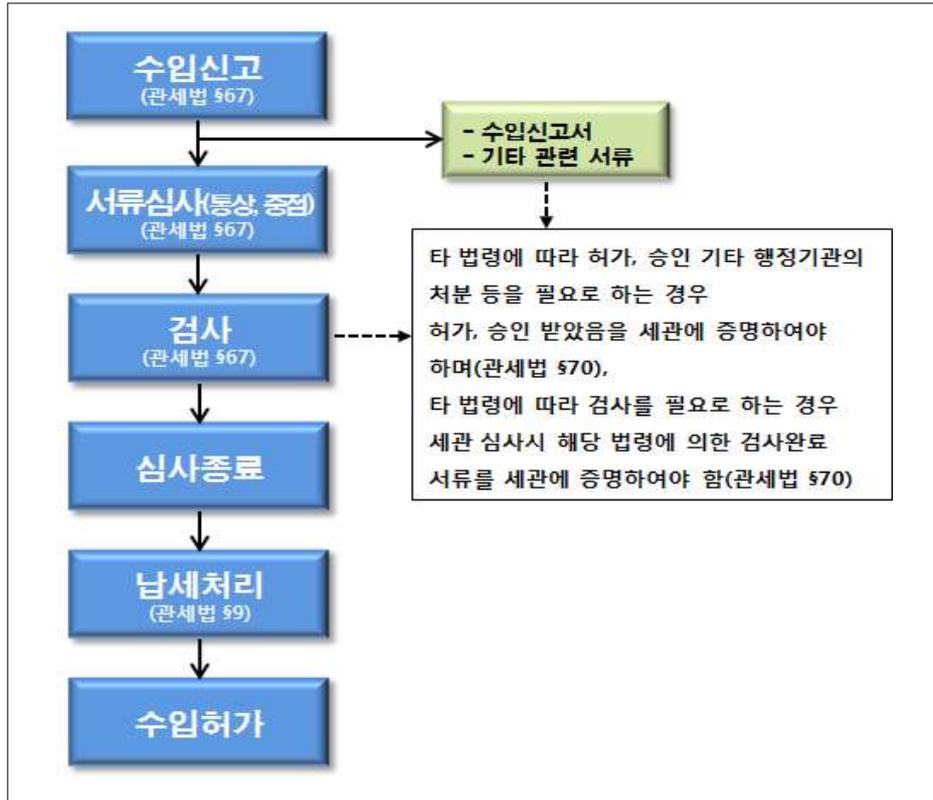
인정기관이 ① JAB 인정정차에 명시된 감독, 갱신평가 또는 재평가 기간 중 JAB 인정기준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그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JAB에 대하여 고지/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거짓으로 고지 또는 보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JAB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절, 방해, 기피한 경우 또는 JAB 규정에 기초한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④ 6개월 이상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인정범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다.

IAJapan은 비영리 단체로 인터넷발전 추진을 목적으로 일본전자네트워크 컨소시엄의 통합에 의해 2001년 설립되었다. IAJapan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인정대상 : 단일 품질시스템을 적용하는 복수시험장 및 측정설비 등, ② 서류심사 : 신청서의 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 ③ 현지심사 : 품질 매뉴얼에 근거하는 시험소 관리상황 및 측정설비를 포함한 시험기술의 적합성 심사, ④ 인정방법 : ISO/IEC 17025에 근거 등의 인정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년 마다 문서위주의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3. 통관제도

일본의 수입통관절차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서류심사, 검사, 심사종료, 납세처리, 수입허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6] 일본 방송통신기자재 통관절차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일본 내로 반입하려면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 관할 수입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통산심사, 중점심사)하게 된다(관세법 제67조 및 제67조의2).

(수출 또는 수입 허가)

관세법 제67조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의 품명과 수량 및 가격(수입화물(특례신고화물의 경우는 관세잡정조치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특혜관세 등)에서 규정하는 특정광공업산품 등으로

써 동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 함)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될 수량 및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 고, 화물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거쳐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의 절차)

관세법 제67조의2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는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서 그 신고에 관련된 화물을 넣는 보세 지역 등(보세 지역 또는 제30조 제1항 제2호 (외국화물을 두는 장소의 제한) 규정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다음 항 목에서 같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반입신고시 제출서류에는 수입신고서, 기타 관련서류가 있으며, 기타 관련서류에 는 타 법령 관계서류가 있다.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에 관하여 허가, 승인 등 행정기관이 처분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음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관세법 제70조제1항). 또한 타 법령의 규정 에 따라 수입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건구비를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 사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 검사의 완료 또는 조건의 구비를 세관에게 증 명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동조제2항).

(증명 또는 확인)

관세법 제70조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하여 허가, 승인 등 행 정기관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본 항에서 「허가, 승인 등」이라 함)을 필 요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음을 세 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건의 구비를 필요 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검사 등 수출신고 또는 수 입신고에 관련된 세관의 검사 시 그 법령 규정에 따른 검사의 완료 또는 조건의 구비 를 세관에 증명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증명이 되지 않거나 전항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수입업자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술기준적합확인, 기술기준적합증명 등 증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통관시 이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선인증 후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 4 절 중국

1. 제품 사후관리

중국의 제품 사후관리 검토를 위해 먼저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제품의 사후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증제도

중국의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는 2002년 이전에는 품질 및 안전관련 적합성평가로서 중국제품과 수입제품을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2002년 5월 WTO¹⁵⁾ 가입을 계기로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고유목적에 따라 강제인증(CCC), 진망허가(Network Access License, NAL), 형호핵준(Radio Type Approval, RTA, 무선형식승인인증)으로 구분하여 정보통신단말기는 강제인증제도(CCC)로 일원화하는 한편, 전기통신 네트워크 직접 접속설비에 대해서는 진망허가(NAL) 제도를, 형호핵준(RTA)은 기간무선통신설비의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기능이 없으면 CCC를 받아야 하고, 유선통신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CCC 및 NAL 인증을, 무선통신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CCC, NAL, RTA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합제품의 경우에는 주 기능으로 해당승인 여부를 판단한다.¹⁶⁾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NAL과 RTA 적합성평가업무를 총괄하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China, AQSIQ)은 CNCA와 함께 CCC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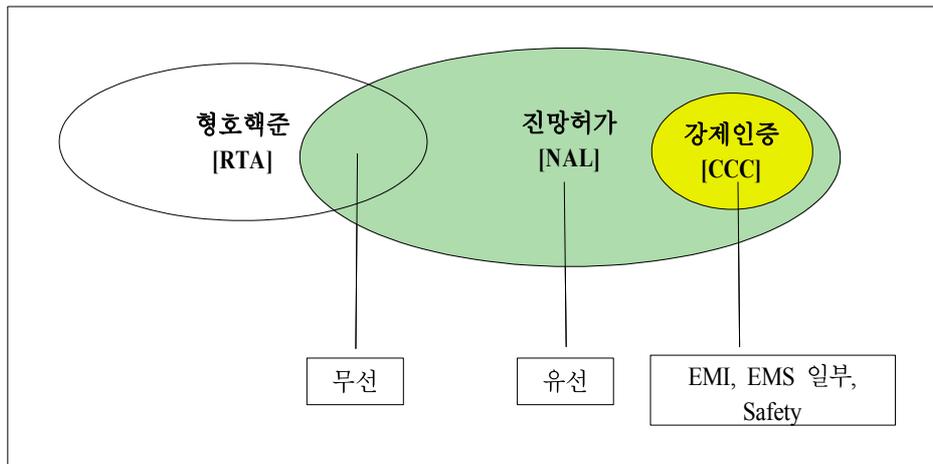
15)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6)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4면 참조.

업무를 총괄·관리·감독·조정한다. 또한 중국품질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CQC)는 CCC외에도 CQC 자원 인증 등을 수행하는 중국 내 최대 인증기관으로 국제전기기기상호인정제도(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IECEE)에서 인정된 유일한 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NCB)이다.

위와 같은 중국의 관련부서는 유무선통신기기 및 단말장치와 관련된 CCC, NAL, RTA의 조화를 위해 각 기관간의 재시험과정을 피하는 등 시험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따라서 중복되는 기기는 해당 시험을 면제받거나 일부 시험항목이 생략된다.

[그림 2-7] 중국 적합성평가 제도간의 비교



자료: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중국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은 아래 <표 2-27>과 같이 구분된다.

<표 2-27> 중국 인증제도 관련법령 구조

구 분	관련법령
강제인증 (C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 관리조례 · 강제성 상품인증 관리규정 ·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관리방법 · 제1강제성 상품인증실시 상품 목록 · 강제성 상품의 인증실시규칙 · 강제성상품 인증비용규정 · 강제성상품 인증제도 실시일정에 관한 규정
진망허가 (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사업부령 · 정보통신설비진망관리방법 · 정보통신설비 진망 생산품질 보증 심사방법 · 정보통신설비 진망검측샘플링 관리규정 · 진망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변경 관리규정 · 이동전화기 시험 사용규범
형호핵준 (R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사업부령 등 · 국가 무선전신관리기구가 공포 발표한 공문 · 관련 기술표준 등

자료: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강제인증(CCC)은 안전승인을 받는 제품, 진망허가(NAL)는 통신과 관련된 단말기, 형호핵준(RTA)은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표 2-28> 중국 제도별 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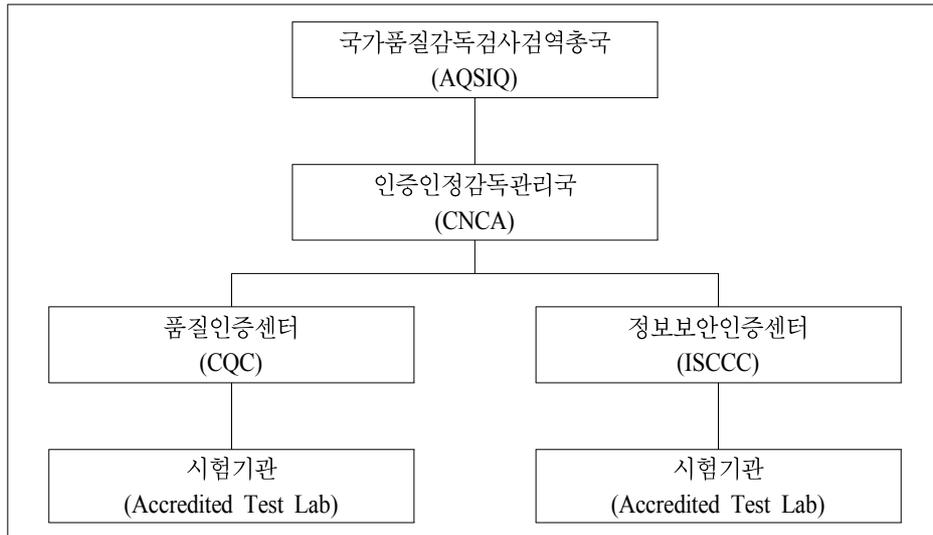
구 분	관련법령
강제인증 (CCC)	무선 LAN제품(1종), 완구, 소방제품, 의료기기, 조명, 통신터미널장비(9종), 정보기술장비(15종), 오디오 및 비디오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소형전원모터, 저전압 전기가전제품, 케이블 등

구 분	관련법령
진망허가 (NAL)	통신단말기, 무선통신설비, 네트워크 간 상호 연결 관련 설비 등
형호해준 (RTA)	무선전송장비, 산업용 원격제어장비, 블루투스 기술장비 등

자료: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강제인증(CCC) 대상제품은 반드시 인증인정감독관리국(CNCA)이 지정한 인증기관(Designated Certification Body, DCB)에서 수여한 인증서를 받고, 인증마크를 사용한 후에 중국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중국품질인증센터(CQC)는 정보기술장비·위성방송수신기·전동공구·무선LAN 등을 인증하고, 중국정보보안인증센터(ISCCC)에서는 무선LAN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다.

[그림 2-8] 중국 강제인증(CCC) 관련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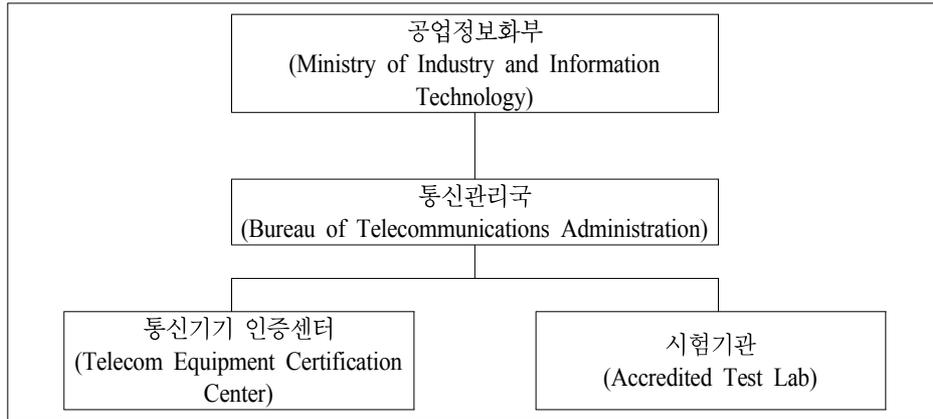
자료: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CCC 면제 대상은 연구용 또는 시험용 제품, 완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부품, 제3국 무역을 위하여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기술개발·개선을 위한 생산라인 도입 목적의 수입부품, A/S 또는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이다. CCC 를 면제 받으려면 제조업체, 판매업체는 증명서류, 책임담보서, 제품의 조건부합설 명서 등을 첨부하여 중국 CNCA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강제인증면제제품 증명서를 취득한 후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CCC) 인증절차는 서류심사, 형식시험, 공장심사, 평가승인, 인증서 발행, 마크사용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인증 신청서와 기술문서를 CQC에 제출하게 되면 CQC는 관련지역 CCC에 위임양식을 송부하게 되며, 해당 CCC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송부한다. 또한 CCC는 신청인에게 제조공장에 대한 최초 질문서를 송부하게 되며, 신청인은 최초질문서 작성 후 회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형식시험은 중국내 시험기관에 샘플을 송부하여 시험하게 되며, 샘플테스트는 제품별로 각각 진행한다. 공장심사는 인증기관에서 파견한 심사원이 공장에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평가승인시 신청자료, 형식시험 보고서와 공장심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한다. 평가승인을 마치면 인증서를 발행해주며, 인증받은 제품에는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진망허가(NAL)는 통신기기 인증센터에서 담당하며, 단말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네트워크 상호연결기기 등 유선통신 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통신요구 사항, 무선, EMC, Safety 분야 등을 시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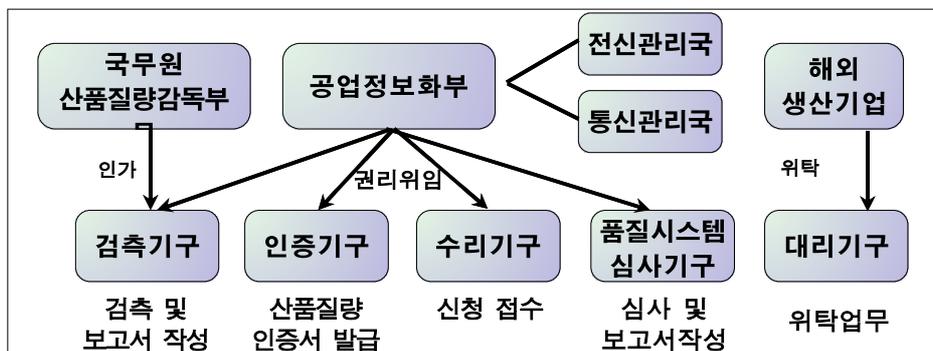
[그림 2-9] 중국 진망허가(NAL) 관련 기관



자료: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진망허가(NAL)의 운영체계는 국무원의 산품질량감독부문과 공업정보화부로 구분되며, 실질적인 운영은 공업정보화부로 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검측기구, 인증기구, 수리기구와 품질시스템 심사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관리·감독은 공업정보화부 산하 통신관리국과 전신관리국에 의해 수행된다.

[그림 2-10] 중국 진망허가(NAL) 운영체계



자료: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위 [그림 2-10]의 진망허가(NAL) 운영체계에 따른 주요기능은 아래 <표 2-29>와 같다.

<표 2-29> 중국 진망허가(NAL)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담당기관		주요기능	
규제기관	국무원 산품질량감독부분	- 진망허가제도 시행을 위한 전신설비 목록 제정 및 공포	
	공업정보화부	- 진망허가제도 시행을 위한 전신설비 목록 공포 - 진망허가를 획득한 전신설비 및 생산기업 공포	
허가기관	중앙정부	전신관리국	- 전국 전신설비 진망관리, 감독, 검사업무 담당 -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 - 진망허가증 및 진망허가마크 발급
사후관리기관	지방정부	통신관리국	- 해당 행정구역내의 전신설비 진망관리·감독·검사 업무 담당 - 해당 행정구역내의 진망허가 획득 전신설비 및 생산기업에 대한 연고검사 실시(매년 12월31일전까지 차년 1월31일까지 통신관리국에 보고)
인증기관	인증기구		- 검측기구에서 생산 시험보고서에 근거해 인증서 발급
시험기관	검측기구		- 진망대상설비에 대한 시험 및 보고서 작성 - 성능, 전기안전, CDG TEST 등 - 중국 정부의 지정을 받은 10개소(북경 3개소, 상해·광주 각 2개소 등)
접수기관	수리기구		- 진망신청서의 접수(북경 2개소)
심사기관	품질시스템심사기구		- 품질시스템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허가대행기관	대리기구		- 외국제조업체의 진망신청 및 허가증 수령 대행

자료: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진망허가(NAL)의 인증절차는 먼저 신청서 제출 전에 휴대폰을 제외한 제품의 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EMC, SAR 등의 형식시험을 한다. 그 후 현장검증 방송시험을 거친 다음 패널감정(Panel appraisal)을 받게 된다. 심사기관은 시험성적서 및 다른 제출물을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형호핵준(RTA)은 무선전송장비, 산업용 원격제어장비, 블루투스 기술장비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며, 무선주파수 스펙트럼과 출력, 스푸리어스 등을 확인하게 된다. RTA 관련 기관은 아래 <표 2-30>와 같다.

<표 2-30> 중국 형호핵준(RTA)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담당기관		주요기능
규제기관	공업정보화부내 무선관리국	- 형호핵준 관련 기준 개발 및 법규 제개정 등
인증기관	국가무선전신관리위원회 (SRRC)	- 형호핵준 승인 신청서 검토 및 승인서 발급 - 시험기구의 시험성적결과 검토
시험기관	국가무선전신검측센터 (SRMC)	- 형호핵준 승인 대상 설비에 대한 시험/보고서 작성 - 무선주파수 대역 시험 등
접수기관	수리기구	- 형호핵준 신청서의 접수(북경 2개소)
허가 대행기관	대리기구	- 외국제조업체의 진망신청 및 허가증 수령 대행

자료: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형호핵준(RTA) 인증절차는 국가무선전신관리위원회(SRRC)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SRRC 시험기관인 국가무선전신검측센터는 이를 시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시험보고서를 검토하여 SRRC이 인증서를 발행해 준다.

(2) 사후관리 제도

1) 개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국가 주도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위의 인증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강제인증(CCC), 진망허가(NAL), 형호핵준(RTA)에 따른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2) 관련법령

중국의 사후관리 관련법령은 공통적으로 제품품질법, 제품표준화법, 수출입제품 검역법이 적용되며, 강제인증(CCC)의 경우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이, 진망허가(NAL)의 경우 중국 전신조례,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령, 전신설비 네트워크 접속 관리방법, 진망통신 단말기 기종변경 관리규정이 적용된다. 형호핵준(RTA)의 경우 중국 무선전신관계조례가 적용된다.

3) 절차

중국의 사후관리는 강제인증(CCC)의 경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의 총괄로 인증인정감독관리국(CNCA), 품질인증센터(CQC)에서 담당한다. 대상설비는 전기통신단말기 총 9종(유선전화용 단말기, 무선전화용 단말기, 휴대폰시스템, 팩스, 모뎀, 휴대폰단말기, I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음향설비 단말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초도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인증 시험 후 초기 공장검사가 AQSIQ 및 CCC 검사원에 의해 직접 수행되며, 정기 공장검사는 승인서 발행 후 연

1회 실시된다. 이 때 서류심사로 대체할 경우도 있다.

진망허가(NAL)의 경우 지방정부의 통신관리국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전신설비(단말통신기기 12종), 무선전신설비(무선통신기기 3종), 네트워크 접속설비(네트워크 상호연결기기 13종) 총 28종을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하거나 경쟁업체 또는 소비자의 고발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형호핵준(RTA)의 경우 지방정부의 통신관리국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무선전파를 송신하는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진망허가(NAL)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4) 행정처분

강제인증(CCC) 관련 인증대상 제품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명시된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0,000위안(약 5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00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망허가(NAL) 관련 진망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설비를 판매하거나 진망허가증의 위조, 도용, 전용 및 위조 도용된 NAL 마크를 부착하여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000위안 이하일 경우 10,000위안에서 100,000위안(약 1,8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망허가증을 위조, 도용, 전용 및 위조 도용된 NAL 마크를 부착하여 불법 소득을 얻은 경우 불법 소득액의 몰수 및 불법소득의 3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인증 미필시에는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마케팅(수입, 판매, 임대, 광고, 선적, 배포 등) 행위가 불가능하다.

<표 2-31> 중국 위반유형별 벌칙

위반 유형	벌칙
o 진망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설비의 포장이나 인쇄물 광고 중에 진망허가 일련번호를 표기한 경우	개정명령 및 경고
o 진망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진실설비를 판매할 경우 o 진망허가증 위조, 도용, 전용 및 위조 도용된 진망허가마크를 부착하여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 위엔 이하일 경우	10,000RMB(160만원) ~ 100,000RMB(1,600만원)
o 진망허가증 위조, 도용, 전용 및 위조 도용된 진망허가마크를 부착하여 불법 소득을 얻은 경우	불법 소득 몰수 및 불법 소득의 3배~5배 벌금
o 진망허가증을 획득한 이후 제품품질 및 성능에 저하가 있을 경우	관련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처벌(신품질량감독부문)

자료: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진망허가(NAL)와 형호핵준(RTA)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인증서 또는 허가의 일시 중단, 취소, 제품파기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2.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중국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중국정부인증서비스(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CNAS)는 국가인증기관으로서 중국 인증인정관리국(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NCA)의 승인하에 중국정부인증인정위원회(China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Certifiers, CNAB)와 중국정부시험인정위원회(China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Laboratories, CNAL)의 합병을 통해 2006년 3월 31일 설립되었다. CNAS는 인증 및 인정에 관한 중국정부의 규정에 따라 CNCA에서 위임받은 인증기관, 시험 및 검사기관의 인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다.¹⁷⁾

17) 구제길(2007), 『정보통신 통합인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인송담대학 산

CNAS는 위원회, 집행위원회, 인증기관의 기술위원회, 시험소의 기술위원회, 검사기관의 기술위원회, 평가감정위원회, 심판청구조정위원회, 사무국직원으로 구성된다. CNAS의 목적은 응용 가능한 표준과 규격들의 요구조건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운영, 과학도구 및 정밀 결과물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성평가기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CNAS의 임무로 첫째, 적합성평가기관을 위한 국가인정시스템을 설립·운영하고, 인증을 위한 규칙,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기술표준 문서의 개발과 발행을 수행한다. 기술표준 문서는 관련 국가법률과 규정, 국제 및 국가표준과 규정에 따른다. 둘째, 국내 또는 외국인 지원자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적격여부 평가, 인정결정, 인정받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관련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셋째, CNAS 로고와 인정심볼을 지정한다. 넷째, 인정관련 인력교육을 조직하고 인정인력들의 자격을 주며, 관리를 수행한다. 다섯째,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관련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정받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해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섯째, 적합성평가 및 인정과 관련한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인정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양자 또는 다자간 인정협력에 서명한다. 일곱째, 인정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다룬다. 여덟째, 관련 정부부처에서 할당한 업무를 수행한다.¹⁸⁾

학협력단), 방송통신위원회, 129면.

18) 구제길(2007), 앞의 책, 132면 참조.

제 5 절 유럽연합(EU)

1. 제품 사후관리

유럽연합(EU)의 제품 사후관리 검토를 위해 먼저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제품의 사후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증제도

EU 집행위원회는 1985년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제품분야나 특성분야별로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구사항을 설정한 EU 지침이 순차적으로 규정되었다. 가맹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내의 법규를 정비해야 하며, 제품분야·특성분야 마다 EU내 공통의 안전·품질기준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기술적 통일과 표준화에 관한 New Approach를 제정하였으며, 1999년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R&TTE 지침(Directive 1999/5/EC on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MC 지침(Directive 2004/108/EC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LVD 지침(Directive 2006/95/EC on Low Voltage Device)을 제정하였다.

Directive(지침)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 및 안전요건만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기준은 통신분야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전기분야는 유럽전기표준회의(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CENELEC), 전기 및 통신의 분야는 유럽표준위원회(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CEN) 등 유럽표준화 기구에 위임하였다.

EU는 1998년 21개 분야별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법적구속력에 따라 지침, 규정(regulation), 결정(Decision)의 형태가 있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녹색(green paper), 권

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등이 존재한다.

<표 2-32> 유럽연합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구분	지침	규정	결정	권고·의견
성격	녹서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입법사항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특정한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규정할 입법사항	EU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상적인 행정조치
강제력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실행은 회원국에 위임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저촉되는 개별회원국 국내법은 무효	특정대상(국가, 기업 및 개인)일 때만 구속력이 있음	법적 구속력이 필요치 않음. 향후 규칙, 지침결정으로 대처 가능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 해외인증포털(www.certification.or.kr)

EU Approach는 이사회 결의 및 결정에 따라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1985년 이사회 결의 “기술적 조화와 기준에 관한 New Approach(Official Journal C136, 04/06/1985)”는 EU내 제품의 안정성이나 품질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이사회 결의 ”인증과 테스트에 관한 글로벌 Approach(Official journal C010, 16/01/1990)” 제품의 적합성심사에 관한 EU의 정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사회 결정 “New Approach 지침(93/465/EEC)”는 적합성심사에 대하여 일반 가이드라인과 상세한 절차를 정하고 글로벌 Approach를 완성하였으며, CE 마크를 도입하였다.

R&TTE 지침에 따른 대상품목은 유무선 통신장비에 대한 규제지침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무선기기와 공중통신망에 장착하는 모든 유선 단말기기가 해당된다. 즉, 이동통신을 포함한 무선랜, RFID 등의 기기를 말한다. R&TTE 지침의 면제대상

은 양방향성 위성방송기기, 시험장비, 음성 및 TV 방송서비스의 수신에만 사용되는 무선장비, 9kHz 미만 또는 3,000GHz 초과 대역에서 운용되는 송신기와 비무선 통신네트워크 기반장비가 해당된다.

R&TTE 지침에 따른 인증절차는 제조자가 EU 내에서 유·무선통신기기를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이 유선기기인지 무선기기인지에 따라 제조자가 선택하여야 할 인증방식이 구분된다. 유선기기(통신용 단말기나 전화기 등)의 경우에 제조자는 규제기관의 관여가 가장 적은 Annex II(Internal Production Control 방식)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Annex IV(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 방식) 또는 Annex V(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선택할 수 있다.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해당 무선기기가 EU가 정한 합의된 주파수대역과 관련 표준을 사용하는 기기인지 여부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선택방식이 다르다. EU가 정한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에 대하여 제조자는 Annex III(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pecific Apparatus Test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앞의 경우에서처럼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Annex IV 또는 Annex V를 선택할 수도 있다. EU가 정한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Annex IV 또는 Annex V를 선택하여야 한다.

<표 2-33> 유럽연합 방송통신기자재 CE 절차

구 분	Annex II	Annex III	Annex IV	Annex V
모뎀 및 전화	○		○	○
합의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	○	○
합의되지 아니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	○

주1) 합의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 EU내 통합화·표준화된 무선기기
(DECT, GSM 등)

주2) 합의되지 아니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통합화·표준화되지 않아서, 주파수가 다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무선기기

(PMR, SRD, Analog Cordless Phone 등)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 해외인증포털(www.certification.or.kr)

부속서(Annex)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nnex II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방식이라고도 하며 모듈 A방식으로, 제조자가 인증지침의 필수요건을 맞추는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첨부한 후에 제품이 필수요건에 부합함을 선언하는 방식임
- 제조자는 EU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님, 즉, 제조자 스스로가 개발 제품이 필수 요구 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여 마크를 부착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는 10년간 보유하여야 함. 이는 모뎀, 유선전화기 등 유선통신기기에 적용됨

- Annex III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pecific Apparatus Test 방식이라고도 하며, Annex II의 경우와 같이 제품에 대한 자체 판단에 추가해서, 특정 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술 문서를 첨부하여 제품이 필수요건을 맞춘다고 선언하는 방식임
- 제조자는 합의표준(harmonized standards)을 사용해야 하며, 그 표준에서 실험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이 설정한 절차에 따른 실험을 해야 함. 이는 Annex II에 필수적인 Radio 시험이 추가되는 것으로 DECT, GSM과 같이 합의표준이 있는 무선기기에 적용됨

- Annex IV

- 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로 칭하기도 하며 Internal Production Control의 방식(Annex III)대로 제조자 자신이 적합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정된 기관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도록 하는 방식임. 이를 위해서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제출함
 - 지정 기관은 4주내에 의견을 발부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는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음. 무선통신기기의 경우에는 시행한 실험 절차 및 방식도 제출하여야 함
 - 제조자는 지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문서(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는 10년간 보관되어야 함.
 - 국가별로 독자적인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유럽연합차원의 합의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선기기에 주로 적용됨. PMR, SRD,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등임
- Annex V
- Full Quality Assurance 방식이라고도 하며 모듈 H의 방식으로, 제조자가 지정기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회원국 주관청의 감독을 받는 품질보증체계를 운영하면서 제품이 인증지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는 방식
 - 즉, 모든 품질 시스템의 인증(Full Quality Assurance, FQA)으로, 설계, 제조, 시험 등 전반에 걸친 과정이 지정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

무선통신기기에 대하여는 R&TTE 지침에서 개별회원국의 전파 환경특성에 따라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관련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별 회원국들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제조자들은 이러한 개별 회원국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사항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준수는 CE-Marking 과정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며 개별 회원국 해당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별도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표 2-34> R&TTE 규격에 따른 적합성평가 방법

Annex II (자체생산관리)	Annex III (자체제조관리 + 특정기기시험)	Annex IV (기술문서파일)	Annec V (완전품질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 마킹부착 - 적합성선언서 작성 - 기술문서 작성 - 10년간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 마킹부착 - 적합성선언서 작성 - 기술문서 작성 - 무선시험실시(NB) - 10년간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 마킹부착 - 적합성선언서 작성 - 기술문서파일 작성 후 NB로부터 승인 - 무선시험실시(NB) - 10년간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 마킹부착 - 적합성선언서 작성 - 완전품질보증업무 수행 후 NB로부터 승인 - 10년간 보관

주1)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 General description of the equipment
- Design and manufacturing drawings
- Schemes of components, circuits, etc.
- List of standards applicable and/or description of the technical solutions adopted
- Test reports

주2) 기술문서파일(Technical Construction File)

- Technical Documentation
- Declaration of Conformity based on radio test suites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 해외인증포털(www.certification.or.kr)

EMC 지침에 따른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규제지침으로 전자파 장해를 생성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기전자 부품들을 포함하는 장비 및 설치물과 함께 모든 전기전자 기기가 해당한다. 즉, 스스로 전자파를 발생하여 다른 기기의 오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자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파는 컴퓨터, TV, 냉장고의 냉각 모터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포함된다. EMC 지침의 면제대상은 전기적·전자적 부품이 없는 장비가 해당되며,

EMC 지침의 적용으로부터 명백히 면제받는 것은 R&TTE 지침의 무선장비 및 통신용 단말장비, Regulation 1592/2002에 명시된 항공용 제품, 부품, 기구, ITU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RR)에 명시된 무선 아마추어용 무선장비를 말한다.

또한 유럽공동체의 다른 세부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장비로서 방사 및 내성 EMC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비는 ① Directive 72/245/EEC 및 2004/104/EC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② Directive 90/385/ECC의 능동이식용 의료기기, ③ Directive 93/42/EEC의 의료기기, ④ Directive 98/79/EC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⑤ Directive 96/98/EC의 적용을 받는 해상장비, ⑥ Directive 75/332/EEC의 적용을 받는 농업용·산림용 트랙터, ⑦ Directive 97/24/EC의 범위 내에 속하는 2륜 또는 3륜 자동차가 있다.

내성과 관련하여 EMC 지침의 적용을 면제받는 장비로써 ① Directive 2004/22/EC의 측정기구, ② Directive 90/384/EEC Annex I-8(2)의 적용을 받는 수동형 중량측정 기구가 해당된다.

그리고 본래부터 지닌 물리적 성질에 의해 무선통신장비 및 기타 장비가 의도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전자파 방사를 생성하거나 그러한 전자파 방사를 가중시킬 수 없고 또한 의도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전자파 방해 하에서 허용 불가능한 지장 없이 운영되는 장비로써 ① 각각의 케이블, 케이블링 및 케이블 부속품, ② 자동 변환기기 없이 저항성 부하물만을 포함하는 장비(제어장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환풍기가 없는 단순형 가정용 난방기기), ③ 배터리 및 완충기(능동형 전자회로가 없는 것), ④ 증폭장치 없는 헤드폰, 확성기, ⑤ 능동형 전자회로 없는 Pocket lamp, ⑥ 회로 내에서의 단락오류 또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하는 동안 일시적인 방해만을 유발하고 능동형 전자부품 또는 능동형 구성요소가 없는 퓨즈 및 누전 차단기 등의 능동형 전자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보호장비, ⑦ 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노화과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적 절연압력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EMC 제품표준이 아닌 다른 제품표준에 속하는 기술규정에 따라 통제되고, 능동형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고압장비, ⑧ 고압 유도장치, ⑨ 고압

변환기, ⑩ 기타(Capacitor(역률교정용 Capacitor), 유도 전동기, Quartz watch(무선 수신기 등의 추가기능 없는 것), 필라멘트 램프, 능동형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가정용·건물용 스위치, TV 및 라디오 방송수신용 수동형 안테나, 플러그, 소켓, 단자 등)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완제품이 다른 장치에 병합되기 위한 산업용 부품만을 위해 만들어진 장비로서 최종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구성요소 및 하위 부품의 경우로써 최종 사용자 외에 사람에 의해 장치 및 관련 하위 부품에 병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성요소와 하위 부품(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의 일부를 형성하는 전기적 또는 전자적 구성요소, 저항기, 유도기, 필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전류제어기, 직 접회로, 전자기적 단순계전기, LED, 음극선관)은 장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EMC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MC지침에 따른 인증절차는 ITU에서 규정한 방송용 수신기와 원격통신 단말기의 경우 Notified Body에 의해 EU 형식시험 증명서를 받아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합성선언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① EU 선언서가 언급한 기기의 설명, ② 적합성을 선언한 규격에 관련된 내용 또는 해당하는 경우, 본 지침의 규정에 기기가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내제도에 관한 내용과의 관련성, ③ 제조자 대신에 서명할 권한이 주어진 사람 또는 대리인 식별, ④ Notified Body에서 발행된 EU 형식시험 증명서이다. Notified Body가 제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기술 파일 제출이 필요하다. 기술 파일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①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또는 Notified Body의 명칭 및 주소, ② 적합성선언서, ③ 제품의 일반적 기술, ④ 조작 설명서, ⑤ 설치 설명서, ⑥ 구성부품, 조립품, 전기회로 등의 설계도, 생산도면, ⑦ 제품기능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술 및 설명, ⑧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된 규격 리스트, 및 적용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EMC 보호수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된 해결책의 설명, ⑨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 노트, ⑩ 시험성적서 등이다. 그 밖의 기기에 적용하는 EN 규격이 존재할 경우, 적합성선언서만 작성하면 된다. 적용할 EN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분적으

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 기술 파일을 작성하여 Competent Body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LVD 지침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규제지침으로 통상 전기안전인증으로 통용된다. LVD의 대상은 특정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를 말한다. 특정전압 범위란 정격전압 기준으로 50V~1,000VAC 또는 75V~1,500VDC를 의미하며, 가정 또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LVD 지침 면제대상은 ① 폭발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②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③ 화물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부품, ④ 전력계(Electricity meters), ⑤ 가정용 플러그·소켓, ⑥ 전기식 펜스의 제어기, ⑦ 선박, 항공기, 철도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전기기기로서 가맹국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의해 제정된 안전규격에 적합한 기기가 해당된다.

저전압지침 73/23/EEC "특정한 전압 범위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진 전기기기에 대한 가맹국 법률의 조화에 관한 지침"은 1973년 2월에 채택되었고 각 회원국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후 다른 지침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CE Marking에 관한 지침 93/68/EEC(1973년 7월 22일)에 의한 개정으로 CE마크가 강제되었다.

<표 2-35> 유럽연합 저전압지침의 구성

구 분	주요내용
서 론	본서 작성에 해당되는 지침, 전반적인 해설 및 유의사항
지침본문	본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조문, 가맹국에 대해서는, 이들 조항이 법적 인 의무나 권한을 부여한다.
Annex I	안전에 관한 설계의 일반지침 및 기본적 요구사항
Annex II	지침 대상 외의 기기 등
Annex III	A. "CE Marking"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 B. "적합성선언서"에 관한 요구사항

Annex IV	내부 제조 관리 - 기술 문서의 내용 및 선언서의 보관 - 제조 공정의 관리
----------	--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 해외인증포털(www.certification.or.kr)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EU 지침이 적합하다는 것을 적합성평가 방법을 거쳐 인증받고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 제도

1) 개요

유럽은 위의 인증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irective(지침)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후관리는 각 국가에서 담당한다. 사후관리 담당기관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ETSI, CENELEC, CEN 등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은 EU 내에서 제조된 제품 및 EU 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New Approach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제품안전성지침이 적용된다. 어느 New Approach에 해당되는가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위임대리인이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지침에 정해진 의무를 지게된다. EU 외의 지역에서 제품을 수입한 자는 제조업자의 거점이 없고 제조업자의 위임대리인도 없는 경우 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관련법령

사후관리에 적용되는 법령은 앞의 인증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ew Approach 를 비롯하여 지침(Directive), 규정(Regulation),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및 의견(Opinion) 등이다.

3) 절차

각 New Approach 지침은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충족해야만 할 안전이나 품질로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필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요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럽표준화기구가 규격을 정한다.

제조업자는 EU 내의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New Approach 지침에 규정된 적합성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 New Approach 지침에서는 지침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제품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Safe Guard 조항이 적용된다. Safety Guard는 지침에 위반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회원 각국이 제품의 유통 제한이나 수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처분

사후관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EU 지침 자체에서 이를 처벌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각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결과는 유럽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 시험·인증기관 사후관리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인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는 New

Approach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즉, EU 회원국은 03/465/EEC 지침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공인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 기관이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능력, 독립성 및 성실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EU 회원국의 지침이 채택된 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특정 기관을 공인할 수 있다. 이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공인 기관에게 식별번호(ID Number)를 배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번호를 배정 받은 후 3개월 내에 자국의 공인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면 EU 집행위원회는 배정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다. 기관에 대한 공인은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전달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자체적 발의에 의하거나 고소장을 받은 후에 공인기관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공인담당기관에 통보하고 합당한 증명을 요청한다. 회원국이 증명을 하지 못하면 집행위원회는 다른 회원국에게 이를 알려 협의하거나 해당 회원국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조약(EC Treaty) 제226조에 의한 절차를 개시한다.

EU Treaty Article 226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is Treaty,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유럽공동체 조약 제226조

회원국이 이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합당한 의견을 제시한다.

만일 회원국이 일정기간 내에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에 해당 사안을 제소할 수 있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공인기관이 요건이나 의무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의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럽공동체 조약 제22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EU Treaty Article 227

A Member State which considers that another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is Treaty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Before a Member State brings an action against another Member State for an alleged infringement of an obligation under this Treaty, it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after each of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wn case and its observations on the other party's cas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f the Commission has not delivered an opinio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was brought before it, the absence of such opinion shall not prevent the matter from being brought before the Court of Justice.

유럽공동체 조약 제227조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이 조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에게 자신의 의견을 다른 회원국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3개월 내에 회원국의 의견이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의견의 부재는 법원의 제소유무와 관계가 없다.

공인기관이 요건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은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한 후 공인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이 때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를 공고하여야 하며,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의 취소 및 정지의 주체는 담당 회원국이며, EU 집행위원회는 명부에서 공인기관을 삭제할 수 있을 뿐 직접 취소 및 정지조치를 할 수는 없다.

제 6 절 기타국가

1. 독일

독일의 인정체계는 독일인정평의회(Deutscher Akkreditierungs Rat, DA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DAR 자체가 인정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DAR은 1991년 3월에 시험, 인증, 검사기관의 인정분야 활동의 조정, 독일 인정 및 승인기고나의 등록 관리, 일반적인 인정 이슈를 다루기 위한 국내, 유럽 및 국제조직에서 독일 대표기관의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인정기관은 민간기관인 DATech로써 케이블, 전기기계 및 전력, 전자파적합, 전자부품, 고전압장비, 저전압장비, IT보안, 전자장비의 안정성 등의 시험, 인증, 검사기관의 인정을 담당한다.¹⁹⁾

독일은 EMC 규격의 사후관리 주도국으로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방망청(Federal Network Agency, FNA)에서 인증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는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법(EMVG) 및 무선기기 및 정보통신단말기에 관한 법(FTEG)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EMVG는 89/336/EEC의 EMC 지침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FTEG는 99/5/EC의 R&TTE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사후관리는 유통 중이거나 유통이 허가된 기기를 직접구매하거나 제조자에게 샘플을 요청하여(무상, 5대)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 <표 2-36>과 같이 EMVG, FTEG에 따라 대상기기가 다르다.

19) 구제길(2007), 앞의 책, 113-117 참조.

<표 2-36> 독일 사후관리 대상기기

구 분		제 품
EMVG 적용제품	가전제품	주방기기, 히터, 장난감, 펌프 등
	전동공구	전기드릴, 전기톱, 연마기기, 원예조정 기기 등
	조명장비	실내외 조명, 변압기 등
	IT기기/사무용기기	컴퓨터, 복사기, 플러그인 카드 등
	영상음향기기	무선방송수신기, DVD 플레이어 및 레코더, 스테레오 시스템
	설비기자재	제어장치, 경보시스템, 영상감시시스템 등
	ISM	RF 용접기, RF 건조기 등
FTEG 적용제품	통신단말기기	전화기, 팩스, 모뎀 등
	무선장비	W-LAN, FM 송신기, 무선조종 장난감, SRD, PMR 등
	통신단말기기 및 무선장비 조합제품	무선전화, 휴대폰 등

자료: 문태현(2009), 방송통신기기 시장 감독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사후관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비EU 국가에서 EU 또는 독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CE 마크 부착 원칙을 위반하여 장비를 시장에 들여오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다른 마크의 부착으로 CE 마크의 시각성 및 명료성을 훼손한 경우 장비의 회수처분이 부과되며, 5만 유로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장비 작동에 관한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의 회수처분과 1만 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아래 <표 2-37>와 같다.

<표 2-37> 독일 사후관리 위반 행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벌내용
CE마크 부착 원칙을 위반하여 장비를 시장에 들여오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EMVG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장비회수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표준이 없는 기기를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EMVG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장비회수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다른 마크의 부착으로 CE 마크의 시각성 및 명료성을 훼손한 경우	EMVG 제20조제1항제5호	장비회수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장비 작동에 관한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MVG 제20조제1항제6호	장비회수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명령 또는 강제지침을 위반한 자	EMVG 제20조제2항	1만 유로 이하의 벌금
제품관련 기술문서 또는 EC 적합성 인증 문서가 없거나 최소 10년간 이를 소지하지 않은 자	EMVG 제20조제2항	1만 유로 이하의 벌금
인증당시 또는 적합성 인정 기간 동안 제품의 기술을 지키지 않은 자	EMVG 제20조제2항	1만 유로 이하의 벌금
사업자 인터페이스 정보의 미제출	FTEG 제17조제2항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인증기관에 의하지 않은 인증	FTEG 제17조제2항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CE 마킹을 하지 않은 기기의 유통	FTEG 제17조제2항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문서보관의무 위반	FTEG 제17조제1항	1만 유로 이하의 벌금
품질보증시스템의 평가를 거부하지 않거나 취소하지 않은 경우	FTEG 제11조제1항	1만 유로 이하의 벌금
통신단말기기의 접속거부	FTEG 제17조제1항	1만 유로 이하의 벌금

2. 프랑스

프랑스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또는 시장감시제도라는 용어는 없으며, 소비자용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시장감시를 위한 일반적 제품안전에 따라 재경부 산하 공정거래 소비부정 방지국(General Directorate for Fair Trading, Consumer Affairs and Fraud Control, DGCCRF)에서 실시된다. 감시절차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공공 건강, 환경 및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의 충족과 공정 경쟁의 원칙과 부합하는 교역을 목적으로 한다.²⁰⁾

DGCCRF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서비스와 제품의 보호 부분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미 프랑스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감시를 위해 세관 등 다른 기관과 협조하거나 독립적으로 감시활동을 한다. 프랑스 세관 또한 EU 수준과 프랑스 국가수준에서 규정한 기술규정에 따르는 제품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하는데 EU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거나 DGCCRF와 협조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DGCCRF와 세관은 두 가지 형태의 감시를 하는데 하나는 국경선 감시(제품의 세관 통관 전)로서 EU 규정에서 정한 적합성평가절차와 본질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세관은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을 감시하며, CE 마크가 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세관을 통관하였거나 다른 EU 회원국들의 제품으로서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다.²¹⁾

제품 사후관리는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에 근거하여 프랑스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법에 의해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표본추출 검사 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장비회수 조치가 부

20) 문태현(2008),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파진흥협회, 79면 참조.

21) 문태현(2008), 위의 책, 80-81면 참조.

과되며, 인증사항 위반시 징역 1년과 15,000유로의 벌금, 명령·결정 등 조치 미이행시 징역 2년과 1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 2-38> 프랑스 사후관리 위반 행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벌내용
표본추출 검사 후 위반사항 적발	R.218-1	장비회수
인증사항 위반	L.218-7	징역 1년과 15,000 유로의 벌금
명령·결정 등 조치 미이행	L.218-7	징역 2년과 15,000 유로의 벌금

제 3 장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분석

제 1 절 사전통관 제도

1. 개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통관이란 선인증 후통관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세관장 확인품목에 포함시켜 수입되는 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시험과 인증을 받는 다는 조건으로 통관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전통관 역시 수입통관시 인증을 받은 제품이 통관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인증을 받겠다는 조건 하에 통관수량과 횟수제한 없이 통관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통관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인증받지 않은 기자재를 불법으로 유통시킬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전통관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통관 제도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의 현황 및 인증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관세청으로부터 사전통관된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파악

나. 위의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여부를 국립전파연구원 인증현황 DB와 비교·조사(2011년 11월 30일 기준)

이하에서는 사전통관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 현황 및 인증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사전통관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는 아래 <표 3-1>와 같다.

<표 3-1> 사전통관 현황(2010년)

(단위: 건)

구 분	건 수
총 사전통관 건수	3,964건
인증건수	2,815건
미인증건수	1,149건

주1) 건수는 모델수를 의미함(예: A라는 제품이 수차례 통관된 경우 1건)

주2) 인증건수는 해당 월에 통관된 제품이 2011년 11월 30일 내에 인증된 경우를 의미함

자료: 관세청 사전통관 DB

월별 통관건수 및 인증건수는 아래 <표 3-2> 및 <표 3-3>과 같다.

<표 3-2> 사전통관 월별 현황(2010.1월~6월)

(단위: 건,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통관건수	533	470	376	359	255	310
인증건수	398	375	228	262	184	222
미인증건수	135	95	148	97	71	88
인증비율	74.7	79.8	60.6	73	72.2	71.6

주1) 인증비율=인증건수/통관건수

자료: 관세청 사전통관 DB

<표 3-3> 사전통관 월별 현황(2010.7월~12월)

(단위: 건, %)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관건수	236	369	261	235	261	299
인증건수	189	262	179	159	153	204
미인증건수	47	107	82	76	108	95
인증비율	80.1	71	68.6	67.7	58.6	68.2

자료: 관세청 사전통관 DB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령상 정보기기, 무선기기, 유선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정보기기에는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내장 구성품, 기타 정보기기로 세분화 된다. 무선기기는 소출력무선기기, 미약전파기기, 기타업무용 무선기기로 세분화되며, 유선기기는 단말기기류, 복합기기류, IPTV, 회선중단장치류로 세분화된다.

위 분류에 따른 2010년 총 사전통관 제품 3,964건의 유형별 건수는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사전통관 제품의 유형별 건수

(단위: 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 수
정보 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입력, 출력, 외장형저장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주변기기	1,405
	컴퓨터내장 구성품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기타 내장구 성품류	1,692
	기타 정보기기	-	599
	소 계		3,696 (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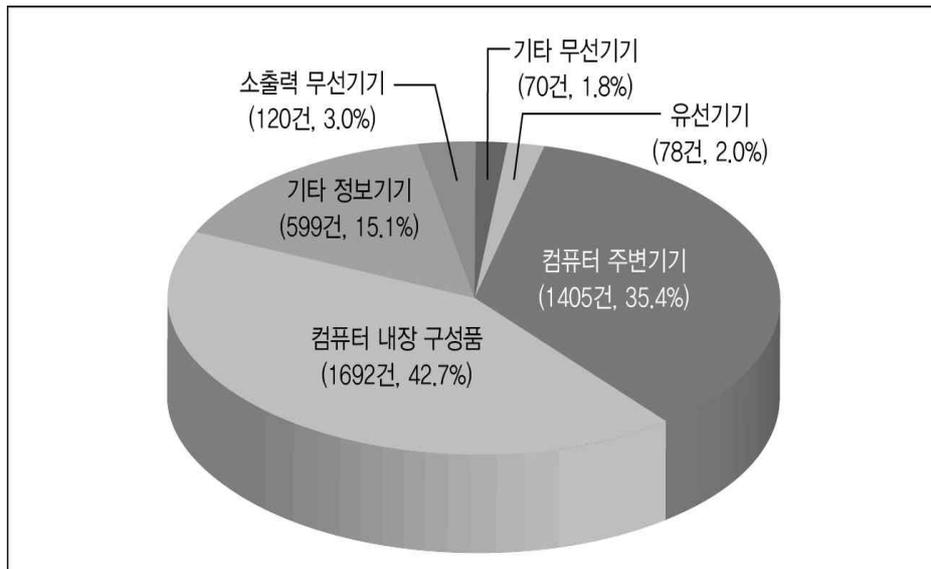
190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 수
무선 기기	소출력 무선기기	블루투스(Bluetooth)	22
		무선랜(Wireless LAN)	31
		RFID/USN용 무선설비 (900MHz, 434MHz, 13.56MHz대역)	14
		코드없는 전화기(Cordless Phone)	13
		무선조정용 소출력무선기기 (Remote Controller)	10
		데이터전송용 소출력무선기기 (Data transmitter Radio)	6
		기타 소출력기기 (무선마우스, 무선바코드, 무선스캐너 등)	19
		장남감조정기(RC Car Remote controller)	5
	미약 전파기기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FM 트랜스미터, 차량후방감지기 등)	12
		자계유도식 무선기기(125kHz RFID 등)	8
	기타업무용 무선기기	중계기(Repeater)	2
		무선수신기(Radio Receiver)	1
		휴대폰(WCDMA Module포함)	4
		무선송,수신기(Radio Transceiver)	12
		일반무전기(고정, 휴대, 차량용 무전기)	12
		UWB,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8
		무선탐지업무용 무선기기 (수도관과열 무선감지기 등)	4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가스차량설치용 무전기 등)	4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400MHz FRS 등)	3
	소 계		190 (4.8%)
유선 기기	단말기기류	아날로그 및 디지털전화기, 화상전화기, IP Phone	6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 수
		기타 모델류	2
	복합기기류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능 조합	3
	IPTV	IPTV(인터넷텔레비전)	3
		소 계	78 (2%)
총 계			3,964

자료: 관세청 사전통관 DB

[그림 3-1] 사전통관 제품 유형별 비율



자료: 관세청 사전통관 DB

3. 문제점

사전통관 제도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지정시험기관이나 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인증을 받았다는 조건 하에 통관을 해주는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중인 “관세청 인터넷통관 포탈접속시스템(일명, 수입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통관되게 된다.

그리고 인증받은 제품은 사전통관으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수업체들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업체이므로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모델을 하나의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중복해서 통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모델을 다른 업체가 중복해서 통관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2010년 사전통관으로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 중 같은 모델을 3회 반입된 건수는 2건, 2회 반입된 건수는 26건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 차례 수입을 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사전통관으로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제2 절 인증소요 기간

1. 개요

2010년 한 해 동안 사전통관으로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는 총 3,964건이며, 이 중 2,815건(71%) 만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전과법령상 사전통관 후 언제까지 인증을 받으라는 명시적인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입업자들은 신속한 기간 내에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험소가 인증시험을 태만히 할 가능성은 적으나, 2010년도에 반입된 기자재의 인증여부를 조사한 2011년 11월까지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29%의 기자재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만약 현재 시험소에서 시험중임을 안다고 하더라도 인증지연에 대하여 수입업자 및 시험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결국 인증받지 않은 기자재가 시장에서 불법유통 될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로 비취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통관을 통하여 국내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신속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사전통관 후 인증받을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산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전통관된 방송통신기자재(총 3,964건)를 대상(관세청 사전통관 현황자료(DB)상 통관일 기준)으로 함
- 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내 인증현황 검색을 통한 사전통관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여부 및 인증일자 전수조사 실시(2011년 11월 30일 기준)

2. 조사결과

2010년 사전통관을 이용하여 국내 반입된 후 인증을 받은 2,815건의 인증소요 기간 산출결과는 아래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월 이내 인증완료된 기자재가 1,323건(47%), 1개월~2개월 이내 인증완료된 기자재가 533건(18.9%), 2개월~3개월 이내 인증완료된 기자재가 248건(8.8%)으로 조사되었다. 2개월 이내 인증완료 비율은 1,856건(66%), 3개월 이내 인증완료된 기자재가 2,104건(74.8%)이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하여 인증받는 비율도 330건(11.7%)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인증소요 기간 산출결과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1개월 이내	1,323	47
1개월~2개월 이내	533	18.9
2개월~3개월 이내	248	8.8
3개월~4개월 이내	168	6
4개월~5개월 이내	122	4.3
5개월~6개월 이내	91	3.2
6개월 이후	330	11.7

자료: 관세청 DB

또한 이미 인증받은 기자재를 사전통관으로 반입한 경우가 262건(9.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관일과 인증일이 동일한 경우가 23건(0.8%)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앞서 사전통관제도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업체들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업체이므로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3.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통관으로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가 언제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전과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수입업자들은 신속한 기간 내에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2~5일 정도이며, EU의 경우에는 공급자 적합선언(SDoC)을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인증 소요 시간은 없으나, 제조사 요구에 따라 NB(Notified Body)의 인증을 거칠 경우 통상 1~2주가 소요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JATE 등의 업무규정상 인증 심사 소요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인증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험기관에서 인증업무를 태만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 해외주요국의 인증심사 소요기간과 비교할 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330건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사전통관 후 인증받을 때까지 인증소요 기간에 대한 규제를 전과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인증기간 부재로 인한 인증 장기화, 인증 전 유통가능성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2)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 해외인증포털(www.certification.or.kr) 참조.

제 3 절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

1. 개요

적합성평가면제 요건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경우 해당 수입업체 담당자가 관할세관으로부터 통관 전에 해당제품이 면제요건에 해당된다는 용도와 사용처 그리고 수입물량을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신청서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신청서를 신청수입업자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의 현황은 2010년 1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6개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평가면제 신청을 받아 관세청으로부터 통관된 방송통신기자재 현황자료를 기초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기간이 2010년 1월 24일인 이유는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제도가 이때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5대 이하로 국내 반입된 제품도 제외하였는바, 그 이유는 5대 이하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에는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적으며, 새로운 적합성평가체계가 시행되기 전에는 5대까지 반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2. 조사결과

적합성평가면제확인 방송통신기자재는 총 3,061회(315,496대)에 걸쳐 국내에 반입되었다. 이 중 5대 이하 제품은 1,990회에 걸쳐 4,222대가 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대 이하로 반입된 제품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앞서 언급하였다.

<표 3-6>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품 수량

구 분	횟수(수량)	비 고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전체건수	3,061회(315,496대)	
5대 이하 제품건수	1,990회(4,222대)	조사대상 제외
조사대상 제품건수	1,071회(311,274대)	

자료: 관세청 DB

용도별로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출용,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시험·연구·기술개발용, 국외사용, 외국선박, 항공기 설치용의 순으로 반입되었다.

<표 3-7> 용도별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수량

용 도	수량(횟수)	비율(%)
수출용	218,420대(195회)	70.2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56,744대(32회)	18.2
시험·연구·기술개발용	23,079대(665회)	7.4
국외사용	10,151대(87회)	3.3
외국선박, 항공기 설치용	849대(10회)	0.3
유지보수용	655대(31회)	0.2
외국기술자 사용후 반출용	432대(17회)	0.1
전시, 행사용	424대(14회)	0.1
외국납품목적 선박설치용	362대(10회)	0.1
군납용	158대(10회)	0.1
총 계	311,274대(1,071회)	100

자료: 관세청 DB

적합성평가면제확인 반입 횟수별 업체는 전체 반입 총 3,061회 중 삼성전자, LG전자, 신한정보통신, 모토로라, LG에릭슨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량별 제품은 전체 반입 총 315,496대 중 리모콘(뉴웨이), 무선랜카드(윈스타테크), 휴대폰(파고텔), 스마트키(르노삼성자동차), CATV셋톱박스(기룡전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적합성평가면제확인 횟수 및 수량 현황(상위 10위)

순번	횟수별		수량별		
	업체명 (주요제품)	횟수	제품명 (업체명)	용도 (면제확인월)	수량
1	삼성전자 (휴대폰, RRH)	534회	리모콘 (뉴웨이)	수출용 (’11.7월)	40,500대
2	LG전자 (휴대폰, 노트북)	285회	무선랜카드 (윈스타테크)	수출용 (’11.3월)	20,000대
3	신한정보통신 (키보드, 마우스)	104회	휴대폰 (파고텔)	수출용 (’11.7월)	11,598대
4	모토로라 (휴대폰)	86회	스마트키 (르노삼성자동차)	수출용 (’11.7월)	11,410대
5	LG에릭슨 (무선랜)	65회	CATV셋톱박스 (기룡전자)	기간사업자용 (’11.5월)	10,000대
6	제이디앤 (전화기, 팩스)	48회	리모콘 (아이젠)	국외사용 (’11.7월)	6,900대
7	한국레노버 (LCD모니터)	43회	휴대폰 (파고텔)	수출용 (’11.4월)	6,753대
8	퀄컴 (휴대폰, 블루투스)	37회	휴대폰 (파고텔)	수출용 (’11.5월)	6,538대
9	한국요꼬가와전기 (컴퓨터, 주변기기)	25회	차량무선리모콘 (우장전기)	수출용 (’11.7월)	6,300대
10	다산네트웍스 (컴퓨터, 주변기기)	24회	케이블모뎀 (인텍디지털)	수출용 (’11.7월)	6,040대
총 계	1,251회 (전체 3,061회의 약 40%)		126,039대 (전체 315,496대의 약 40%)		

자료: 관세청 DB

조사대상 제품건수에 따른 수출용 기자재의 경우 횡수는 삼성전자, 파고텔, 한국요꼬가와전기, LG전자 순으로, 수량은 리모콘(뉴웨이), 무선랜카드(윈스타테크), 휴대폰(파고텔), 스마트키(르노삼성자동차)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수출용 횡수 및 수량 현황(상위 10위)

순번	횡수별		수량별		
	업체명 (주요제품)	횡수	제품명 (업체명)	면제확인월	수량
1	삼성전자 (RF 증폭기, 프린터)	22회	리모콘 (뉴웨이)	'11.7월	40,500대
2	파고텔 (휴대폰)	20회	무선랜카드 (윈스타테크)	'11.3월	20,000대
3	한국요꼬가와전기 (트랜스미터)	20회	휴대폰 (파고텔)	'11.7월	11,598대
4	LG전자 (휴대폰)	14회	스마트키 (르노삼성자동차)	'11.7월	11,410대
5	다산네트웍스 (모뎀)	8회	휴대폰 (파고텔)	'11.4월	6,753대
6	르노삼성자동차 (스마트키, 블루투스)	7회	휴대폰 (파고텔)	'11.5월	6,538대
7	백금티앤에이 (무전기, 트랜시버)	6회	차량무선리모콘 (우장전기)	'11.7월	6,300대
8	글로벌비즈코리아 (허브)	6회	케이블모델 (인택디지털)	'11.7월	6,040대
9	아이디테크 (신호변환기)	6회	휴대폰 (수우텔레콤)	'11.4월	5,000대
10	글로벌스타 (위성휴대전화기)	4회	휴대폰 (파고텔)	'11.7월	4,740대
총계	113회 (총 195회의 약 57.9%)		118,879대 총 218,420대의 약 54.4%		

자료: 관세청 DB

조사대상 제품건수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기자재의 경우 횡수는 중앙네트워크솔루션, 트루네트웍스, 컴버지솔루션스, 그레이트테크, 왈도시스템 순으로, 수량은 CATV셋톱박스(기룡전자), AP(중앙네트웍솔루션), 광모뎀(중앙네트웍솔루션), 휴대폰(중앙네트웍솔루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횡수 및 수량 현황(상위 10위)

순번	횡수별		수량별		
	업체명 (주요제품)	횡수	제품명 (업체명)	면제확인월	수량
1	중앙네트웍솔루션 (AP, 광모뎀)	15회	CATV셋톱박스 (기룡전자)	'11.5월	10,000대
2	트루네트웍스 (AP, 공유기)	4회	AP (중앙네트웍솔루션)	'11.4월	5,400대
3	컴버지솔루션스 (네트워크 라우터)	4회	광모뎀 (중앙네트웍솔루션)	'11.5월	5,000대
4	그레이트테크 (패치판넬)	2회	광모뎀 (중앙네트웍솔루션)	'11.5월	5,000대
5	왈도시스템 (위성모뎀)	2회	휴대폰 (중앙네트웍솔루션)	'11.6월	5,000대
6	케이씨네트웍 (구내용 송수신기)	2회	AP (중앙네트웍솔루션)	'11.5월	3,950대
7	기룡전자 (CATV셋톱박스)	1회	패치판넬 (그레이트테크)	'11.7월	3,400대
8	엑스루션이엔지 (전원공급기)	1회		'11.4월	3,000대
9	서비스코리아 (네트워크 장비)	1회	AP (중앙네트웍솔루션)	'11.6월	3,000대
10	-		무선랜송신기 (중앙네트웍솔루션)	'11.4월	2,000대
총계	32회 (100%)		45,750대 (총 56,744대의 약 82.1%)		

자료: 관세청 DB

시험연구용 기자재의 경우 횟수는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엠세븐시스템, LG에릭슨의 순으로, 수량은 와이파이카드(대경디지텍), 휴대폰(LG전자, '11.4월), 무선랜 모듈(삼성전자), 블루투스 스피커폰(이너스텍)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시험연구용 횟수 및 수량 현황(상위 10위)

순번	횟수별		수량별		
	업체명 (주요제품)	횟수	제품명 (업체명)	면제확인월	수량
1	삼성전자 (휴대폰, 무선랜모듈)	272회	와이파이 카드 (대경디지텍)	'11.3월	450대
2	LG전자 (휴대폰, 노트북)	91회	휴대폰 (LG전자)	'11.4월	298대
3	모토로라 (휴대폰)	21회	무선랜 모듈 (삼성전자)	'11.5월	230대
4	엠세븐시스템 (휴대폰)	16회	블루투스 스피커폰 (이너스텍)	'11.4월	230대
5	LG에릭슨 (광모듈, SFP 장비)	15회	휴대폰 (LG전자)	'11.4월	220대
6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휴대폰)	8회	카드리더기 (실리콘모션 코리아)	'11.3월	200대
7	다산네트웍스 (모델)	7회	블루투스헤드셋 (크레신)	'11.5월	200대
8	에이씨티에스콤 (휴대폰)	6회	USB 무선모뎀 (프랭클린 테크놀로지)	'11.6월	193대
9	한국레노버 (노트북, PC)	6회	PDA, 모델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11.6월	175대
10	한국노바티스 (PDA)	4회	가정용IP폰 (삼성전자)	'11.6월	170대
총계	440회 (총 665회의 약 66.2%)		2,366대 (총 23,079대의 약 10.3%)		

자료: 관세청 DB

3. 문제점

앞의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적합성평가면제확인 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들은 대기업에서 주로 수출용,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시험·연구·기술개발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여기에서 100대 이하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시험·연구·기술개발용을 제외하고는 반입 수량의 제한이 없어 대량으로 기자재가 수입되고 있다. 특히 1,000대 이상 적합성평가면제확인으로 수입되는 건수가 63건이나 되며, 1회에 40,500대를 수입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들 방송통신기자재가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앞의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용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자재의 불법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결국 제조·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량이 제한이 완화되었으나, 너무 많은 수량에 대한 제한까지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관세청의 적합성평가면제확인 DB에는 품명만 기재되어 있고, 모델명을 기입되어 있지 않다. 적합성평가면제확인 대상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현행 전파법령에 따라 수입 이후에는 별도의 확인조치가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반입되어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게 된다. 즉,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자재를 보고 이 제품이 적합성평가면제확인으로 수입된 기자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 대상 기자재에도 사전통관으로 반입된 기자재와 같이 모델명을 기입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사후관리 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의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제도에 대하여 제2장에서 살펴보았다. 미국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인 TCB에 위임하고 있으며, FCC는 TCB를 관리·감독하는 인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는 FCC, TCB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인증위반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신법상 관련규정 위반시 벌금, 징역, 압수 또는 몰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포괄적 행정처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통신법 규정 1회 위반시 10,000달러(약 1,200만원, 1 \$=1,200원 기준)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속적인 규정 위반시 일일당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신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전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판매, 운반, 사용한 경우 압수 또는 몰수처분이 부과된다.

미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벌금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벌금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CC 연방규칙에 구체적인 벌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증받지 않은 장비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7,000달러(약 840만원), 인증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5,000달러(약 600만원), 인증마크 부착 위반시 10,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벌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방송국, 케이블 사업자가 통신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당 375,000달러(약 4억 5천만원), 일당 150,000달러(약 1억 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건당 1,500,000달러(약 18억원), 일당 150,000달러(약 1억 8천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3,000,000달

러(약 3억 6천만원), 일당 325,000달러(약 3억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법 위반시 강력한 벌금으로 제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는 유선기기(단말기기 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술기준적합인증을, 무선기기(무선설비 등)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기술기준적합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행정처분 체계의 경우 국내는 위반 횟수별로 시정명령·인증취소·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등록취소·징역·벌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등록증명기관이 인증을 실시하므로 등록증명기관에 대하여 주로 벌금·과태료·등록취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전파법상 특별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 표시금지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500만원, 1 ¥=1,500원 기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술기준적합증명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인 경우에는 50만엔(약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기준적합인증 표시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술기준적합인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붙인 경우에는 50만엔(약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와 벌금·과태료 금액 비교시 일본이 국내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의 사후관리 체계로서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명시된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0,000위안(약 540만원, 1 元=180원 기준)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00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진망허가(NAL)를 획득하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할 경우 10,000위안(약 180만원) 이상 100,000위안(약 1,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위의 진망허가(NAL) 마크를 부착하여 불법소득을 얻은 경우 불법 소득은 몰수되고 불법 소득의 3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후관리 지침 위반시 EU 지침 자체에서 이를 처벌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각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

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CE 마크 부착 원칙을 위반하여 기자재를 유통시킨 경우 5만유로(약 7천 5백만원, 1 €=1,500원 기준) 이하의 벌금을, 다른 마크의 부착으로 CE 마크의 시각성 및 명료성을 훼손한 경우에도 5만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역 1년과 15,000유로(약 2천 2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도 국내보다 강력한 금액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각 국가별 사후관리 주요 처벌규정을 비교하는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주요국의 사후관리 처벌규정 비교

구 분	행정처분	특이점
미인증 기자재 유통시	미국 - 7,000달러 벌금 - 장비 압수 또는 몰수	- 벌금액을 건당, 일당으로 구분하여 조정(상한, 하한)
	일본 - 등록취소	- 대체로 인증을 실시한 등록증 명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부과
	독일 - 5만유로 이하의 벌금 - 제품회수	- 가장 강력한 벌금 부과
	프랑스 - 1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	-
	한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과태료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인증 마크 위반시	미국 - 10,000달러 벌금 - 장비 압수 또는 몰수	- 벌금액을 건당, 일당으로 구분하여 조정(상한, 하한)
	일본 - 특별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 자기확인 표시금지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기술기준적합증명 유사 마크 사용 : 50만엔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 징역 부과
	중국 - CCC : 10,000위안 벌금 - NAL : 불법소득의 3~5배 벌금	- 국내와 비슷한 행정처분 부과

구 분	행정처분	특이점
독일	- 5만유로 이하의 벌금 - 제품회수	- 가장 강력한 벌금 부과
프랑스	- 1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	-
한국	- 미표시 : 시정명령(1차),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1개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 거짓표시 : 인증취소	-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부과

또한 국가별 시험·인증기관 및 인정기관을 비교하면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주요국의 인증기관 및 인정기관 비교

국 가	규제기관	지정기관	인정기관	시험·인증기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KOLAS, KCLAP	국립전파연구원, 민간(시험·인증기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NIST, FCC	시험 : NIST -NVLAP 인증 : ANSI, ACLASS	민간 (TCB)
일본	총무성	총무성	JAB, VALC	JATE, TELEC
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CNAS	CQC, TENAA, SRRC
유럽	각 국가	각 국가	유럽인정기관협력 기구(EA)	민간 (Notified Body, Competent Body)

해외 주요국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정부 중심의 인증체계에서 민간 중심의 인증체계 확립, 민간기관의 복수화를 통해 인증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시장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합 또는 결함 정보보고 의무, 자발적 시정 등 기업 스스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체계 간소화에 따른 문제점 및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벌금부과 등의 사후관리를 확립하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체계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즉,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등 새로운 적합성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증체계를 간소화하였으며, 선인증 후통관 제도를 완화하여 사전통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용, 시험·연구용 기자재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전과법상 인증체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의 금액을 세분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요국은 인증체계의 간소화 및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 등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반면에 인증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 기자재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록 전과법령을 개정하여 세부적인 행정처분 체계를 도입하였지만,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욱 강력한 벌금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 다른 사후관리 시장감시체계 구축 방안으로 불량·불법기자재의 단속체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현재 불법·불량 기자재의 단속권한은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단속공무원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단속공무원으로는 생산과 수입이 증가하는 기자재를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험기관협회와 함께 불법·불량 기자재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인 위탁근거를 마련

하고,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는 관할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일례로 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사후관리를 지식경제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판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제20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질문에 관한 업무(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만 해당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4조(시판품조사)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에 대하여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민간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제조업체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의 수시검사를 통하여 불법·불량 기자재 적발시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지정시험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에는 처벌위주의 행정제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내 방송통신기

자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불량 기자재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안전관리교육)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시판 품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행정조치를 받은 전기용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및 부적합내용 등을 협회에 매월 통보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체는 대표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조(안전인증의 신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교육이수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불량 기자재를 판매·유통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관련 집중교육을 실시하도록 인증전문교육기관을 시험기관협회에 지정·위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사후검사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파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4-3> 조사 및 조치, 교육관련 전파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의2제3호 및 제44조의2제6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표 4-4> 조사 및 조치, 교육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제44조의2제6호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 및 법 제71조의2제3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업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제2 절 사전통관 제도

과거에는 자국의 경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제한을 관세부과율을 달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적용하였지만, 이후 통신시장이 개방화, 가속화되고 국가간 무역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FTA, WTO, TBT²³)등의 체결로 국내 전과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불량 기자재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사전통관 제도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증받은 제품은 사전통관으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수입업체들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업체이므로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같은 모델을 하나의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중복해서 통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모델을 다른 업체가 중복해서 통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 차례 수입을 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사전통관으로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 일본과 국내 통관절차를 비교하면 아래 <표 4-5>과 같다.

<표 4-5> 주요국의 통관절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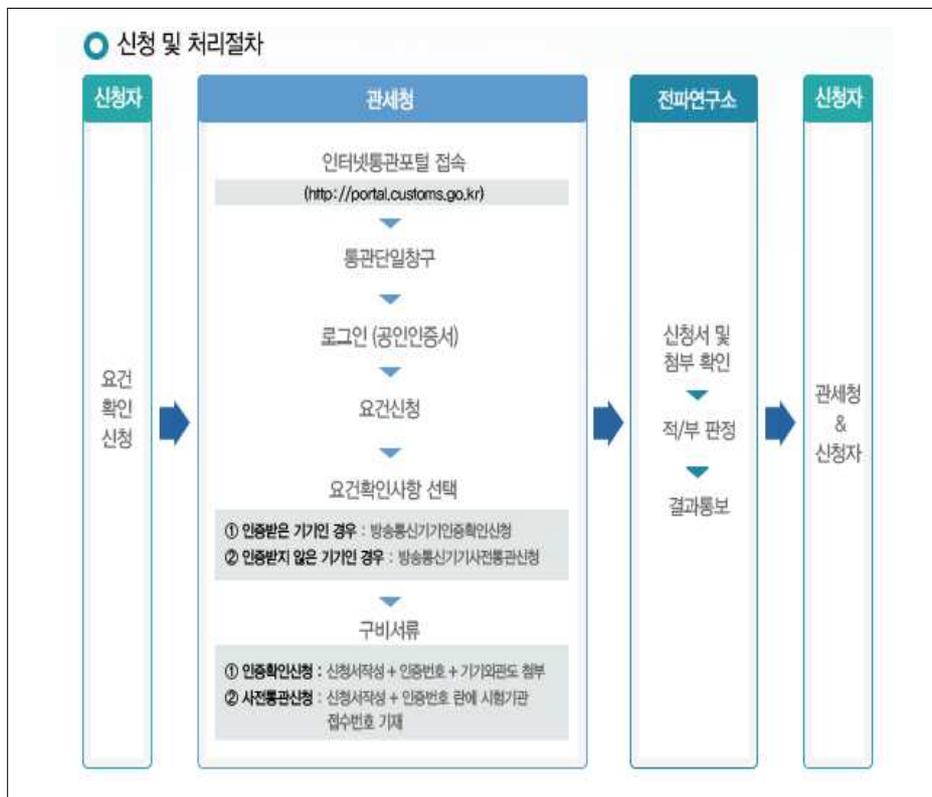
국 가	통관제도
미국	선인증 후통관
일본	선인증 후통관
한국	선인증 후통관(사전통관 제도 운영)

2010년 1월 1일자로 도입된 수입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통관절차에 따라 해당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를 받아

23)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협정

수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이 공동구축한 “수입전자통관시스템”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즉, 수입자는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접속시스템(<http://portal.dustoms.go.kr>)”에 접속하여 통관 요건 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은 인증여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관세청과 수입업자에게 아래 [그림 4-1]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 수입방송통신기자재 통관처리절차



자료: 인터넷통관포탈접속시스템(<http://portal.dustoms.go.kr>)

- ① 신청자(수입자) : 위의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접속시스템”에 접속한 후 입력해야 할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한다.
 - 사업자등록을 먼저하고 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는다.
 - 수출계약자로부터 B/L, 인보이스, Packing list등을 받는다.
 - 이미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품을 수입할 경우, 인증번호와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외관 사진을 파일로 준비한다.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통관하고자 할 경우,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사전시험 접수번호를 부여받는다.
 - 인터넷통관접속포털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인터넷통관포털접속시스템에서 수입통관요건확인신청을 한다.
 - 이 때 인증받은 제품은 신청서에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기기 외관도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인증번호대신 지정시험기관에서 부여받은 “사전시험접수번호”를 기재한다
- ② 국립전파연구원 : 수입자가 입력한 수입통관요건확인신청서(인증번호, 인증마크표시, 사전시험접수번호 등)를 확인하고 적/부판정을 한 후 관세청에 통보한다.
- ③ 관세청 : 수입업자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통보된 전자서류들을 보세창고에 있는 수입기자재와 대조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허가를 한다.

위의 통관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증받지 않은 기기에 대한 통관시스템이다. 현재 사전통관 제도는 수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증을 추후에 실시하고 신속한 통관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판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입업자가 희망하는 지정시험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사전시험접수번호”를 요청하여 부여받은 다음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접속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의 사전시험접수번호와 함께 입력해야할 사항들을 모두 처리하고 최종 요건신청을 하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위의 수입업체의 사전시험접수번호와 해당수입업체가 입력·처리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적합판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사전시험접수번호는 수입기자재통관을 위해 수입자가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접속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며, 특히 이 번호는 통관 후 이들 제품의 불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 ↔ 시험기관 ↔ 국립전파연구원간에 전자메일로만 주고받는 절차로 관리되고 있다. 결국 수입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통관상황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관세청만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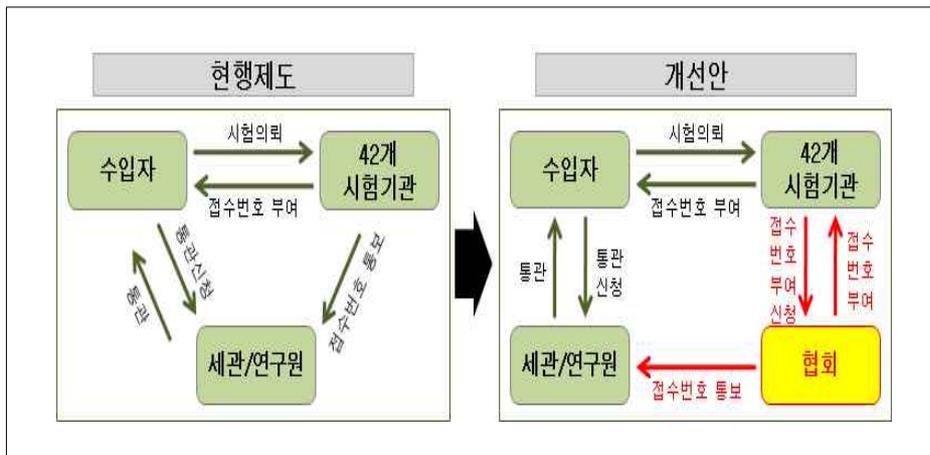
위에서 열거한 인증받은 제품 및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입업체 ↔ 국립전파연구원 ↔ 지정시험기관간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즉, 협회에서는 사전통관 이후 수입업체들의 시험·인증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그 현황들을 주기적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에 보고하게 한다. 보고내용은 사전시험접수번호를 발급받은 수입업체들의 시험·인증진행 상황(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 진행 중인지 아니면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지 또는 판매 후 부도처리를 했는지 등의 여부)들이며, 지정시험기관과 함께 불법기기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수입업체들이 40여개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고 있는 사전시험 접수번호 부여체계를 협회로 일원화하여 총괄적으로 번호부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시험접수번호를 이메일로 받아 처리해 오던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전시험접수번호 발급처리과정

- ① 수입업체로부터 “사전시험접수번호” 의뢰를 받은 지정시험기관에서는 협회에 위의 접수번호부여신청을 요청한다.
- ② 이를 요청받은 협회는 자체 비치된 수입업체에 대한 “사전시험접수번호관리 부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협회장 명의의 접수증을 해당시험기관에 발급하여준과 동시에 국립전파연구원에 위의 사전접수번호를 통보한다.
- ③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위의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④ 이와 함께 협회는 별도의 시험진행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위의 서버에 접근하여 시험진행 현황을 입력할 수 있도록 PASS WORD를 부여한다.
- ⑤ 협회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주기적으로 관할기관(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보고한다.

[그림 4-2] 사전통관 처리절차 개선(안)



아울러 지정시험기관이 협회에서 발급받은 접수증을 수입업체에게 발급하여 줄 때, 별도 안내장을 만들어 해당기기 수입시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사전통관을 허용 하되 이후부터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이후에 통관을 하도록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수입업체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2회 이상 통관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터넷통관포털접속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인증받은 기자재를 사전통관으로 반입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다음에 서 검토하게 될 인증소요 기간도 상당부분 단축되게 될 것이다.

제3 절 인증소요 기간

2010년 사전통관으로 반입된 방송통신기자재 중 인증받은 2,815건의 인증소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47%, 2개월 이내가 66%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행 전파법령상 사전통관 후 인증 받을 때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전파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전통관 후 2개월 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4-6> 인증소요 기간 관련 전파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⑨ (생략)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⑨ (생략) ⑩ 제2항 및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2개월 내에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⑪ 전항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인증을 받을 때 지정시험기관은 2개월 내에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와 통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개정(안)
1. ~ 5의6. (생략)	1. ~ 5의6. (생략) 5의7. 제58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적합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신설> 5의8. 제58조의2제1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인증을 완료하지 아니한 지정시험기관 <신설>
6. (생략)	6. (생략)

<표 4-7> 인증소요 기간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적합인증) ①~③ (생략)	제77조의2(적합인증) ①~③ (생략) 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란”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방법 및 사전통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8.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8.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5항·제7항·제10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잠정인증 및 사전통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9. ~ 19. (생략) ②~④ (생략)	9. ~ 19. (생략) ②~④ (생략)

<표 4-8> 인증소요 기간 관련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8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법 제58조의2제10항 및 영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생략

위의 개정(안)을 통해 인증소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인증기자재의 인증을 유도할 수 있고,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지정시험기관에게도 2개월 이내에 인증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인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적합성평가확인면제 제도

앞의 적합성평가확인면제 제도의 문제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적합성평가확인 면제를 통해 반입되는 수량제한은 시험·연구·기술개발용 기자재(100대)와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 이하)의 경우뿐이다. 그 외 수출용,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등의 경우에는 수량제한 없이 대량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1,000대 이상 적합성평가면제확인으로 수입되는 건수가 63건이나 되며, 1회에 40,500대를 수입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들 방송통신기자재가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수출용,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용, 전기·행사용 등의 경우 반입 수량을 50대 이하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내 대기업의 연구인력은 100명 정도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인력이 5명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1인당 10대의 기술개발용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적합성평가확인면제 대상 기자재의 경우 현행 전파법령에 따라 수입되면 제품에 모델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현장에서 시판품을 보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적합성평가면제확인 DB에 모델명을 기재하고, 인증받은 기자재와 마찬가지로 해당제품에 모델명을 포함한 ‘면제용 확인라벨’을 부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구제길(2007), 『정보통신 통합인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인송담대학 산학협력단), 방송통신위원회.
- 국립전파연구원(2010), 『중국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자료.
- 문태현(2008),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파진흥협회.
- _____ (2009), 『방송통신기기 시장 감독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KORPA 연구 2008-04, 수행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파진흥원.
- 전파연구소(2009), 『미국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자료.
- 허경일 · 최성민(2009), “KOLAS 인정제도 운영 현황”, 『TTA journal』 No.12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타 참고문헌

- 관세청 사전통관 DB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현황
- 인터넷통관포탈접속시스템(<http://portal.dustoms.go.kr>)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통계
-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 해외인증포털(www.certification.or.kr)
- FCC, TCB Workshop, 2011.4.
- VCCI Annual Report, 2011.3.

● 저 자 소 개 ●

안 준 오

- 경희대 전자공학과 졸업
- 경희대 전자공학과 석사
- 경희대 전파공학과 박사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소장

장 나 래

- 한양대 관광학과 졸업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신 한 철

- 국민대 법학과 졸업
- 한국외대 법학과 석사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조 영 아

- 이화여대 독일어과 졸업
-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사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나-12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to Market Surveillance
System for Using of Safet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2011년 12월 일 인쇄

201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경성문화사
